

#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공제회 사업 주요 통계 현황 (최근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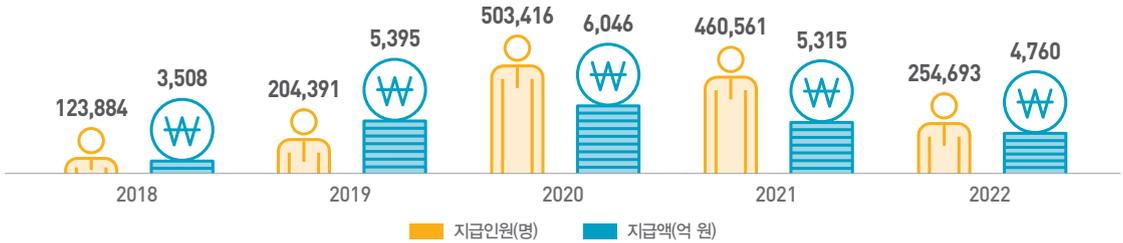
## 연도별 퇴직공제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 연도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수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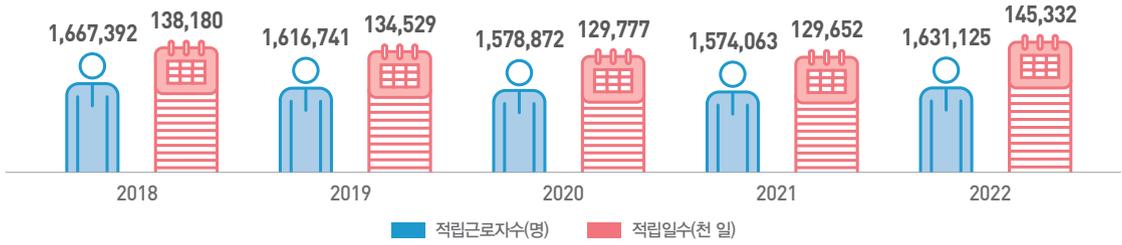
##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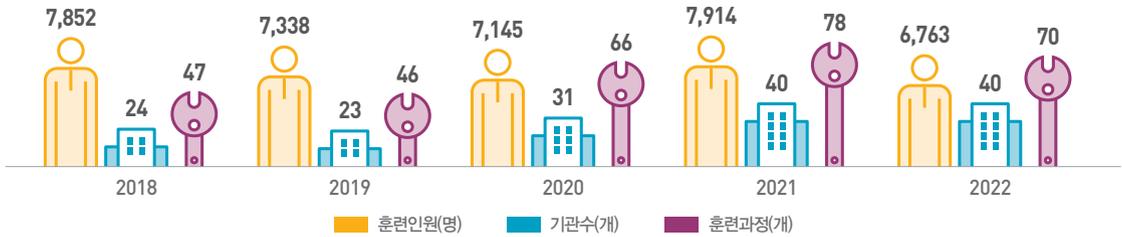
##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수 및 적립일수 현황



## 퇴직공제부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사업



##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각 사업의 2022년까지 누계)

생활안정 대부	57,256명 911.6억원	고용 불안정 등으로 시중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액의 50%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학자금, 입원·수술비 등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지급
단체보험 가입	70,056명 92.7억원	건설현장,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
종합 건강검진	7,748명 17.5억원	열악한 외부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지원
결혼·출산(유산) 지원	13,785명 50.8억원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과 복지증진을 도모
가족 힐링캠프	898명 6.2억원	건설업에 공적이 있거나 감동있는 사연을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 가족을 격려하고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휴가지원으로 대체하여 사업 추진
가족 휴가지원	4,121명 11.9억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국내가족 여행 기회 제공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2,300명 4.6억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 복지포인트를 지급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70명 1.5천만원	중학생 자녀의 교육과정을 반영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청소년 직업 체험, 직업흥미검사 및 재능검사)과 학부모 진로특강을 제공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1,184명 2.2억원	건설근로자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교생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수강권을 제공
대학생 자녀 장학금	4,460명 44.6억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 지원
종합지원 이동 상담버스 운영	152,801명	건설현장 및 새벽인력시장을 직접 찾아가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고용·복지사업 안내 등 상담서비스 제공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전자카드 발급 등 수행
건설유공 근로자 정부포상 수여	13회 (456명 수상)	매년 11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국토부 지정 기념일) 기념식에서 건설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근로자를 발굴·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격려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13회 (226점 시상)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매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전시

# CONTENTS

## PART

# 1

##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제1장   조직 및 기능 .....	18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18
2. 기능 .....	19
3. 조직 및 인원 .....	20
4. 회계 .....	21
제2장   주요사업 .....	22

## PART

# 2

## 주요사업 현황

### 제1부 퇴직공제사업 .....

**26**

제1장   사업 개요 .....	27
1. 가입 범위 .....	27
2. 퇴직공제 이행 .....	28
3. 퇴직공제금 지급 .....	29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	30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	30
2. 성실신고를 위한 차별화된 이행지원 .....	31
3. 피공제자 권익 보호 및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	32
제3장   추진현황 .....	34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	34
2.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	35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	35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36

## **제2부 고용지원사업** ..... 37

### **제1장** | 기능향상훈련 ..... 38

- 1. 사업 개요 ..... 38
- 2. 주요 추진 사업 ..... 39
- 3. 추진현황 ..... 40

### **제2장** | 무료취업지원 ..... 47

- 1. 사업 개요 ..... 47
- 2. 주요 추진 사업 ..... 49
- 3. 추진현황 ..... 52

### **제3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53

- 1. 사업 개요 ..... 53
- 2. 주요 추진 사업 ..... 55
- 3. 추진현황 ..... 57

### **제4장**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 59

- 1. 사업 개요 ..... 59
- 2. 주요 추진 사업 ..... 59
- 3. 추진현황 ..... 62

### **제5장** | 관련 사업 ..... 63

- 1. 조사연구센터 운영 ..... 63
- 2.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 64

## **제3부 고객복지사업** ..... 66

### **제1장** | 사업 개요 ..... 67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 69

-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 69
- 2. 건강관리 지원 ..... 71
- 3. 가족친화 지원 ..... 73
- 4. 자녀교육 지원 ..... 76
- 5. 상담서비스 지원 ..... 79
- 6. 건설근로자 직업 이미지 개선 ..... 80



**제4부 자산운용사업 ..... 85**

- | 제1장 | 사업 개요 ..... 86
-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 88
  -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 88
  - 2.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운용전략 구축 ..... 91
  - 3. 시장상황에 대응한 탄력적 자산운용 ..... 94
  - 4.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 96
- | 제3장 | 추진현황 ..... 100
  - 1. 자산운용 현황 ..... 100
  -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 10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 | 제1장 |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 109
  - 1. 건설경기 동향 ..... 109
  - 2. 건설노동시장 동향 ..... 112
- | 제2장 |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 117
  - 1. 개요 ..... 117
  - 2. 공제부금 적립일수 ..... 121
  - 3. 공제부금 납부 ..... 145
  - 4. 퇴직공제금 지급 ..... 155



**부록**

-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 169

## 표 차례

<표 1> 주요 연혁 .....	18
<표 2> 주요 기능 .....	19
<표 3> 직급별 정원 .....	21
<표 4>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27
<표 5>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 .....	28
<표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	34
<표 7>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현황 .....	35
<표 8>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	36
<표 9>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36
<표 10>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	41
<표 1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	42
<표 1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	43
<표 1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	44
<표 1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	45
<표 1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참여유형별 .....	45
<표 16>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수료생 만족도 결과 .....	46
<표 17>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자격증 취득 .....	46
<표 18> 건설일드림넷 이용실적: 회원가입 .....	49
<표 19>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근로일수 .....	52
<표 20>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취업자 수 .....	52
<표 21> 공사예정금액별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범위 .....	54
<표 22> 전자카드제 적용·운영 사업장 현황 .....	58
<표 23> 전자카드 발급 현황 .....	58
<표 24>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현황 .....	58
<표 25> 2022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통계 .....	62
<표 26> 최근 5개년 건설고용지수 등급별 업체분포 현황 .....	65
<표 27> 최근 5개년 건설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	65
<표 28> 생활안정대부 지급현황 .....	70
<표 29>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	71

<표 30>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추진 현황 .....	72
<표 31> 결혼·출산(유산) 지원 추진 현황 .....	73
<표 32>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	74
<표 33>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추진 현황 .....	75
<표 34>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추진 현황 .....	76
<표 35>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추진 현황 .....	77
<표 36>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	77
<표 37> 대학생 자녀 장학금 추진 현황 .....	78
<표 38>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	79
<표 39>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	80
<표 40>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	80
<표 41> 2022년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	81
<표 42>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	82
<표 43> 사진·영상 공모전 추진 현황 .....	83
<표 44> 2022년 온라인 사진·영상 전시회 실시 현황 .....	84
<표 45> 2022년 오프라인 사진·영상 전시회 실시 현황 .....	84
<표 46> 투자전략(Plan) .....	86
<표 47> 투자실행(Do) .....	87
<표 48> 성과평가/리스크 관리(See) .....	87
<표 49> 자산운용위원회 .....	89
<표 50> 투자심의위원회 .....	90
<표 51> 리스크관리위원회 .....	90
<표 52> '22년 금융시장 현황 .....	91
<표 53> [단기] 금융시장 위기대응 종합계획 .....	91
<표 54> [중기] 금융시장 위기대응 종합계획 .....	92
<표 55> 자산운용체계 개선 T/F 단계별 추진 계획 .....	92
<표 56> 자산운용체계 개선 T/F 결과 .....	93
<표 57> 2022년도 부금융계획(안)에 따른 자산배분 및 허용범위 .....	93
<표 58>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술적 자산배분 강화 .....	94
<표 59> 2022년도 공정가치 평가결과 .....	99
<표 60> 공제부금 자산운용규모 .....	100

<표 61> 공제부금 자산별 운용손익 및 성과 .....	101
<표 62>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	103
<표 63>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	103
<표 64> 건설투자 추이 .....	112
<표 65>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8년간 .....	114
<표 66>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22) .....	118
<표 67>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2) .....	122
<표 68>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24
<표 69>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25
<표 70>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26
<표 71> 적립일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28
<표 72>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30
<표 73>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32
<표 74>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33
<표 75>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	134
<표 76>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35
<표 77>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36
<표 78>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39
<표 79>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40
<표 80>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41
<표 81>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43
<표 82>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45
<표 83>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9~2022) .....	147
<표 84>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	149
<표 8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	150
<표 86>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	152
<표 8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	154
<표 88>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	155
<표 89>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2) .....	157
<표 90>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159
<표 91>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160

<표 92>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162
<표 93>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164
<표 94>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165
<표 95>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167

## 그림 차례

---

[그림 1] 조직도 .....	20
[그림 2] 사업 개요 .....	22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	39
[그림 4]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구직자 .....	48
[그림 5]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구인자 .....	48
[그림 6] 공제회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 유형 .....	54
[그림 7]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	55
[그림 8]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운영방식 .....	57
[그림 9] 2022년 시장 VaR 비율 및 한도 소진율 .....	97
[그림 10] 2022년 신용 VaR 비율 및 한도 소진율 .....	98
[그림 11]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	102
[그림 12] 국내 건설수주 증장기 추이 .....	111
[그림 13]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	111
[그림 14]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	113
[그림 15]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	116
[그림 16]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	116
[그림 17]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22) .....	119
[그림 18]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22) .....	120
[그림 19]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2) .....	122
[그림 20]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	124
[그림 21]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24
[그림 22]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	125
[그림 23]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25

[그림 24]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	126
[그림 25]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26
[그림 26]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근로자수 .....	127
[그림 27]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일수 .....	127
[그림 28] 지역별 적립근로자수 .....	129
[그림 29] 지역별 적립일수 .....	129
[그림 30] 월별 적립근로자수 .....	131
[그림 31] 월별 적립일수 .....	131
[그림 32] 내·외국인별 적립근로자수 .....	133
[그림 33] 내·외국인별 적립일수 .....	133
[그림 34]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	134
[그림 35] 성별 신규 적립일수 .....	134
[그림 36]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	135
[그림 37] 연령별 신규 적립일수 .....	135
[그림 38]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	136
[그림 39]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	136
[그림 40]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	138
[그림 41]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	138
[그림 42]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	140
[그림 43]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	140
[그림 44]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	141
[그림 45]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	141
[그림 46]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	142
[그림 47]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	142
[그림 48]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	144
[그림 49]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	144
[그림 50]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22) .....	146
[그림 51]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	148
[그림 52]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	148
[그림 53]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	150
[그림 54]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	150

[그림 5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	151
[그림 56]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	151
[그림 5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	153
[그림 58]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	153
[그림 5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	155
[그림 60]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	155
[그림 61]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2) .....	156
[그림 62]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158
[그림 63]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158
[그림 64]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160
[그림 65]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160
[그림 66]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161
[그림 67]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161
[그림 68]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163
[그림 69]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163
[그림 70]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165
[그림 71]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165
[그림 72]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166
[그림 73]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166

## 부표 차례

---

<부표 1>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	171
<부표 2>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	172
<부표 3>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	173
<부표 4> 연도별 지역별 신규 피공제자수 .....	175
<부표 5>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	177
<부표 6>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	179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신규 피공제자수 .....	181
<부표 8> 성별 연령별 누적 피공제자수 .....	182

<부표 9> 성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	184
<부표 10>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	186
<부표 11>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	188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	190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	200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	210
<부표 15>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 .....	220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	222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	232
<부표 18> 월별 연도별 적립일수 .....	242
<부표 19>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	243
<부표 20>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	244
<부표 21> 연도별 지역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	246
<부표 22>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	248
<부표 23>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	250
<부표 24>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금액 .....	252
<부표 25>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253
<부표 26>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254
<부표 27> 연도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256
<부표 28>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258
<부표 29>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260
<부표 30>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262
<부표 31> 연령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2 누계) .....	263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2 누계) .....	265
<부표 33> 연도별 성별 지역별 피공제자수 .....	268





#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 제1장 | 조직 및 기능

| 제2장 | 주요사업



##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제회는 설립 당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공제부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표 1>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9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노동부장관 인가)
1998	업무 개시(퇴직공제사업 시작)
2003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2006	전국 광역권 7개 지부 개소
2011	기능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시작(건설근로자법 개정)
2013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9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건설근로자법 개정)
2020	직제 개편(3본부 1실 12팀, 7지사 7센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202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 2 기능

공제회의 기능은 건설근로자법과 공제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 등이다.

건설근로자법 1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48호)을 통해 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를 신설해 퇴직공제제도 이외에 공제회가 수행할 다양한 사업을 열거했다. 공제회의 명칭을 변경한 취지는 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퇴직 이후’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업인 퇴직공제 이외에, ‘재직 중’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각종 제도로부터 소외됐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이 보다 강화된 고용지원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19년 말에는 고용 및 복지 개선의 초석이 될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이 개정(2019.11.26. 법률 제16620호)됐다.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 확대, 소멸시효 연장, 수급범위 개선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 신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11월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본격 시행되었고, 2021년 5월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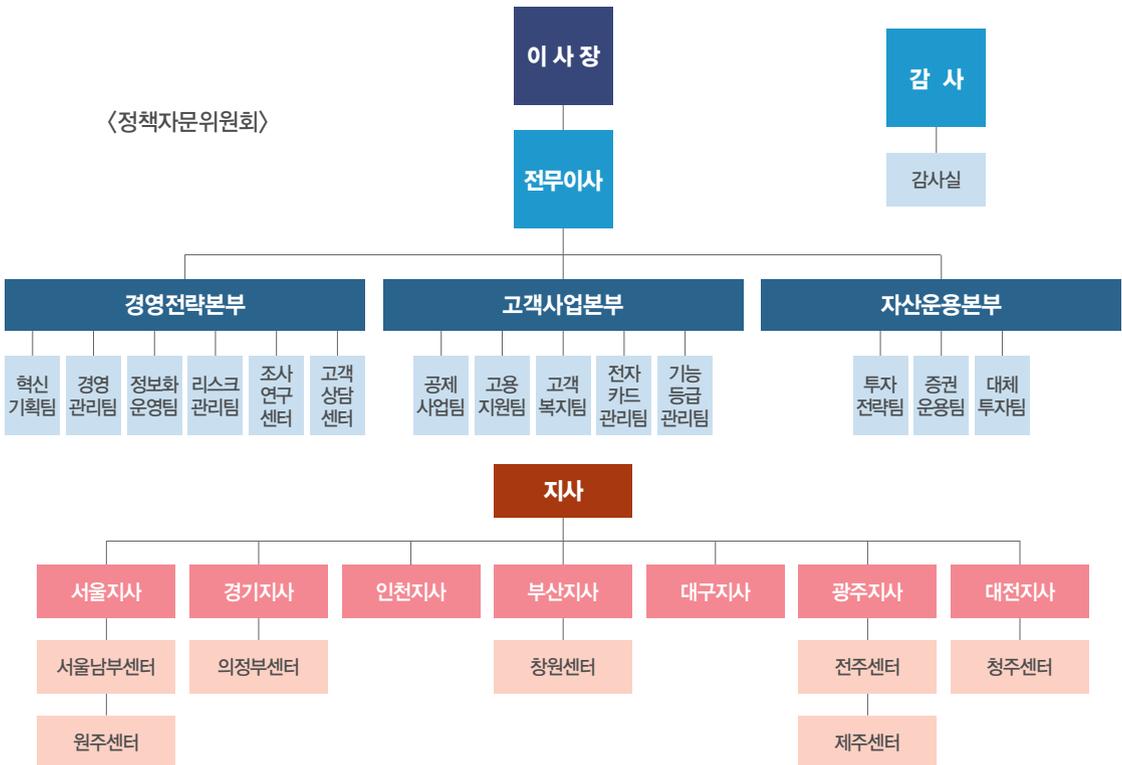
### <표 2> 주요 기능

구분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 정관 제36조(사업)
주 요 기 능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공제사업에 관련된 간행물의 발행 및 홍보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구분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 정관 제36조(사업)
주요 기 능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을 위한 사업
		10. 정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 3 조직 및 인원

[그림 1] 조직도



&lt;표 3&gt; 직급별 정원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타
정원(명)	223.5	3	5	10	17	32	44	49	13	50.5
현원(명)	203.5	3	4	9	18	32	34	49	11	43.5

## 4 회계

공제회의 회계는 부금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부수탁회계 4개로 구분된다. 건설근로자가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일액 6,500원 중 6,200원은 부금회계로서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으로 전액 적립되어 관리·지급되고, 300원은 공제회의 기관운영비 등인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적립·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퇴직공제금 신고 납부방식의 변경(증지부착방식 → 전산신고방식)으로 인한 미회수공제증지 판매대금과 그 운영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부금회계에서 분리됐다. 외부수탁회계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는 정부 위탁사업(훈련, 취업지원)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구분하는 회계다.

## 제2장

# 주요사업

공제회의 사업은 크게 공제부금 수납, 공제부금 운용,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복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 수납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으로부터 피공제자인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수납하는 과정이고, 공제부금 운용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된 공제부금을 불리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부금을 활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피공제자별로 적립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해야 하고,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기능훈련사업, 무료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개하는 취업지원사업, 출·퇴근 기록을 비롯해 제반 근로경력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근로경력 및 자격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등급제,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복지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 [그림 2] 사업 개요



첫째, 퇴직공제사업이란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말한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사업주는 소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매월 근로한 일수만큼 근로내역 신고와 그

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는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건설근로자도 만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에 시행된 퇴직공제 제도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고용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실시와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무료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정부위탁사업을 통한 고용보험기금이다. 한편, 2020년 11월에 출범한 전자카드제와 2021년 5월에 출범한 기능등급제 역시 고용지원사업으로서 기술하고자 한다. 전자는 출·퇴근 기록을 비롯해 제반 근로경력을 관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근로경력 및 자격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하려는 것이다.

셋째, 고객복지사업이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기 진작, 직업이미지 제고 등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과 금융지원,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사업과 다양한 상담서비스,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자산운용사업은 퇴직공제금 지급, 복지증진 사업,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수납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사업이다.



# 2



## 주요사업 현황

- 제1부 퇴직공제사업** | 제 1장 | 사업 개요  
| 제 2장 | 주요 추진 사업  
| 제 3장 | 추진현황
- 제2부 고용지원사업** | 제 1장 | 기능향상훈련  
| 제 2장 | 무료취업지원  
| 제 3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제 4장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 제 5장 | 관련 사업
- 제3부 고객복지사업** | 제 1장 | 사업 개요  
| 제 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 제4부 자산운용사업** | 제 1장 | 사업 개요  
| 제 2장 | 주요 추진 사업  
| 제 3장 | 추진현황



---

## 제 1부

# 퇴직공제사업

| 제 1 장 | 사업 개요

| 제 2 장 | 주요 추진 사업

| 제 3 장 | 추진현황

---

# 1

제1장

# 사업 개요

퇴직공제사업은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적립금액 관리를 통해 퇴직공제금과 대부금을 지급하는 공제회의 핵심 사업이다. 공제가입 사업장 및 피공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 1 가입 범위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되어 왔는데, 2021년 현재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1억 원 이상, 민간공사의 경우 50억 원 이상이다.

<표 4>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 사업 개요종류	1998.1.1	2001.8.25	2004.1.1	2008.1.1	2010.9.30	2020.9.8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100억 원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공사	100억 원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	-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500호	500호	300호	200호	200호	200호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	-	-	100억 원	50억 원

주: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표 5>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

공사종류	2003.7.1	2008.1.28	2011.10.26	2020.5.27
공공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민간	-	-	100억 원	50억 원

주: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포함됨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피공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다. 적용제외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 2 퇴직공제 이행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당연 가입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공제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당해 가입공사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부금은 발주자가 부담(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하는데, 소요비용은 ‘직접노무비×2.3%’(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5-610호, '15.8.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제부금은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비에 쓰이는 ‘부가금’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은 다섯 차례 인상되었는데, 공제부금액의 인상이 네 차례 그리고 부가금의 인상이 두 차례 있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째 동결됐던 퇴직공제금이 2020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되어 2020년 5월 27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었다.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퇴직공제제도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2,100원이었고, 2007년에는 3,100원, 2008년부터 4,100원, 2012년 4월부터 2017년까지 4,200원, 2018년부터 5,000원, 2020년 5월부터 6,500원이다.

### 3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에 따라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에 이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19.11.26.)으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로서 사망하거나 만65세에 이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과 매월 복리로 산정된 이자(공제회가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고시)를 더한 금액이며, 공제부금의 납부개월 수가 84개월(7년, 적립일수 1,764일) 이상인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별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 개월 수가 84개월(7년, 적립일수 1,764일) 이상이면 30만원, 120개월(10년, 적립일수 2,520일) 이상이면 50만원, 180개월(15년, 적립일수 3,780일) 이상이면 100만원이다.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2022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퇴직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퇴직공제 사업장 관리 강화 그리고 성실신고를 위한 차별화된 이행지원 등이다.

##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 가. 전담책임제 및 이행등급제 확대 시행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근로일수 신고가 감소하는 한편, 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는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 관리 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한정된 인적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담책임제 및 이행등급제를 확대 시행하였다.

전담책임제는 공제회 직원별로 담당 지역을 지정하고 각 직원이 해당 지역 사업장의 성립신고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선 적용범위를 기존 건축공사 100억 원, 토목공사 5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100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였다. 또한 전담책임제 수행 직원과 민원 처리 직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개인별 업적평가의 반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에 대한 향상과 관리 실적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촉진하였다.

이행등급제는 미신고·미납부 등 객관적인 퇴직공제 제도 이행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산출한 후, 하위 등급의 부진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맞춤형 이행지도 제도이다. 기존에 전담책임제와 상이했던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확대 조정(토목 300억 원 → 100억 원)하여 사업장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 실적을 전담책임제 수행 직원의 업적평가와 연동시킴으로써 하위 등급(4~5등급)이 감소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연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12.8%를 초과 달성하여 역대 최대 공제부금 수납액(8,53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상위 등급(1~2등급)은 9.8%p 증가하고 하위 등급(4~5등급)은 3.6%p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나. 사업장 관리 신규지표 도입

연간 가입사업장과 상시 관리사업장이 크게 증가(각각 73.5%, 33.8%)함에 따라 업무량도 크게 늘어, 한정된 공제회 인력으로부터 고(高)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장 관리 수단이 필요했다. 이에 ‘공제부금 평균납부액’과 ‘월별 출력인원’ 신규지표를 도입하였다.

먼저 ‘공제부금 평균납부액’은 대상 사업장과 공사규모가 유사한 사업장의 공정률별 공제부금 평균납부액을 산정하여 퇴직공제 EDI 시스템에 공개하는 지표이다. 평균납부액을 하회하는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이행을 지도하는 전략적인 사업장 관리와 타 사업장과 이행수준을 비교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퇴직공제 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개선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월별 출력인원’ 확인은 출력인원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월 근로내역 신고 시 총 출력일수를 기재하고 해당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일보를 첨부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다. 공제회는 매월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출력현황을 제공받아 사업장 관리에 활용하고, 사업주가 출력인원을 제출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퇴직공제 제도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규지표를 활용한 사업장 관리를 추진한 결과, 공제부금 평균납부액 공개 대상 사업장의 상위 등급(1~2등급) 비중은 10.3%p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별 출력인원 확인 사업장의 상위 등급 또한 증가(10개소 → 49개소)하는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 2 성실신고를 위한 차별화된 이행지원

### 가. 제도이행 취약 사업장 지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로 전체 관리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1~3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데 반해, 근로내역 신고율은 전체 사업장 평균 신고율보다 낮은 75.5%로 나타났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2022년에는 징벌적 제재가 아닌 ‘제도이행 동기 부여’를 목표로 삼고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무게를 두었다. 분기별로 성실신고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사카드와 함께 부상을 제공(총 525개소)한 결과, 근로내역 신고율이 연초 대비 22.8%p가 상승한 98.3%로 개선되었다.

그 외에도 연간 고용관리 책임자 연수프로그램과 노무사 전문 컨설팅을 운영하여 사업주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였다. 2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노무관리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며, 제도이행 취약 사업장 중 100개소에 근로기준법·4대보험·퇴직공제 제도를 집중 안내하는 노무사 컨설팅을 실시했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응답자가 83.5%로 나타나 향후에도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수요자별 맞춤 제도 교육·홍보 확대

2021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의 관심과 교육 요구는 증가-교육경험이 없어 어떤 교육이든 필요 38.1%-하는 반면, 발주기관의 퇴직공제 제도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홍보활동 접촉 없음 89.0%-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에는 수요자별로 특화된 제도 교육 및 홍보를 확대했다.

첫째, 이해관계자 교육을 강화하였다. 공공 발주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 및 사업장 합동점검을 18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면 교육을 5회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유관기관 사업주 합동교육 실시(7회), 권역별 건설사업주 비대면 교육 실시(52회) 등을 통해 법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성실이행 문화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둘째, 수요자별 홍보 수단을 다각화하였다. 근로자를 위한 건설현장 방문 제도 홍보를 연간 282회 실시하고, SNS와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를 전개하여 공제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널리 알렸다.

### 3 피공제자 권익 보호 및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 가. 퇴직공제금 수혜대상 확대 및 접수창구 다양화로 민원편의 제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비대면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간편로그인 및 본인인증수단 확대, 접수단계 간소화 등)하여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퇴직공제금, 대부금 등 각종 서비스 신청 시 전자카드 계좌 정보 자동 입력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고, 지사별로 실시하고 있던 문자수신 서비스를 센터까지 확대(7개 지사→14개 지사·센터)하여 청구인이 핸드폰 문자로 손쉽게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정부24」와 연계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보다 많은 국민이 퇴직공제제도를 알 수 있도록 보조금24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및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건설근로자법 개정('19.11.26.)으로 수급요건이 완화(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도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됨에 따라 수혜자의 청구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접수 업무를 대행하였고, 30만원 미만 소액 피공제자 유족 대상 ARS 전화청구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2022년 말 기준 우체국 방문을 통한 지급자 수는 34만 4천 명(1,336억 원)이며 ARS전화청구를 통한 지급자 수는 13만 2천 명(157억 원)이다. 특히, '22.9월 ARS전화청구 도입 이후 전화청구를 통한 사망자 유족 청구 건수는 전체 사망자 유족 청구 건수 대비 81.4%를 차지하였고, 월 평균 사망자 유족 지급건수는 도입 이전 대비 531% 증가하는 등 지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나.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대상 확대를 통한 수급권 보호 강화

고령자, 사망자 유족, 외국인 등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를 강화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고 적립일수 252일 이상 도달한 고령자에게 청구 가능 안내를 하고, 다음 분기에 청구 여부를 확인 후 미청구자 대상으로 재안내하였다. 또한, 2년간 근로내역이 없는 장기미청구자에게도 별도로 안내하여 고령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대법원 정보 연계로 사망 피공제자의 유족정보를 파악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지 이력, 유족 상담 내용 등’을 기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망 피공제자 유족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2년 이내인 유족에게는 추가로 재안내하여 소멸시효 만료로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법무부 정보 연계를 통해 체류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인 외국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를 하여 출국 전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국가 언어(국적별 비중 상위 3개국어-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청구 방법 안내문을 제작하여 외국인 피공제자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였다.

넷째,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홍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방하였다. 각종 고지 시 압류방지통장 발급가능 금융기관을 안내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공제회 및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을 안내하였다.

## 다. 고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증진

기존 고지서비스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시 입력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의존하여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하였으나 건설근로자 특성상 잦은 이동, 정보 불분명 등으로 오배송과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보다 많은 피공제자에게 고지가 도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수단을 추가(네이버)하여, ‘(1단계) 카카오→(2단계) 네이버→(3단계) KT공공알림문자→(4단계) 우편발송’ 순의 고지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건설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지문을 확인할 수 있고, 종이 우편물의 분실 또는 오배송,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편 제작 및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절약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시 하나로서비스 모바일앱 링크를 추가하여 손쉬운 비대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제3장

# 추진현황

##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신규 가입한 공사는 77,131개소로 전년대비 1.6%(1,291개소) 감소하였으나, 총 공사금액은 1.3%(28,010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신규 가입공사 대비 원가 미반영 공사의 비율이 전년대비 1.7%p(1,339개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공사범위 확대가 정착되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물량명세서 및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시에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22.12.31 기준, 단위: 개소, 억 원, %, %p)

구분		2021	2022	증감	증감률
신규 가입	계	78,422	77,131	△1,291	△1.6
	공공공사	73,130	71,370	△1,760	△2.4
	민간공사	2,973	3,244	271	9.1
	임의	2,319	2,517	198	8.5
	공사금액	2,155,241	2,183,251	28,010	1.3
	공제부금 반영액	11,565	11,257	△308	△2.7
원가 미반영공사 (미반영률)		3,194	1,855	△1,339	△41.9
		4.1	2.4	△1.7	△41.5

## 2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2022년 공제부금 납부액은 8,539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755억 원(25.9%) 증가했다. 적립일수 또한 144,354천 일로 전년대비 15,247천 일(11.8%) 증가했다. 납부액과 적립일수 모두 증가한 이유는 공제부금일액 인상효과와 이행등급제·전담책임제 확대 시행 등 전략적 사업장 관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에 비해 공제부금 납부실적은 공공공사, 민간공사에서 모두 증가했으나, 적립일수는 공공공사에서 감소했다. 임의가입의 경우 전년대비 수납액은 45억 원, 적립일수는 911천 일 감소했다.

<표 7>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현황

('22.12.31 기준, 단위: 억 원, 천 일, %)

구분		2021	2022	증감	증감률
공제부금 납부	계	6,784	8,539	1,755	25.9
	공공	2,628	2,780	152	5.8
	민간	3,972	5,620	1,648	41.5
	임의	184	139	△45	△24.5
적립일수	계	129,107	144,354	15,247	11.8
	공공	48,376	46,148	△2,228	△4.6
	민간	77,763	96,149	18,386	23.6
	임의	2,968	2,057	△911	△30.7

주: 상기 적립일수는 소급·삭감신고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Part 3 퇴직공제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2022년도 말 현재 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는 5,407천 명으로서, 전년 대비 122천 명이 늘어 2.3% 증가하였다. 신규 가입 근로자는 387천 명으로 전년 대비 4.9%(18천 명) 증가했고, 퇴직 근로자는 265천 명으로 전년 대비 42.8%(198천 명) 감소했다.

### <표 8>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22.12.31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2021	2022	증감	증감률
피공제자수 누계	5,285	5,407	122	2.3
신규 피공제자수	369	387	18	4.9
퇴직 피공제자수	463	265	△198	△42.8

주: 상기 퇴직 피공제자수는 <표 9>의 지급인원과 산출 시점 차이로 수치가 다름

##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2022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건수는 254,693건으로 전년 대비 205,869건이 줄어 44.7% 감소하였다. 지급액은 4,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1억 원이 줄어 11.7% 감소하였다.

한편,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는 8,953건으로서, 전년 대비 241건이 줄어 2.6% 감소하였다. 지급액은 37.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0.7억 원이 늘어 1.8% 증가하였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적립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 중 예산형편을 고려해 7년 이상자에게는 30만 원, 10년 이상자에게는 50만 원, 15년 이상자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 <표 9>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22.12.31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21	2022	증감	증감률
퇴직공제금	지급건수	460,561	254,693	△205,869	△44.7
	지급액	5,403	4,772	△631	△11.7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	9,194	8,953	△241	△2.6
	지급액	37.1	37.8	0.7	1.8

주: '추가지급'은 퇴직공제금 지급건수에서 제외됨. 퇴직공제금 지급건수(지급액)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지급액)가 포함된 수치임

---

## 제2부

# 고용지원사업

| 제1장 | 기능향상훈련

| 제2장 | 무료취업지원

| 제3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제4장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 제5장 | 관련 사업

---

# 2

제1장

# 기능향상훈련

## 1 사업 개요

고용지원사업 중 기능향상훈련이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취업능력을 배양하려는 사업이다. 일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 및 소득증대 둘 다 확보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한다. 연구 용역 결과 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축시공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선정했고, 훈련과정은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했으며,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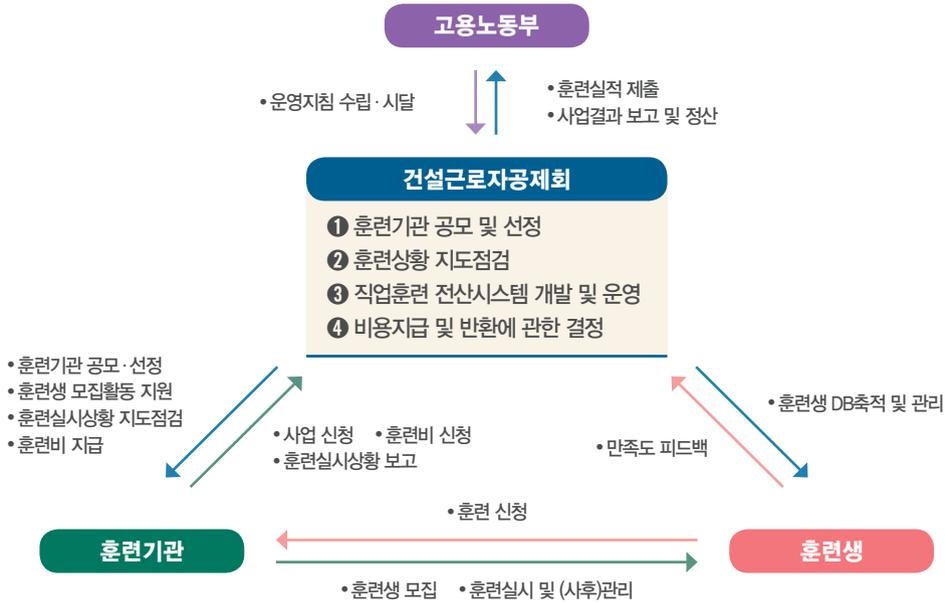
사업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공제회에 위탁하면 공제회가 민간 훈련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재위탁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시행지침 수립·시달, 위탁계약 체결 및 선정된 훈련기관의 재위탁 승인, 분기별 예산 배정, 매월 추진실적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제회는 약정 체결, 훈련 목표인원의 달성 유도, 훈련기관 공모·선정, 훈련생 모집활동 지원, 훈련생 출결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훈련 실시상황 지도점검, 훈련비 등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체계적인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한다.

훈련기관은 공제회와의 훈련약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안전교육 및 철저한 과정관리 등을 통해 훈련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무료취업지원센터와 협업 등을 통해 훈련수료자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 2 주요 추진 사업

2022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다양화 및 훈련생 지원 강화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훈련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화과정 개설을 유도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했다. 자체 관리 인센티브를 만들어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 홍보 및 사업 운영 체계를 개편해 기능향상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첫째, 숙련인력 및 다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본과정을 단일직종 및 혼합직종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별도의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생 개인 수준별로 맞춤 훈련을 실시했다.

기본과정(단일 및 혼합)은 공급부족 규모가 큰 12개 직종으로 훈련을 실시하되, 직무연관성이 크고 현장 수요가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나의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직종들의 연계 교육을 통해 두 가지 직종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수+조적’, ‘타일+미장’ 등의 혼합과정을 운영했다.

둘째, 훈련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였다. 심화과정의 1일 훈련비를 4,000원 인상해 훈련기관들의 심화과정 공모 신청을 유도했고, 훈련교사 및 행정담당 직원의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노동법과 취업지원 등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훈련생에게 자격증 취득 수당을 지급(2018년 이후 총 6,057명)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셋째, 우수 훈련기관(7개)을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 참여 시 선정심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훈련기관 간의 성과경쟁을 촉진해 수료율 등 정량지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했다.

넷째,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훈련생 자동 구직신청을 통해 훈련생의 취업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했다.

다섯째, 훈련기관 운영 우수사례(28건)를 선정·공유하는 한편, 훈련기관장·담당자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훈련생 모집 시 상담과정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 과제를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 시 반영토록 했다.

여섯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사업을 홍보하였다. 훈련생 모집 홍보 이벤트 확대, 언론사 지면광고, 지역 언론 인터뷰,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을 추진했으며 각종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일곱째,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훈련체계 개편(기본과정-기능등급 초급, 심화과정-기능등급 중급)하고, 훈련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과다 중복참여자 제한 및 불성실 훈련생 참여 제한 등의 규정을 정비·운영하였으며, 훈련기관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생략하도록 했다.

### 3 추진현황

####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고용노동부 위탁훈련에는 총 88,365명이 참여하고 74,146명이 수료했는데, 조기취업자를 제외하면, 83.7%의 수료율을 기록했다. 참여한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2009년에 11,297명과 8,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료율과 취업률은 2018년에 각각 95.4%와 72.1%로 가장 높았다. 2022년에는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각각 6,763명, 수료인원 5,986명을 기록하였으며, 취업률은 46.1%를 기록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훈련종료 이후에도 취업 실적을 파악했다.

**<표 10>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23.01.31, 기준, 단위: 명, %)

구분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09	'09.07~'09.12	11,297	8,894	78.7	2,100	38.4
2010	'10.02~'10.12	6,041	3,815	63.2	2,538	50.8
2013	'13.05~'14.01	4,670	3,608	82.2	1,593	41.1
2014	'14.03~'15.01	4,703	3,670	86.3	2,312	56.1
2015	'15.03~'15.12	7,792	6,478	89.7	3,453	49.0
2016	'16.03~'17.01	8,444	7,184	90.9	4,289	55.5
2017	'17.01~'17.12	8,406	7,317	93.5	5,645	71.5
2018	'18.01~'18.12	7,852	7,028	95.4	5,416	72.1
2019	'19.01~'19.12	7,338	6,641	94.8	4,981	71.4
2020	'20.2~'20.12	7,145	6,395	94.0	4,537	67.3
2021	'21.01~'22.01	7,914	7,130	93.3	4,146	56.0
2022	'22.02~'23.01	6,763	5,986	90.6	2,833	46.1

주 : 1. '11년, '12년은 위탁훈련 미실시(고용노동부 사업예산 미편성), 조기취업자수는 생략

2. 수료율(%) = 수료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3. 취업률(%) = (취업자+조기취업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4. 기능향상지원사업 실시지침에 따라 훈련종료 이후에도 취업실적 반영

직종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 개설된 단일과정은 8개 직종이고 혼합과정은 17개 직종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직종별 훈련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단일과정의 경우 매년 타일과 일반목공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혼합과정의 경우 '타일+방수'와 '도장+방수'가 1위와 2위를 차지한다.

훈련생 개인별 수준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심화과정은 일반목공과 타일 직종에 개설됐고, 기본과정 참여인원 대비 심화과정 참여인원의 비율은 일반목공과 타일 직종 각각 10.4%와 1.8%를 기록했다.

### <표 1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22.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 목적공	특별 목적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일반 응접	플랜트 응접	조적	철근	타일
2013	4,670 (100.0)	1,229 (26.3)	-	139 (3.0)	404 (8.7)	76 (1.6)	126 (2.7)	301 (6.4)	-	151 (3.2)	154 (3.3)	2,090 (44.8)
2014	4,703 (100.0)	1,180 (25.1)	-	395 (8.4)	215 (4.6)	88 (1.9)	422 (9.0)	640 (13.6)	-	248 (5.3)	162 (3.4)	1,353 (28.8)
2015	7,792 (100.0)	2,145 (27.6)	-	539 (6.9)	669 (8.6)	-	425 (5.5)	719 (9.3)	-	870 (11.2)	103 (1.3)	2,322 (29.8)
2016	8,444 (100.0)	2,240 (26.5)	-	486 (5.8)	664 (7.9)	174 (2.1)	527 (6.2)	397 (4.7)	-	439 (5.2)	-	2,277 (27.0)
2017	8,406 (100.0)	1,925 (22.9)	-	579 (6.9)	383 (4.6)	269 (3.2)	492 (5.9)	703 (8.4)	-	213 (2.5)	165 (2.0)	2,801 (33.3)
2018	7,852 (100.0)	1,927 (24.5)	-	560 (7.1)	126 (1.6)	311 (4.0)	388 (4.9)	347 (4.4)	-	140 (1.8)	127 (1.6)	1,951 (24.8)
2019	7,338 (100.0)	1,671 (22.8)	-	588 (8.0)	300 (4.1)	332 (4.5)	406 (5.5)	356 (4.9)	-	208 (2.8)	122 (1.7)	1,652 (22.5)
2020	7,145 (100.0)	1,409 (19.7)	-	558 (7.8)	133 (1.9)	234 (3.3)	318 (4.5)	552 (7.7)	-	95 (1.3)	36 (0.5)	1,645 (23.0)
2021	7,914 (100.0)	1,705 (21.5)	-	474 (6.0)	-	52 (0.7)	156 (2.0)	840 (10.6)	-	-	12 (0.2)	1,673 (21.1)
2022	6,763 (100.0)	1,001 (14.8)	344 (5.1)	490 (7.2)	-	30 (0.4)	104 (1.5)	381 (5.6)	70 (1.0)	-	-	1,584 (23.4)

※ 심화과정(일반목적공, 타일) 각 104명, 31명 포함

구분	형틀 +철근	배관 +방수	배관 +응접	타일 +미장	타일 +조적	타일 +방수	타일 +도장	미장 +조적	미장 +방수	미장 +타일	도장 +방수
2016	147 (1.7)	-	60 (0.7)	-	1,033 (12.2)	-	-	-	-	-	-
2017	-	-	53 (0.6)	-	823 (9.8)	-	-	-	-	-	-
2018	-	203 (2.6)	114 (1.5)	238 (3.0)	859 (10.9)	274 (3.5)	-	287 (3.7)	-	-	-
2019	-	-	-	201 (2.7)	1,076 (14.7)	320 (4.4)	-	106 (1.4)	-	-	-
2020	-	-	-	326 (4.6)	583 (8.2)	378 (5.3)	-	51 (0.7)	-	-	341 (4.8)
2021	-	-	-	174 (2.2)	553 (7.0)	528 (6.7)	-	143 (1.8)	95 (1.2)	-	997 (12.5)
2022	-	51 (0.7)	-	146 (2.2)	233 (3.4)	482 (7.1)	57 (0.8)	-	-	92 (1.4)	355 (5.2)

구분	도장 +타일	방수 +조적	방수 +도장	일반 근로자 +도장	일반 응접 +배관	조적 +미장	조적 +방수	조적 +타일	철근 +비계	플랜트 응접 +배관	한옥 목공 +방수
2016	-	-	-	-	-	-	-	-	-	-	-
2017	-	-	-	-	-	-	-	-	-	-	-
2018	-	-	-	-	-	-	-	-	-	-	-
2019	-	-	-	-	-	-	-	-	-	-	-
2020	-	423 (5.9)	-	-	-	-	-	-	63 (0.9)	-	-
2021	110 (1.4)	402 (5.1)	-	-	-	-	-	-	-	-	-
2022	-	102 (1.5)	243 (3.6)	250 (3.7)	20 (0.3)	134 (2.0)	182 (2.7)	251 (3.7)	8 (0.1)	97 (1.4)	56 (0.8)

과정별 분포의 경우 대체로 주간 과정이 약 88%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간 과정의 비중이 매년 높아 지다가 2018년의 91.3%를 정점으로 다시 낮아져 2022년에는 86.5%로 나타났다. 이와 반해 야간 과정은 2017년 이후 9%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도에 13.5%로 크게 증가했다.

### <표 1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22.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주간	야간
계	71,027 (100.0)	62,410 (88.0)	8,617 (12.0)
2013	4,670 (100.0)	3,876 (83.0)	794 (17.0)
2014	4,703 (100.0)	3,570 (75.9)	1,133 (24.1)
2015	7,792 (100.0)	6,565 (84.3)	1,227 (15.7)
2016	8,444 (100.0)	7,532 (89.2)	912 (10.8)
2017	8,406 (100.0)	7,591 (90.3)	815 (9.7)
2018	7,852 (100.0)	7,166 (91.3)	686 (8.7)
2019	7,338 (100.0)	6,642 (90.5)	696 (9.5)
2020	7,145 (100.0)	6,470 (90.6)	675 (9.4)
2021	7,914 (100.0)	7,149 (90.3)	765 (9.7)
2022	6,763 (100.0)	5,849 (86.5)	914 (13.5)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50대였는데, 2020년에 최초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1위를 차지한 후 2022년에는 그 비중이 32.4%로 전년 34.5%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를 유지했고,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20대~40대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22.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3	4,670 (100.0)	28 (0.6)	162 (3.5)	547 (11.7)	1,234 (26.4)	1,915 (41.0)	784 (16.8)
2014	4,703 (100.0)	14 (0.3)	193 (4.1)	529 (11.2)	1,229 (26.1)	1,735 (36.9)	1,003 (21.3)
2015	7,792 (100.0)	45 (0.6)	404 (5.2)	823 (10.6)	1,784 (22.9)	2,907 (37.3)	1,829 (23.5)
2016	8,444 (100.0)	80 (1.0)	656 (7.8)	1,032 (12.2)	1,826 (21.6)	3,322 (39.3)	1,528 (18.1)
2017	8,406 (100.0)	172 (2.0)	889 (10.6)	1,041 (12.4)	1,812 (21.6)	3,139 (37.3)	1,353 (16.1)
2018	7,852 (100.0)	69 (0.9)	773 (9.8)	966 (12.3)	1,687 (21.5)	2,756 (35.1)	1,601 (20.4)
2019	7,338 (100.0)	79 (1.1)	734 (10.0)	773 (10.5)	1,323 (18.0)	2,385 (32.5)	2,044 (27.9)
2020	7,145 (100.0)	60 (0.8)	805 (11.3)	636 (8.9)	1,138 (15.9)	2,091 (29.3)	2,415 (33.8)
2021	7,914 (100.0)	45 (0.6)	907 (11.5)	724 (9.1)	1,279 (16.1)	2,231 (28.2)	2,728 (34.5)
2022	6,763 (100.0)	47 (0.7)	873 (12.9)	799 (11.8)	1,169 (17.3)	1,686 (24.9)	2,189 (32.4)

성별 분포의 경우 해가 거듭되면서 남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에 91.2%로 정점을 지난 후 낮아져 2022년에는 86.5%로 나타났으며, 여성 훈련생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8.8%에서 13.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1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22.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3	4,670 (100.0)	3,725 (79.8)	945 (20.2)
2014	4,703 (100.0)	4,026 (85.6)	677 (14.4)
2015	7,792 (100.0)	6,699 (86.0)	1,093 (14.0)
2016	8,444 (100.0)	7,358 (87.1)	1,086 (12.9)
2017	8,406 (100.0)	7,401 (88.0)	1,005 (12.0)
2018	7,852 (100.0)	7,163 (91.2)	689 (8.8)
2019	7,338 (100.0)	6,663 (90.8)	675 (9.2)
2020	7,145 (100.0)	6,387 (89.4)	758 (10.6)
2021	7,914 (100.0)	6,906 (87.3)	1,008 (12.7)
2022	6,763 (100.0)	5,849 (86.5)	914 (13.5)

참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해가 거듭되면서 경력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에 90.4%로 정점을 지난 후 낮아져 2022년에는 72.4%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건설업 구직자의 비율이 2018년 9.6%에서 2022년 27.6%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참여유형별**

(22.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경력자	구직자
2013	4,670 (100.0)	2,799 (59.9)	1,871 (40.1)
2014	4,703 (100.0)	2,951 (62.7)	1,752 (37.3)
2015	7,792 (100.0)	5,619 (72.1)	2,173 (27.9)
2016	8,444 (100.0)	7,071 (83.7)	1,373 (16.3)
2017	8,406 (100.0)	7,322 (87.1)	1,084 (12.9)
2018	7,852 (100.0)	7,099 (90.4)	753 (9.6)
2019	7,338 (100.0)	6,236 (85.0)	1,102 (15.0)
2020	7,145 (100.0)	5,908 (82.7)	1,237 (17.3)
2021	7,914 (100.0)	6,316 (79.8)	1,598 (20.2)
2022	6,763 (100.0)	4,896 (72.4)	1,867 (27.6)

2018년부터 실시한 수료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4년 간 86%대에서 머물다가 2022년도에 역대 최고치인 87.3%를 기록했다.

**<표 16>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수료생 만족도 결과**

(22.12.31. 기준, 단위: %)

구분	만족도 조사
2018	86.3
2019	86.4
2020	86.2
2021	86.3
2022	87.3

연도별 자격증 취득 상황을 살펴보면 자격증 취득자는 2018년 1,321건을 기록했고 2019년 1,044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표 17>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자격증 취득**

(22.12.31. 기준, 단위: 건, %)

구분	취득 자격증 갯수	취득률
2018	1,321	18.6
2019	1,044	15.7
2020	1,065	16.6
2021	1,187	16.4
2022	1,440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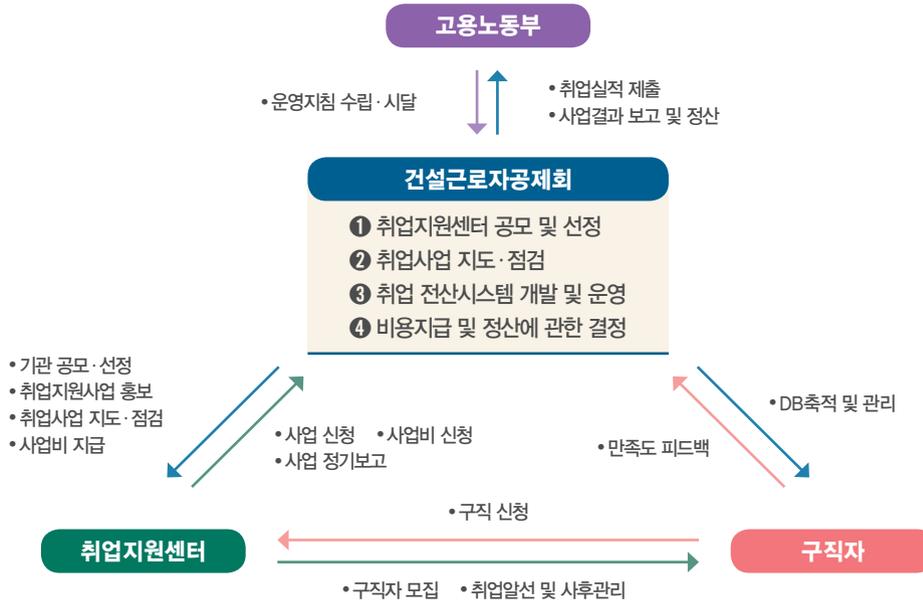
## 제2장

## 무료취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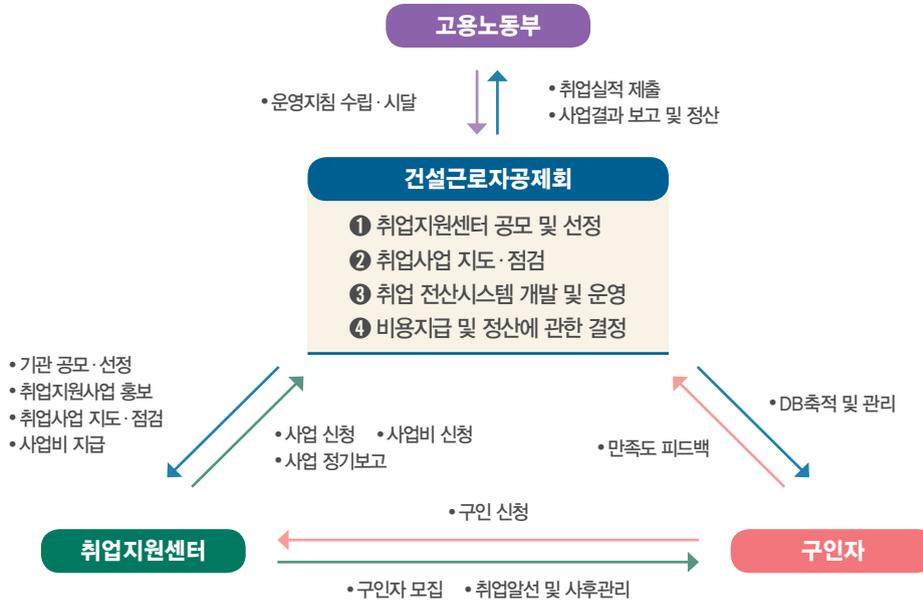
## 1 사업 개요

무료취업지원사업이란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구직자)와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구인자)에게 무료로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8월에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전산망인 ‘건설일드림넷’을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취업정보 관련 사이트와 달리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관련 일자리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2017년 2월에는 건설일드림넷의 ‘모바일 앱’을 오픈하였고, 두 차례(’19.1., ’20.12.)에 걸쳐 건설일드림넷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지원 전담직원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 무료노무상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구직자



[그림 5]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구인자



## 2 주요 추진 사업

2022년도에는 모바일 구직·구인환경을 고려하여 간편 구직신청기능을 고도화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공공 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취업지원 센터 전담직원 및 훈련기관 취업담당자, 공제회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국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청 등)과의 실시간 일자리 정보연계를 통한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소식지·주요 건설신문 지면광고·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여 취업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였다.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노력

#### 1) 건설일드림넷(홈페이지·모바일 앱) 활성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16.8)와 모바일 앱(17.2)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일드림넷은 언제 어디서나 건설현장 일자리 및 인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 취업알선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2년도에는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간편 구직신청 기능 개발 등 건설일드림넷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간편 구직신청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로그인 절차를 없애 구직신청을 간소화하고 모바일 접근성을 높여 건설일드림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화면을 개선하고, 출근현황조회 기능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공적 취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건설일드림넷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인쇄물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온라인 이벤트 등을 실시한 결과, 신규 회원가입자와 모바일 앱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일드림넷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원가입자 대상 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일드림넷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18> 건설일드림넷 이용실적: 회원가입

(22.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홈페이지	모바일
2017	3,388	1,662	1,726
2018	5,689	2,083	3,606

구분	계	홈페이지	모바일
2019	5,944	2,131	3,813
2020	7,507	2,460	5,047
2021	7,598	2,047	5,551
2022	9,133	2,058	7,075

## 2)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보다 나은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직무역량교육과 직업상담 전문교육 등을 통해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의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첫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취업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도모하였다. 특히,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새로이 실시토록 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공제회 지사·훈련기관·취업지원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 간 원활한 취업지원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교육을 다시 시작하였고, 직원별 선호도와 취업지원센터의 일정 및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병행하였다.

넷째, 직무별로 일괄 진행된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직원이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교과목·강사진 구성의 다양화 등을 통해 개인별 필요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였다.

## 3)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첫째, 국토교통부, 조달청,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강화하여 취업지원사업을 활성화하였고, 산재노동자 또는 지역 내 일반 근로자 등의 건설업 신규 진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건설업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둘째, 2017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전국의 취업지원센터에 노무사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업드림넷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을 시행함으로써 취업지원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만족도도 높였다.

셋째,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능향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훈련수료생에 대한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훈련·취업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22년도부터는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하면 자동으로 구직신청이 되도록 하여 훈련생에 대한 사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4) 취업지원사업 홍보 다양화 추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대면 홍보 방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를 높였다.

첫째, 건설일드림넷의 신규 기능이 개발됨에 따라 신규 기능을 홍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둘째, 공제회의 홍보채널과 유관기관의 홍보 협조를 통해 유튜브, 블로그, 지자체 소식지, 옥외광고(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셋째, 지면 광고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일반적인 대국민 매체를 통한 홍보와 건설현장·훈련기관·고용센터 등 타겟팅 홍보를 병행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 5) 취업지원사업 품질 개선

공제회는 취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등에서의 평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하여 취업지원센터의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고 취업지원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지역별 성과목표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취업성과와 더불어 취업 후 사후관리, 유관기관 업무협력(MOU)을 통한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둘째, 2021년부터 예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에서 집행한 위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외부 회계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패위험 요소를 통제하고 취업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취업지원사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품질 개선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 취업지원센터를 양성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3 추진현황

취업지원 전산망 정보 연계 강화, GPS 출근체크기능 개발, 유관기관(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훈련기관, 공인노무사회 등)과의 협업,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홍보 다각화 추진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취업알선 실적이 2021년도의 약 72만 일에서 2022년도에는 약 75만 일로 약 4.4%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절감된 건설근로자의 구직비용(유료 직업소개소 이용 시 소요되는 수수료)이 약 1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용보험이나 퇴직공제 등의 공적인 실적에 대한 인정 및 검증을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19>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근로일수

(22.12.31. 기준, 단위: 일, %)

구분	목표 근로일수(A)	추진실적(B)	달성률(B/A)
2015	16,980	39,464	232.4
2016	82,954	164,970	198.9
2017	154,700	268,767	173.7
2018	223,560	313,152	140.1
2019	303,280	385,013	126.9
2020	364,650	581,300	159.4
2021	574,770	715,827	124.5
2022	723,959	747,443	103.2

<표 20>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취업자 수

(22.12.31. 기준, 단위: 일, %)

구분	목표 근로일수(A)	추진실적(B)	달성률(B/A)
2015	-	2,342	-
2016	-	3,787	-
2017	3,385	3,907	115.4
2018	4,270	5,125	120.0
2019	5,270	5,761	109.3
2020	5,950	7,841	131.8
2021	8,194	8,150	99.5
2022	8,284	8,579	103.6

## 제3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1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퇴직공제 신고누락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카드제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추진경과

- (2014.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방안 시달(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3357)
- (2015. 8)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발표(고용노동부)
- (2015. 9)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사업(LH 및 서울시 공사, 6개소) 추진
- (2016. 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확대 추진(6개소 → 36개소)
- (2016. 9) 전자카드제 2단계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 신한카드
- (2019.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계별 시행 방안 포함
- (2019.11)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지원대책」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포함 발표(일자리위원회)
- (2020. 4) 전자카드 위탁발급 사업자 지정(하나은행, 우체국)
- (2020.10)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체계 구축
- (2020.11) 전자카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
- (2020.1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2020.11.2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단계(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시행
- (2022. 7.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단계(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시행
- (2024. 1.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3단계(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시행 <예정>

전자카드제는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전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로 전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표 21> 공사예정금액별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범위**

구분 \ 적용일	'20.11.27.	'22. 7. 1.	'24. 1. 1.
공공 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민간 공사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 공사수(추정)	약 2,500개소	약 8,500개소	약 80,000개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금융기관(하나은행, 우체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금융형 카드로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접촉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카드 단말기’는 건설근로자가 태그한 전자카드 정보를 인식하여 출퇴근 정보를 공제회 서버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전자카드 적용 공사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현장에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6] 공제회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 유형**

(6개 업체, 24가지 유형, '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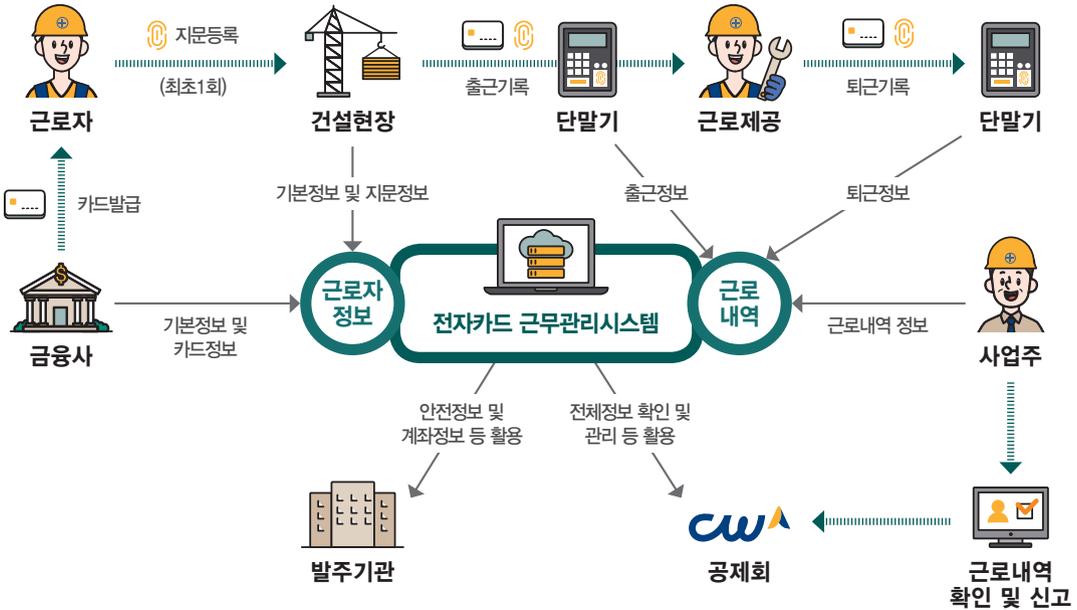
구분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게이트형
이미지				

## [그림 7]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 금융형 전자카드



### 전자카드 단말기



## 2 주요 추진 사업

2022년 7월부터 전자카드제 적용공사 범위가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확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카드의 대내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가. 전자카드제 2단계 확대 대응

첫째, 전자카드제 2단계 확대 시에도 전자카드가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발급 캠페인(총 345회)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장에는 상설 발급센터를 개설하는 등 일터 중심의 발급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카드제 지속성장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 및 공사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단말기 적정 설치기준 마련, 단말기 소요비용의 원가계상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검토해야할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증가(4,807개소, 72.9%↑)에도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사업장 관리 상별체계를 마련하였다. 전자카드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14개소)에게는 포상을 수여하였고, 제도 이행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제회 자체 또는 발주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전자카드 미발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별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연중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7회) 및 정기적인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발주기관(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합동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자카드제 캐릭터(건설이)를 신규 출시하고, 친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홍보영상(총 6편)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 외에 공제회와 고객 간의 접점인 건설 현장에서 홍보 인쇄물 배포, 종합지원 이동반 차량 랩핑광고 추진,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발송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 나. 전자카드제 대내외 활용성 제고를 통한 플랫폼화

첫째,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제 간 연계 및 확산에 관한 국토부 고시가 제정(22.7월)되었다.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금지킴이)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전자카드 연결계좌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화 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임금지급내역, 근무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시스템-모바일 앱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임금제와 임금직접·구분지급제를 구현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기여하였다.



### <표 22> 전자카드제 적용·운영 사업장 현황

(22.12.31. 기준, 단위: 개소, 명, 일, %)

구분	공사수	전자카드 발급인원 비율		
		퇴직공제 신고인원	전자카드 발급인원	카드발급 인원비율
계	5,088	441,621	322,909	73.1
의무	3,089	337,263	247,312	73.3
자율	1,999	104,358	75,597	72.4

※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 전체(준공 사업장 제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의 누적 발급매수는 915천매이며, 2022년 한해의 전자카드 발급매수는 529천매로 2021년 대비 175%(336천매) 증가하였다.

### <표 23> 전자카드 발급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매)

전체(누계)	'22년	'21년	~'20년	전년 동기 대비
915,150	529,232	192,729	193,189	336,503 ↑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은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22년 12월까지 221개 사업장에서 1,911건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였으며, 45천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1,016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 <표 24>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현황

(21.3. ~'22.12. 기준,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

발주기관	사업장수	임금대장 작성수	지급인원	임금지급액
계	221	1,911	45,418	101,644
LH	159	1,572	38,712	85,852
도로공사	22	110	3,494	9,237
인천국제공항공사	2	83	1,568	3,762
한국철도공사	3	27	286	288
국토관리청	7	36	579	1,133
서울시	22	38	273	333
기타	6	45	506	1,039

## 제4장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 1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리를 통해 현장경력과 기능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체계를 마련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의 풀을 확보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현장경력(퇴직공제적립일수+고용보험신고이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을 환산 경력연수로 산출하여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의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근로자의 기능등급을 부여하고, 기능등급 구분·관리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건설기능플러스)을 통해 기능등급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 2 주요 추진 사업

2021년도에는 기능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출범(2021.5.27.)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도추진TF를 운영해 각종 기준 마련, 제도 도입기반 설계 연구용역, 하위법령 정비, 경력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적시에 추진함으로써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고, 등급보유자에 대한 활용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경기도와 협업하여 기능등급제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 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다.

## 가. 기능등급제의 안정적 출범

### 1) 건설 노·사·민·정이 참여한 '제도추진TF'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운영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정부, 건설 노·사 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추진 TF”를 구성하여 제도 출범에 필요한 단위 과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기능등급제 출범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능등급제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인 “기능등급 운영위원회”를 구성(12개 기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3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제도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였다.

### 2) 제도 도입기반 설계 연구용역 추진

기능등급제에서는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연수로 산출하여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의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등급을 구성하는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의 요소별 환산연수 기준 및 등급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및 분과별 자문위원단 회의 등을 통해 직종별 등급 정의, 직무내용 및 세부 환산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등급의 현장 수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38개 현장, 5천명)을 실시한 결과 기능수준 77.6%, 경력연수 73.2%, 임금수준 50% 등의 적정성을 보여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기능등급이 적정함을 확인했다.

### 3) 하위법령 정비(대통령령 개정, 국토교통부령·고시 제정)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제도추진TF 운영 및 제도 도입기반 설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협의, 개정령(안) 법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일련의 개정절차를 추진하여 개정법률이 시행('21.5.27.)되도록 했다.

### 4) 기능등급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경력정보 DB연계

2020년에는 기반시스템(정보연계, 등급산정체계)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시스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기능등급 구분·관리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건설기능플러스)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해당 경력관리시스템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신고내역,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신고내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보유내역과 포상이력, 한국고용정보원의 교육훈련내역, 유관단체의 기능대회 입상 이력 및 인정기능사 보유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연계하고 있다.

## 나.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 1) 등급제 출범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및 대국민 홍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출범에 따라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기차 역사 174개, 지하철 역사 114개, 대형 건설현장 1,997개소, 안전보건공단 전광판 40개소 등을 통해 옥외광고를 진행하였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1호 발급자에 대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알려 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 2) 기능등급제 적용 시범사업 추진

기능등급제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기도와 협업하여 기능등급제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10개소 현장(건축5, 토목5)을 대상으로 시공경험이 많은 고속철도 기능등급보유자의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 배치와 공사규모별 필수보유인력 배치를 통하여 시공품질과 생산성 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원활하게 정착되려면 현장에서 각 등급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하나, 아직 등급별 요구역량과 연계되는 교육훈련 체계가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및 역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종별·등급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체계” 연구용역을 202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5월에 완료하였다.

### 4)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사업 추진

기능등급보유자 대상 기능등급별 역량 형성 지원 등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교육지원사업을 202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교육훈련 체계 구축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우선 도입 직종인 6개 직종의 초급 및 중급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및 선택교육(실기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능등급보유 건설근로자 대상 교육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기능등급제 시행 직종은 전체 49개인데, 이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추진 중이다.

### 5) 서울시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추진

기능등급제 활용방안 마련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하여 기능등급제 기반의 숙련기능인력 배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건설업 중 입찰참가자격 다빈도 대업종 8개를 우선 선정하여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였고, 2023년도에 총 50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 3 추진현황

제도추진TF 운영, 등급기준 설계 완료와 관계법령 정비,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적시에 추진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49개의 시행 직종 전체에서 총 9,456건의 기능등급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표 25> 2022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통계

(22.12.31. 기준, 단위: 건)

접수방법 \ 등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총 합계
방문	389	488	725	580	2,182
온라인	677	2,166	2,647	1,784	7,274
총 합계	1,066	2,654	3,372	2,364	9,456

## 제5장

## 관련 사업

## 1 조사연구센터 운영

공제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 임시조직으로 ‘조사연구센터’를 설치했고, 동 센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에 대한 ‘Think tank’로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가. 건설근로자 맞춤형 정책 연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황 분석 그리고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훈련·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였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에서는 기능등급제 시행 이후의 추진상황(기능등급 분포 변화 등)을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등급보유자 활용방안 법제화 등)을 도출하였고, ‘건설기능인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 방안 연구’에서는 기능인력의 직업전망과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출발점으로서의 기능등급제와 공제회가 중심이 되어 초기업단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취업경로 파악 및 활용방안’에서는 직업소개소와 새벽시장 등의 취업경로를 소개하였다.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기적 실태조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현황·근로환경·복지수혜 현황 등 생활실태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교육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당 연도의 기능인력 수급 상황과 외국인 분포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수급 전망 그리고 직종별 훈련수요 추정 결과 등을 기술하고 있다.

## 나. 맞춤형 통계 생산

공제회 내부 DB를 내·외부의 활용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한편, 외부 공식통계 중 건설기능인력이

드러나도록 취합·가공하여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매월)을 작성하고, 내부 DB를 활용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분기)을 작성하는 등 주기적으로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였다.

향후, 공제회 DB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한 정비와 항목 간 결합을 통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초기업단위의 접근전략 등을 반영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2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공제회는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매년 산정·발표한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 산재,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에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별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매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탄력성’(=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기성총액 증감률)을 구한 다음 6등급으로 나누고, 최근 3년간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최종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수의 등급이 낮을수록 고용은 감소하고 임금체불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에는 종합건설업체 9,764개사에 대한 ‘2022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퇴직공제 EDI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9,764개사 중 상위 977개사(10.0%)는 1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984개사(10.0%)는 6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최근 5개년 건설고용지수 등급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18년도	8,347	825	1,257	2,073	2,083	1,256	853
2019년도	8,648	856	1,291	2,156	2,162	1,306	877
2020년도	9,026	898	1,343	2,247	2,263	1,366	909
2021년도	9,308	926	1,393	2,318	2,339	1,397	935
2022년도	9,741	977	1,460	2,439	2,443	1,461	984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2021년도의 9,308개사에서 2022년도에는 9,764개사로 456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23개사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27> 최근 5개년 건설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감점업체	256	128	65	63	45	23
증감률	-	24.3	△49.2	△3.1	△28.6	△48.9

종합건설업체는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http://wedi.cw.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에서 자신의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 제3부

# 고객복지사업

| 제1장 | 사업 개요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

# 3

## 제1장

## 사업 개요

고객복지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이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대부받아 전·월세 보증금, 자녀 결혼자금, 입원·수술비 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1차 사업('09.3.2~'12.6.30), 2차 사업('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22년 현재)으로 구분되며, 건설근로자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의 최대 50%까지 신청할 수 있고, 무이자로 지원된다. 대부기간은 대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일시·분할·조기상환 등이 가능하다.

둘째, 건강관리 지원이다.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직업특성 상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이며, 종합 건강검진 지원은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셋째, 가족친화 지원이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건설근로자를 축하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고자 하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및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이에 대한 위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유산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 힐링캠프'와 '가족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자녀교육 지원이다. 건설근로자의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소속감 부여 및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는 건설근로자 자녀에게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직업흥미검사·재능검사

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진로설계를 위한 ‘내 자녀 진로찾기 특강’을 제공하여 자녀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2022년에 신규 도입하였다.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은 내신 및 수능을 대비하는 고교생에게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에게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양한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 자녀의 전체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상담서비스 지원이다.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 이동상담 버스 2대를 활용하여 주중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공제 적립내역 및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종합상담서비스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충과 애환을 해결하고 있다.

여섯째,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직업 이미지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이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일반부문과 건설근로자부문에서 각 수상작을 선정하여 ‘사진·영상 전시회’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라 오프라인 전시회 뿐 아니라 비대면으로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하고 있다.

##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2022년도의 고객복지사업은 건설근로자 복지로드맵(‘20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신규복지의 공급과 기존 사업의 확대·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및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환류활동을 진행하였다.

##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 가.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부사업은 1차(‘09.3.2~’12.6.30)와 2차(’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22년 현재)으로 구분된다. 3차 대부사업은 동절기 일자리 감소와 임신·일용 고용형태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시 시작되었다. 기존 대부사업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사유’를 선정하여 목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신청 사유에는 ① 자녀 결혼자금 지원,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④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생활안정대부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256건에 대해 91,160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대부신청 사유는 주택구입·전월세, 입원·수술, 대학생 자녀학자금 순이었다.

2021년 10월에는 대부금 대환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도 상환 없이

늘어난 대부한도 만큼 추가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종전 대부사업의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만 추가 대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대부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대환제도 도입으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전년대비 18.7% 증가한 9,455명이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하여 147억을 지급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8> 생활안정대부 지급현황

(22.12.31.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천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57,256	22,771	10,099	6,968	7,963	9,455
지 급 액	91,160	36,014	16,825	12,001	11,602	14,718
평균지급액	1,592	1,581	1,666	1,722	1,457	1,556

## 나. 건설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고정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없어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기존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상품(전북은행 체인지업론, 2016년)과 별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만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상품(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017년)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1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하나은행 전세 대출상품)을 마련하여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여 목돈이 필요한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대환대출상품과 신용대출상품은 각각 571건(62억 원)과 1,063건(64억원)이 발생하였고, 전세자금대출상품은 25명(41억 원)에게 제공되었다.

## 2 건강관리 지원

### 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직업특성 상 위험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현장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불의의 사고 등에 대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가입 신청 등을 통해 피보험자를 선발하여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골절, 상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장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에 3,000명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예산 여건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피보험자가 10,825명에 이르고 있다. <표 29>는 12년간의 추진 현황 총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보험자 70,056명을 가입시켰고 6,458건에 대해 약 6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단체보험 피보험자 선정방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의 장기 근속자 위주였는데, 2016년부터는 장기 근속자 외에 현업 종사자, 전자카드 현장 종사자 및 가입신청 공고를 통해 모집된 가입희망자 중 대상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피보험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100% 희망신청’을 원칙으로 건설업 현업자 위주로 상시 접수받아 매분기 피보험자를 선정하여 분기마다 1년 단위 보험기간을 설정·개시하는 방식으로 피보험자 선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단체보험 사업자 선정방식 또한 분기별 보험 개시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년 단위로 사업자 선정 후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을 해마다 개선해 왔는데, 사업 초기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암진단비, 암수술급여, 암입원급여,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입원의료비, 골절진단위로금 등 10개 항목을 시작으로, 2017년의 상해통원의료비, 2018년의 다중골절진단과 깎스치료비, 2020년의 화상진단과 일상생활 배상, 2021년의 여성 3대암과 유방절제수술비 등이 추가되었고, 2022년에는 추가로 정신건강지원이 포함되었다.

<표 29>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피보험자	70,056	3,000	5,000	6,000	1,000	5,000	6,000
보험료	9,268	360	549	600	110	697	839
보험기간	-	매년 3.1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실적	6,458건 (6,228백만 원)	132건 (191백만 원)	266건 (538백만 원)	361건 (743백만 원)	102건 (251백만 원)	296건 (292백만 원)	245건 (319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피보험자	6,000	5,013	6,471	7,553	8,194	10,825
보험료	730	660	770	1,049	1,162	1,742
보험기간	'17. 3. 31 ~'18. 3. 30	분기별 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실적	447건 (346백만원)	815건 (774백만원)	1,043건 (855백만원)	1,186건 (824백만원)	1,153건 (812백만원)	412건 (283백만원)

## 나.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분진, 소음, 유해물질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 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다.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은 국가검진 주기와 부합하도록 직전년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매년 초 입찰을 통해 건강검진 사업자를 선정한 후 신청인원 중 적격한 검진 대상자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1개월 내 예약하고 2개월 내 검진토록 안내하고 있다.

사업 초기(2017년~2019년)에는 입찰을 통해 '건강검진 전국망을 보유'한 검진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전국 단위 검진기관 수가 2017년 16개소, 2018년 16개소, 2019년 상반기 16개소, 2019년 하반기 21개소에 불과하여, 검진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예약하기 어려워 예약률이 낮고 미검진률이 상당하였다.

이에 예약률 제고 및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적인 '건강검진 위탁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강검진 지원에 참여한 검진기관 수는 2020년 45개소에서 2021년 61개소, 2022년에는 6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건강검진 구성항목은 x선 촬영·혈액검사·위장 검사 등 기본검사와 MRI·저선량 CT·특수초음파검사·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현재까지 총 7,748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 <표 30>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천원, 백만원)

구분	총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검진인원	7,748	958	944	1,140	1,309	1,395	2,002
1인당 지원금	-	153	173	234	250	250	250
총 지원금	1,754	146	164	267	327	349	501

### 3 가족친화 지원

#### 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유산) 지원금’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 출산, 유산한 피공제자 중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에 100일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단, 여성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및 유산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이고, 출산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되며, 유산위로금은 3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첫 해인 2010년에는 결혼지원금 8명, 출산지원금은 20명에게 지원을 시작하였고, 2022년까지 결혼지원금 5,296명과 출산지원금 8,337명, 유산위로금 152명 등 총 13,785명에게 50.8억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유산위로금의 경우 사업 개시 첫 해인 2021년에는 32명에게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20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유산위로금 수혜대상자를 기존의 여성 근로자에서 2022년에는 배우자가 유산한 남성 근로자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표 31> 결혼·출산(유산) 지원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종류								
	예산	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600	13,785	5,075.2	5,296	2,321	8,337	2,718.2	152	45.6
2010	300	28	8.4	8	2.4	20	6.0	-	-
2011	30	42	12.6	13	3.9	29	8.7	-	-
2012	18	34	10.2	9	2.7	25	7.5	-	-
2013	255	850	255.0	232	69.6	618	185.4	-	-
2014	127	414	124.2	174	52.2	240	72.0	-	-
2015	180	616	180.0	278	83.4	338	96.6	-	-
2016	180	624	179.9	278	83.4	346	96.5	-	-
2017	210	887	196.5	359	107.7	528	88.8	-	-
2018	456	1,354	436.0	568	227.2	786	208.8	-	-

구분	종류								
	예산	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9	772	1,883	786.8	763	381.5	1,120	405.3	-	-
2020	935	2,265	934.8	871	435.5	1,394	499.3	-	-
2021	1,057	2,388	975.2	855	427.5	1,501	547.7	32	9.6
2022	1,080	2,400	975.6	888	444	1,392	495.6	120	36

## 나. 건설근로자 ‘가족 힐링캠프’ 운영

건설현장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의 문화 체험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했다. 2010년을 첫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했고, 2016년 중국 상해로 첫 해외여행을 추진했으며, 2017년 일본 규슈, 2018년 일본 오사카, 2019년과 2020년은 대만 타이페이로 여행했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고용·복지사업을 소개하고 근로자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으며, 가족 힐링캠프 참여자가 주변 근로자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 사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거나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조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참가신청을 받아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사연의 주제는 건설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로, 건설기능인 정부포상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 공로와 관련된 사연, 공제회의 퇴직공제, 고용·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연, 산업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사연 등이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연공모 심사위원회가 공모된 사연을 심사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쉽게도 추진하지 못했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총 898명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했다.

<표 32>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참가인원	898	104	54	109	74	38	76	86	80	90	187
지원비용	620,565	50,227	22,840	59,301	39,134	18,248	40,725	55,628	66,836	80,793	186,833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당 소요액	691	483	423	544	529	480	536	647	835	898	999
행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차) 상해 (2차)	일본 규슈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 페이

주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2년 추진실적 없음

## 다.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복지사업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가족 힐링캠프’ 사업(해외·단체 여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0년부터 여행·여가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으로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가족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공제회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건설근로자의 여행·여가에 대한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침체된 국내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한국관광공사 사업모델에서는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 몫을 공제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족 동반이라는 기존 힐링캠프의 취지를 반영한 ‘건설근로자 특화 휴가지원 사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자녀→고령→직전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이며, 동순위자가 경합할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하여 선정하였다.

‘가족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원하는 일정의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휴가샵 포인트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 1차 지원자에게 사전 안내된 이용기간 종료 후 남은 미사용 잔여 포인트를 환수하여, 예비 순위자에게 2차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현재까지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4,121명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표 33>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총계	2020	2021	2022
지원인원	4,121	957	1,047	2,117
지원금액	1,187,100	287,100	300,000	600,000

## 4 자녀교육 지원

### 가.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속감 부여 및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선정된 지원 대상자 명단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복지포인트가 생성되면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복지포인트는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유흥·사행업종, 주점·주류판매 등)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2021년에 신규 도입하여 2022년 현재까지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총 4억 6천만원을 제공하였다.

<표 34>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총계	2021	2022
지원인원	2,300	1,000	1,300
지원예산	460,000	200,000	260,000

### 나.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신규 추진

2022년도에는 중학생 자녀 대상 신규 복지서비스인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자녀의 교육과정(초등·중등·고등·대학생)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사업은 공공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잡월드’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다. 건설근로자 자녀는 진로설계관에서 직업흥미검사 및 재능검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부모와 함께 확인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총 44개 체험실로 구성된 청소년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였다. 체험관 선정은 건설근로자 학부모와 (예비) 중학생 자녀들의 수요를 반영하였고, 1인당 2가지의 직업을 체험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 학부모는 직업체험관 보호자 투어를 통해 자녀들의 직업체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진로설계 전문강사의 ‘내 자녀 진로 찾기 특강’을 통해 자녀 진로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022년에는 중학생 자녀의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8월 11일 실시하였으며, 건설근로자 자녀 70명과 학부모 61명 등 총 131명이 참여하였다. 공제회는 프로그램 참가비 및 참가지원금 지급 등 총 1.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35>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참가인원(자녀기준)	지원금액
2022	70	14,556

주 : 2022년 신규 사업

### 다. '고교생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

건설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업체를 통해 고등학생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수능·내신 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수강권을 제공하고 수강률을 확인하고 있으며, 진도율이 저조한 경우 수강을 독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수강과목을 전과목과 단일과목으로 다양화하여 건설근로자 및 고등학생 자녀의 수요에 따라 제공하였다.

<표 36>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과목	450	-	-	-	-	-	-	-	200	250
단일과목	734	37	65	100	100	100	100	98	100	34

주 : 수강인원은 매월 수강 중복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 라. '대학생 자녀 장학금'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건설근로자 고등학생 자녀 1,304명을 선정하여 총 872백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지원금을 공제회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2020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에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 단체의 기탁금 모집을 통해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지급인원은 총 4,460명이며, 지급금액은 총 44억 6천만 원으로, 1인당 금액은 2014년과 2015년에는 2백만 원이었으며, 2016년부터 1인당 금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급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학생 선정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 상위자 → 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 연소자 순’으로 선발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인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생략하고 건설근로자(부모)의 피공제자번호만 입력하도록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표 37> 대학생 자녀 장학금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4,460	30	60	160	220	315	615	1,020	1,020	1,020
1인당 금액	-	2	2	1	1	1	1	1	1	1
총 지급금액	4,460	60	120	160	220	300	600	1,000	1,000	1,000

주 : 1.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고등학생 자녀 1,304명을 대상으로 872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2. '18년 15명, '19년 15명, '20년 20명, '21년 20명, '22년 20명은 외부단체의 장학지원으로 공제회 예산에는 미포함

### 마. 대학생자녀 ‘협성장학금’ 추천

동 장학금은 (재)협성문화재단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제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접수서류 일체를 (재)협성문화재단에 전달한다. (재)협성문화재단은 소득수준과 성적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학습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22년까지 1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총 528명에게 약 29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2년에는 50명에게 3억 여 원이 지급되었다.

**<표 38>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528	48	62	56	32	29	39	36	33	46	49	48	50
선정인원	276	48	45	39	7	17	18	9	13	25	18	20	17
1인당 금액	-	등록금 전액			등록금 + 학습보조금(학기당 50만원)								
총 지급금액	2,963	307	206	223	177	170	232	230	206	267	318	323	304

주 : 지급인원은 매년 장학금 지급 중복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 5 상담서비스 지원

### 가.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종합지원 이동상담 버스 2대를 활용하여 주중 매일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공제 적립내역 및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동상담버스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과 종합 건강검진 지원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고, 2018년 7월부터는 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에 대한 민원도 접수하며,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 이후에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제’를 안내하고 있다.

2019년부터 퇴직공제 및 복지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에서 모바일 앱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편의성 도모 및 모바일 앱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지된 상태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현장 방문 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신청접수 및 현장 홍보를 통한 전사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2022년에는 새벽인력시장 115개소와 건설현장 350개소에서 총 7,245명의 건설근로자에게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접수(484명)하기도 했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 편의(발급매수 6,585건)를 제공하였다.

<표 39>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개소)

구분	계	2011~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인원	152,801	41,740	19,885	19,327	20,412	15,452	14,348	7,884	6,508	7,245	
퇴직공제 축소신고	272	-	-	-	-	123	66	42	41	-	
전자카드	6,961	-	-	-	-	-	-	-	376	6,585	
단체보험	4,283	-	-	-	-	1,141	1,277	768	662	435	
건강검진	618	-	-	-	-	225	235	59	50	49	
방문 현장	새벽시장	3,004	1,099	462	409	250	242	196	138	93	115
	건설현장	3,731	900	379	393	404	349	368	272	316	350

## 나. 상담환경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

상담의 깊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담환경을 개선하였다. 전국 지사·센터에 상담전용 노트북 및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상담전용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내 전광판 및 공공계시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792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40>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노무	건강(심리)	재무	외국인	취업
누계 (‘14~’22)	5,792 (100.0)	3,137 (54.2)	1,609 (27.8)	156 (2.7)	806 (13.9)	84 (1.5)

주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추진실적 없음

## 6 건설근로자 직업 이미지 개선

### 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건설기능인은 주택, 공장, 사무실, 병원, 도로, 댐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축 및 기반시설을 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그리고 잦은 산재 등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많았고 사기도 낮았다. 그 결과 생산물의 품

질과 안전은 악화되었고, 젊은 층의 건설업 기피현상으로 고령화가 심해졌다.

따라서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했는데, 건설기능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기능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0년에 ‘건설기능인의 날’을 제정했다.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11월 22일’의 ‘11’은 건설근로자가 ‘서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22’는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념식에는 행사의 주인공인 건설기능 유공자와 그 가족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건설단체와 노동단체 관계자, 건설기능인 등이 참석하며, 기념식 본행사는 정부포상 전수,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치사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꿈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전시회 등 부대행사를 병행하여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와 가족, 건설기능인들을 위해 2020년 제11회 기념식 행사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여 함께 하는 기념식으로 거듭 나고 있다.

<표 41> 2022년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구분	
일정	2022.11.22.
장소	- 포스트타워 10층(서울 중구 소공로 70 소재) - 유튜브 ‘건설근로자공제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주요내용	-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유공자 포상, 치사, 퍼포먼스 등
행사전경	

## 나. 정부포상 수여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정부포상 수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와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 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포상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대국민 공모를 포함한 다양한 추천방법을 시행하며,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및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점의 표창만이 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됐고, 2022년에는 3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어 2010년 이래 총 456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표 42>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22.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총계	456	100	12	12	38	38	159	197
2010	25	6	-	-	3	3	9	10
2011	34	8	1	1	3	3	9	17
2012	36	8	1	1	3	3	12	16
2013	35	8	1	1	3	3	12	15
2014	35	8	1	1	3	3	12	15
2015	35	8	1	1	3	3	12	15
2016	36	8	1	1	3	3	12	16
2017	35	8	1	1	3	3	12	15
2018	34	6	1	1	2	2	12	16
2019	35	8	1	1	3	3	12	15
2020	40	8	1	1	3	3	15	17
2021	39	8	1	1	3	3	15	16
2022	37	8	1	1	3	3	15	14

## 다. 사진·영상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직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후, 수상작을 모아 찾아가는 ‘사진·영상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0년에서 2018년까지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다가 2019년부터 영상 분야를 추가하여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사진·영상 공모전이 개최된 것은 2019년부터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작품은 총 3,753점인데 그중에서 21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2022년 공모전은 약 2개월에 걸쳐 공모가 진행되었고, 관련 전문가들의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총 400여 점의 출품작 중 건설근로자 부문 6점과 일반부문 10점, 총 16점(사진 14점, 영상 2점)의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전시회에서 전시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메트로미술관,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 등에서 전시되었다.

또한, 시·공간 제약 없이 수상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VR전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제회 홍보센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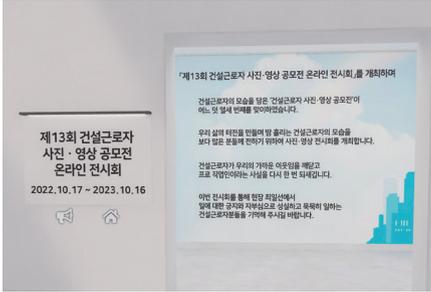
<표 43> 사진·영상 공모전 추진 현황

(22.12.31. 기준, 단위: 점)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접수	4,187	264	183	341	207	240	143
수상작	226	19	20	17	17	20	19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468	335	290	307	571	404	434
수상작	18	19	16	14(1)	15(1)	16(2)	16(2)

주: ( )값은 영상부문 수상작

<표 44> 2022년 온라인 사진·영상 전시회 실시 현황

구분		
일정	2022.10.17. ~ 2023.10.16.	
장소	- 수상작 VR 전시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제회 홈페이지 및 하나로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하여 온라인 전시회 실시 - 서울고용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안전보건공단 외부 전광판 등 유관기관을 통한 송출	
행사전경		

<표 45> 2022년 오프라인 사진·영상 전시회 실시 현황

구분	1회	2회	3회
일정	10.22. ~ 10.23.	11.7. ~ 11.10.	11.22.
장소	서울기능경기대회장	서울메트로미술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행사장
행사전경			

---

## 제4부

# 자산운용사업

| 제1장 | 사업 개요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 제3장 | 추진현황

---

# 4

제1장

# 사업 개요

자산운용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공제부금의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제부금을 증식하는 사업이다.

채권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해 공제부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산운용은 크게 4가지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안정성’으로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는 ‘유동성’으로 퇴직공제금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공공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제부금의 설치목적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넷째는 ‘수익성’으로서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제부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자산운용 프로세스는 투자전략(Plan) - 투자실행(Do) - 성과평가/리스크 관리(See)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투자전략(Plan)이란 주요 자산운용 방향 및 정책을 결정하고 중장기·연간 자산배분계획 및 연중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기별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중장기 공제부금 운용수익 제고 및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6> 투자전략(Plan)

자산운용지침(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산운용 방향 및 정책</li><li>▶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수립방법</li><li>▶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방법</li></ul>
-------------	--

중장기·연간 부금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수지 분석 및 자금운용규모 설정</li> <li>▶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설정</li> <li>▶ 연간 자산배분안 수립</li> </ul>
분기/월간 부금운용계획	▶ 자산배분계획, 금융시장 상황 및 가용자금 고려한 분기별/월별 운용계획 수립

둘째, 투자실행(Do)이란 자산배분계획을 바탕으로 주식·채권·대체투자의 개별 자산군 특성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개별 자산군의 운용 수익을 제고하고자 한다.

<표 47> 투자실행(Do)

거래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가능 은행 및 증권사 선정</li> <li>▶ 자산별 위탁운용사 선정(주식, 채권 등)</li> </ul>
투자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집행(안)에 대해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의결</li> <li>▶ 주식/채권/대체자산 관련 개별상품 투자(안)</li> <li>▶ 주식/채권 위탁운용 집행(안)</li> </ul>
투자집행	▶ 투자상품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기 투자집행

셋째, 성과평가/리스크 관리(See)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와 연간 허용위험한도 소진율 관리 등으로서, 투자 상품에 대한 성과평가와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표 48> 성과평가/리스크 관리(See)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자산운용점검회의 개최 및 월간 자산운용현황 보고</li> <li>▶ 위탁운용사 운용성과 정기평가</li> <li>▶ 위탁펀드 정기평가 및 환매평가 등</li> </ul>
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허용위험한도 소진율 관리</li> <li>▶ 리스크관리지침, 시장리스크 관리지침 등 준수 점검</li> </ul>
자산운용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전문기관(한국펀드평가)를 통한 평가실시</li> <li>▶ 기준수익률(BM)대비 성과 평가</li> <li>▶ 성과요인 분해 및 분석 실시</li> </ul>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2022년도에 추진한 자산운용사업의 주안점은 공제부금 자산 증식을 통해 퇴직공제금의 실질가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세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급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위기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단계별(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자산운용체계 개선 T/F를 운영하여 금융시장 환경 변화 및 공제부금 이자 지급방식을 고려, 공제부금 특성에 맞는 효율적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주요국 건축 가속화에 따른 국내외 증시 및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 및 전술적 자산배분, 주식·채권의 탄력적 시장대응과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셋째,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분기별 신용위험량 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3년도 공제부금 신용리스크 한도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규정 및 자산운용지침(IPS)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가.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연간 부금운용계획(전략적 자산배분안 포함)의 수립 및 변경, 자산운용지침(IPS)의 제·개정,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이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는 있으나, 위원회 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겸임할 수는 없다.

<표 49> 자산운용위원회

기능	▶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권한 및 책임	▶ 자산운용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위원 구성 (9인)	▶ 내부(2인) : 이사장(위원장), 전무이사 ▶ 외부(7인) : 대학교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 나.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개별 투자 건을 심의하고 투자상품을 선정하는 등 투자 의사결정 전반을 담당한다. 심의·의결 사항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국내외 SOC 및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국내외 M&A 관련 사모펀드 및 기타 대체투자에 대한 결정 및 변경 등이며, 공제회 투자의 대부분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외부 위원의 경우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석대상 위원을 지명하고 있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활용할 수 있다.

### <표 50> 투자심의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투자건 검토 및 심의</li> <li>▶ 주식, 채권 관련 투자의사결정 및 대체투자상품 선정</li> </ul>
권한 및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주식 및 채권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결정 및 변경</li> <li>▶ 국내외 SOC 및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li> <li>▶ 국내외 M&amp;A관련 사모펀드 및 기타 대체투자 결정 및 변경</li> </ul>
위원 구성 (5인) ※ 외부위원 POOL(55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2인) : 전무이사(위원장), 자산운용본부장</li> <li>▶ 외부(3인) :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li> </ul>

###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주요 심의사항은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 위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지침 및 성과평가지침의 제·개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정책 및 기준, 자산운용 성과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표 51> 리스크관리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li> </ul>
권한 및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li> <li>▶ 위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허용위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li> <li>▶ 리스크관리지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부금 운용 성과평가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부금 운용성과 측정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li> </ul>
위원 구성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7인) : 대학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li> <li>※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li> </ul>

## 2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운용전략 구축

### 가. 금융시장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성 제고

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례적인 물가 급등 및 글로벌 중앙은행의 큰 폭의 금리 인상 등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표 52> '22년 금융시장 현황

(22.12.31. 기준)

구분		'21년(A)	'22년(B)	전년대비
국내	KOSPI	2,978pt	2,236pt	△24.9%
	국고채 3년물	1.80%	3.73%	+1.93%p
해외 : 미국	S&P500	4,766pt	3,840pt	△19.4%
	미국채 10년물	1.51%	3.88%	+2.37%p
원/달러 환율		1,189원	1,265원	+6.4%

이를 위해 금융시장 상황 및 현행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대응주기별(단기·중기·장기)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등 '22년 5월 금융시장 위기대응 종합체계를 구축하였다.

단기 전략으로 공제부금 운용수익률 및 시장지표 점검, 외부기관을 활용한 금융시장 세미나 실시, 금융시장 위기대응을 위한 자산배분 비중 조정 및 점검(월별·분기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기 자산 적정 운용 비중을 점검('22.2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수익률 방어에 기여하기 위한 자산군을 모색하였다.

<표 53> [단기] 금융시장 위기대응 종합계획

단기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단기자산 운용비중 점검('22.2월)</li> <li>▶ 공제부금 운용수익률 및 시장지표 점검(일간)</li> <li>▶ 금융시장 현황점검 및 전망, 운용전략 세미나 실시(증권사)(수시)</li> <li>▶ 금융시장 위기대응을 위한 전술적 자산배분 조정 및 점검(월별·분기별)</li> <li>▶ 금융시장 위기관리회의 실시(매주)</li> </ul>
-----------	--

중기 전략은 연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공제부금 운용전망('22.3월), 대체투자 세부운용전략 변경('22.5월), 2022년 컨틴전시 계획(안)('22.6월)등이다. 특히, 컨틴전시 계획(안)은 자산운용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상황별 대응전략을 구축하였다.

### <표 54> [중기] 금융시장 위기대응 종합계획

중기 (3개월~연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공제부금 운용전망 보고('22.3월)</li> <li>▶ 2022년 대체투자 세부운용전략 변경('22.5월)</li> <li>▶ 2022년 컨틴전시 계획(안) 수립 →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및 자문의견 수렴('22.6월)</li> <li>▶ 2022년도 자산운용본부 워크숍('22.12월)</li> </ul>
-------------	--

장기 전략은 타 기관 벤치마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이자지급과 공제부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자산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추진내용은 자산운용체계 개선 T/F를 운영하여 공제부금 수익 변동성을 축소하고 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표 55> 자산운용체계 개선 T/F 단계별 추진 계획

장기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체계 개선 T/F 운영 → 공제부금 수익 변동성 축소와 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는 체계 구축</li> </ul>
------------	---

## 나. 자산운용체계 개선 T/F를 통한 안정성 제고 및 고수익 기반 구축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및 공제부금 이자 지급방식 변경('20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3월부터 자산운용체계 개선 T/F를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자산운용체계 내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표 56> 자산운용체계 개선 T/F 결과**

① 대출형 대체투자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단일 대체투자(지분형 90%) 자산군 분류 및 기준수익률 적용</li> <li>▶ (변경) 지분형·대출형 대체투자 자산군 분류 및 기준수익률 적용 → 대출형 대체투자 별도 비중 부여 및 기준수익률 세분화</li> </ul>
② 단기자산 허용범위 설정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간 부금운용계획 수립 시 설정</li> <li>▶ (변경) 분기 부금운용계획 수립 시 설정 →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자산배분 기반 마련</li> </ul>
③ 중장기 자산운용체계 연구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13년에 실시한 중장기 부금운용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한 체계</li> <li>▶ (변경) '23년 중장기 자산운용체계 연구용역 추진 →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新 자산운용체계 구축</li> </ul>

## 다.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의 안정적 이행 및 전술적 자산배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운용전략에 기반을 둔 효율적 자산배분과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적정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022년은 '21년에 수립한 중장기 자산배분안(2022년~2026년)의 첫해로서, 2022년 운용계획에 따른 투자비중 준수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한 탄력적 비중 조정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이행하였다. 실제로 증시 하락 및 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주식·채권 각각 목표비중 대비 낮은 비중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연간 부금운용계획·세부운용전략(각 1회)과 분기·월별 운용계획을 마련(분기 4회/월별 12회)하였고, 신규 투자트렌드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ESG 등 신규 투자트렌드 리서치, 자산운용본부 워크숍 개최(1회), 금융시장 관련 외부 전문가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산운용위원회 부의 안건을 늘려('21년 10건→'22년 14건) 외부위원의 제언사항을 적극 수렴하였다. 이 외에, 매월 부금운용현황을 점검(12회)했고, 매주 전무이사 주관 자산운용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표 57> 2022년도 부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자산배분 및 허용범위**

자산군	'21년 계획 비중	'22년 계획 비중	'22년 실제 비중	허용범위
국내주식	3.4%	3.4%	2.2%	±3.0%p
해외주식	4.8%	3.8%	2.8%	±3.0%p

자산군	'21년 계획 비중	'22년 계획 비중	'22년 실제 비중	허용범위
국내채권	52.4%	55.7%	57.0%	±10.0%p
해외채권	6.8%	5.7%	2.9%	±3.0%p
대체투자	29.6%	27.4%	27.2%	±6.0%p
단기자산	3.0%	4.0%	7.9%	±7.0%p

<표 58>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술적 자산배분 강화

주기적 운용계획 수립	분기	▶ 매분기 부금운용계획 ⇨ 연간 부금운용계획 구체화 및 시장대응
	매월	▶ 월별 부금운용계획 ⇨ 분기 운용계획 구체화 및 시장대응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운용현황 점검	분기	▶ 분기별 부금운용현황 ⇨ 연간 운용계획 대비 자산배분 및 성과 점검
	매월	▶ 월별 부금운용현황 ⇨ 분기 운용계획 대비 자산배분 및 성과 점검
	매주	▶ 주간 금융시장 동향 및 수익률 점검 ⇨ 월별 운용계획 점검 및 시장대응

### 3 시장상황에 대응한 탄력적 자산운용

#### 가. 위기상황에 대응한 시장 탄력적 주식운용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비상대책 회의 및 위기관리 TF를 통해 지수 구간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국내외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연간 자산배분계획(7.2%) 대비 △2.2%p 축소 운용해 주식의 운용손실을 경감하였다.

국내주식의 경우 지수 하락 후 반등구간(KOSPI 기준 2,450pt~2,520pt) 분할로 비중을 축소해 운용사를 교체하였고, 해외주식의 경우 연초 지수 고점(S&P500 기준 4,800pt)에서 액티브 펀드 회수를 통한 차익실현을 진행하였으며, 지수 등락에 따라 추가로 투자 및 회수를 진행하였다. 해외주식의 경우 포트폴리오 내 지역별(신흥국 비중 축소), 스타일별(방어적 섹터 확대)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3분기 이후 국내외 증시 바닥구간에서 투자집행을 통해 운용규모를 소폭 확대한 결과, 국내주식은 +0.69%p, 해외주식은 +0.31%p BM대비 성과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 나.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술적 채권운용 강화

대내외 물가급등에 따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

서 시장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위기관리 TF 구성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술적 채권 운용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 운용수익 확보에 주력하였다.

국내채권의 경우 금리상승 시 평가손실이 증가하는 시가 채권 펀드 운용 비중을 축소하고, 고정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한 만기보유채권 등 장부가 채권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AA-미만 회사채에 대한 선제적 투자제한 등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해외채권의 경우 연간 자산배분계획(5.7%) 대비 운용규모를 축소( $\Delta 2.8\%p$ )하여 운용함으로써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평가손실을 방어하였다.

## 다. 대체투자 비중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 성장·경기 방어·물가 연동 등이 가능한 자산과 회수안정성 강화가 가능한 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등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대체투자상품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금리매력이 높은 시장상황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신순위 중심의 대출형 자산 비중을 확대하였다.

보유 중인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보고 등 사후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투자상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2022년에는 대체투자 위탁운용 상품에 대한 정기 평가와 대출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 점검을 실시하여 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보유상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안정적인 배당금 수취 및 보유자산 매각 수익을 바탕으로 수익률 7.72%, 목표 대비 2.42%p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 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ESG 투자 확대

2022년은 채권·대체투자 중심으로 ESG 투자를 확대하였는데, 채권의 경우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한화에너지 및 한국남동발전 등 녹색채권(Green Bond),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속가능한 채권(Sustainability Bond), 한국장학재단 등 사회적책임채권(Social Bond)에 투자하여 채권 포트폴리오 내 ESG 투자 비중을 전년대비 약 3.4%p(14.1%→17.5%) 확대하였다.

대체투자는 지열 발전소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분, LEED골드 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인증 빌딩 등 친환경 관련 자산에 투자하였으며,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서울 소재 청년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집행하였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와 같은 ESG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 4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 가.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방안 개선을 통한 시장모니터링 체계 강화

'21.12월 수립한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 개선방안」에 의한 대응 체계에 따라 시장 금리 급등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조기에 대응하였다. 개선 방안은 13가지 지표(KOSPI, VKOSPI, MSCI ACWI, VIX, 국고채, 금리스프레드, 미국채 10년물 금리, TED스프레드, 시장 VaR 등)로 구성된 개별지표에 대한 점수 부여 기준, 기준점수, 구간별 점수, 최대점수를 부여하여 위기인식지수(종합점수)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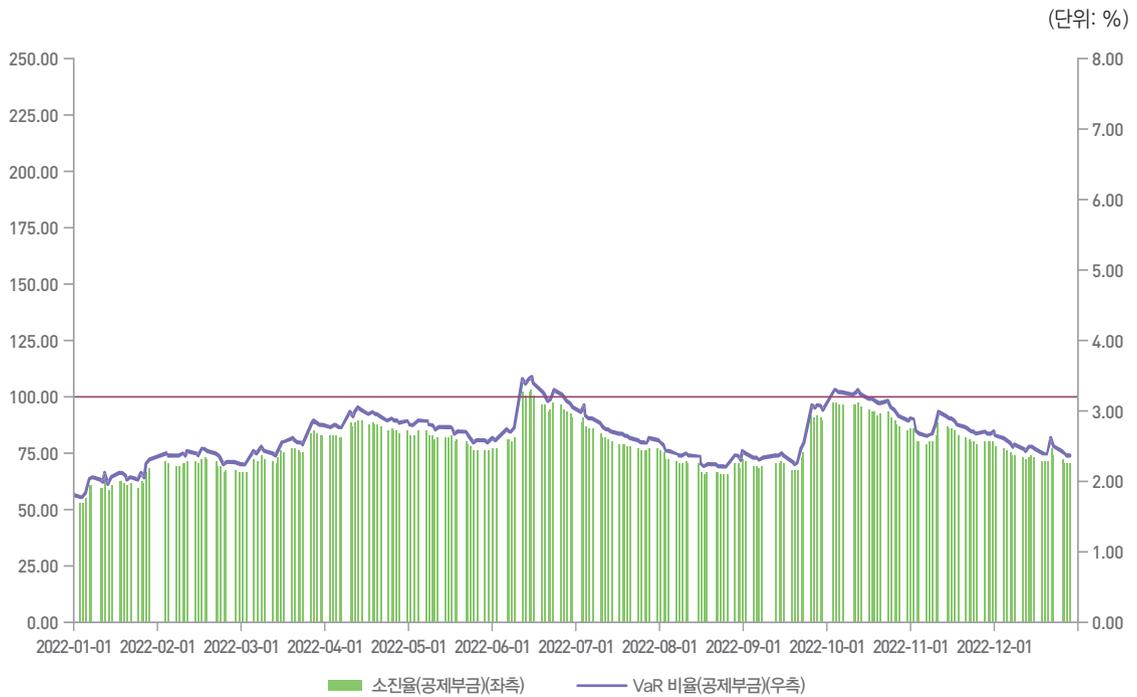
'22년 중에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한국은행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금리 급등, 주가 지수 폭락 등이 발생하였다. 주식 시장의 경우 전년 말과 비교하여 국내 24.89% 하락, 미국 19.43% 하락하였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95%에서 3.727%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1%에서 3.88%로 급등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위기인식지수(정상-주의-경계-위기 단계) 상 연중 내내 높은 위기인식점수를 오르내리며 주의~위기 단계를 기록하였다.

시장변동성이 높아지며 주식·채권 간 양(+)의 상관관계가 커짐에 따라 시장 VaR한도 소진율이 증가하였고, 자산군별 변동성도 국내주식 1.34배(13.68%→18.30%), 해외주식 1.59배(11.51%→18.31%), 국내채권 2.17배(1.20%→2.60%), 해외채권 1.92배(2.84%→5.44%)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식과 채권의 양(+)의 상관관계는 4~5월 감소 추세를 보이다 6월 및 9월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위기관리 T/F를 7차례 운영하여 보유 상품 모니터링 강화 및 점검, 대응방안 수립 및 검토 후 대응방안의 실행을 결정하였다. 시가 주식 및 채권은 축소하고 장부가 채권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시장 VaR 한도 소진율을 줄여 나갔다. 그리고 펀드별 손실한도 초과에 따른 회수(또는 유보 조치)를 조치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시장 요인으로 대부분의 상품이 손실한도 초과되는 한계점 및 채권자산의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23년도 손실한도 설정시 채권 손실한도를 확대하였다.(설정액 대비 누적 수익률 기준을 국내 채권  $\Delta 1.5\% \rightarrow \Delta 3.0\%$ , 해외채권  $\Delta 3\% \rightarrow \Delta 7\%$ , 절대 수익형  $\Delta 2\% \rightarrow \Delta 5\%$ )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 개선안에 따라 시장 VaR 소진율은 연간 한도 내 마감하였고, 위기상황도 '22년말 이후 정상단계로 안정화되었다. 시장수익률(BM) 변동성(1.99%) 대비 낮은 실현 변동성(1.66%)으로 안정적인 공제부금 운용을 달성하였다.

[그림 9] 2022년 시장 VaR 비율 및 한도 소진율



## 나.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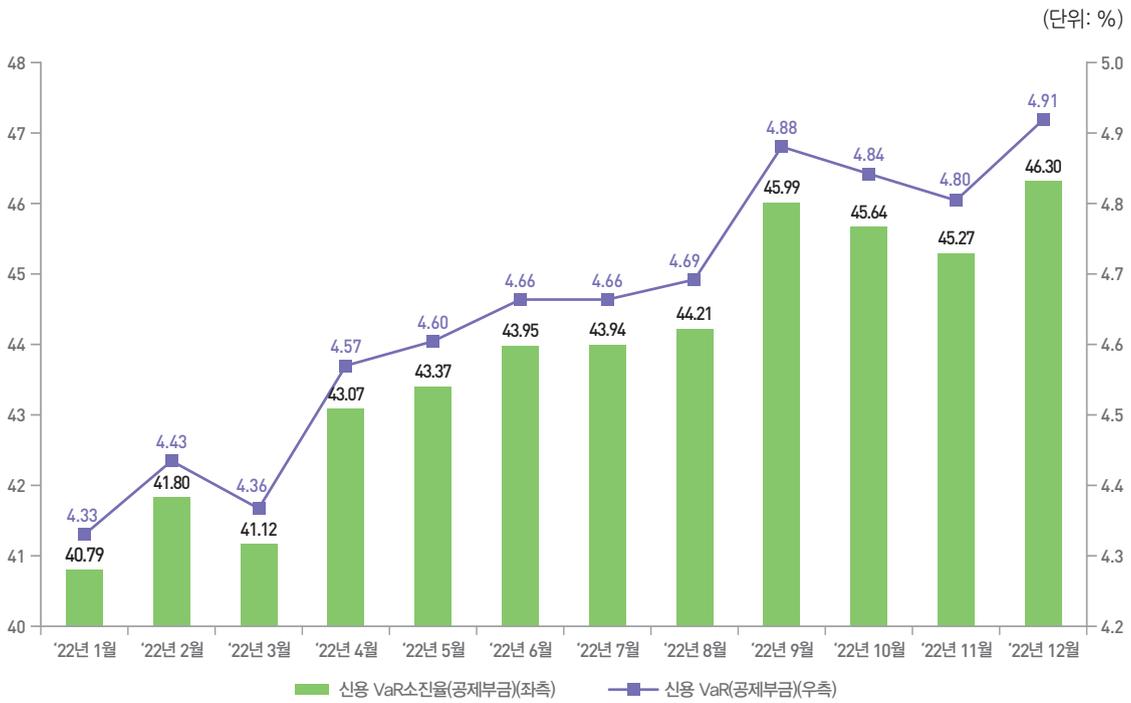
시가주식 및 시가채권의 일부 자산군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단기자산, 채권(장부가자산 포함) 및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분기별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안에 따라 단기,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위험량을 산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1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신용리스크 한도(10.61%)를 설정하였고, 관리 계획에 따라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채권('20년 2조 3,679억원 → '22년 2조 7,785억원) 및 대체투자('20년 1조385억원 → 1조 2,606억원)의 투자규모 증가로 신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중장기 리스크관리계획('20~'24년)에 따라 시장리스크 중심 관리체계에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운영리스크 관리와 함께 자산 운용에 대한 3대 주요 리스크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용리스크는 기업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증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투자상품에 대한 신용변동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시 신용한도 변동에 대해 관리하였다. 이에 신용리스크 한도 소진율은 40%에서 46% 수준 내에서 관리되었다.

[그림 10] 2022년 신용 VaR 비율 및 한도 소진율



## 다. 투자상품 사전/사후 관리강화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검토와 대체투자 현황 실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상품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투자 현황을 점검하였다. 금리 제시형 1건, 부동산·기업투자·인프라 등 대체분야 7건 등 8건의 사전 리스크 검토를 실시하였다. 사후적 리스크 관리에서는 대체투자 상품별 현황을 5월말, 10월말 기준으로 점검하였고, 월별로 대체투자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리스크 검토 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황·전망에 대한 분석과 각종 실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고, 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사전 심사기능을 제고하였으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성과현황 점검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변동 등 예상하지 못한 이슈에 대응하여 대체자산 상품 특성별 세부 점검 및 투자지역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의위원 전문가집단(Pool) 관리 및 위원 선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OOL에 위촉된 전문가는 증권분야 24인, 대체투자 31인으로 총 55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연기금·공제회의 투자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 추가위촉을 통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운용 체계 개선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횟수를 5회로 늘려 리스크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제언 사항을 반영하여 리스크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 라.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대체투자상품 공정가치 평가

연초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공제부금 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제부금 운용 성과평가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환류체계를 거쳐 운용 및 투자전략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상품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단위로 공제부금 운용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공제회 정관 제42조(부금의 조성 및 관리)에 의거하여 자산운용성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공제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간 성과관리 체계의 강화를 통해 목표수익률 달성 및 시장수익률(BM) 초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장기투자자산이면서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의 측정 및 부실화 가능성의 조기 인식 등이 어렵다. 이에 공제회는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결산 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인식하는 등 반기별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상자산 58건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평가가치는 약 293억원 상승하였다.

### <표 59> 2022년도 공정가치 평가결과

(22.12.31.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투자건수 (평가대상)	원금잔액	평가액		차이 (B-A)
			반영전(A)	반영후(B)	
부 동 산	30(26)	5,749	5,732	5,735	+3
기업투자	25(24)	3,927	4,302	4,592	+290
인 프 라	10(8)	2,902	2,904	2,904	-
<b>전 체</b>	<b>65(58)</b>	<b>12,578</b>	<b>12,938</b>	<b>13,231</b>	<b>+293</b>

제3장

# 추진현황

## 1 자산운용 현황

공제회 자산운용 규모는 2022년 12월 말 평가액 기준 4조 6,359억 원이며, 세부 운용규모는 주식 2,320억원(5.0%), 채권 2조 7,785억 원(59.9%), 대체투자 1조 2,606억 원(27.2%), 단기자산 3,649억 원(7.9%)이다.

<표 60> 공제부금 자산운용규모

(22.12.31.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투자자산	2022년 말		2021년 말	전년대비 (A-B)
		평가액	투자원금(A)	투자원금(B)	
중장기	주식	2,320	2,540	2,900	△360
	채권	27,785	27,804	25,290	+2,514
	대체투자	12,606	11,937	9,968	+1,969
<b>계</b>		<b>42,710</b>	<b>42,281</b>	<b>38,158</b>	<b>+4,123</b>
단기자산		3,649	3,630	3,565	+65
자산총계		46,359	45,911	41,723	+4,188

2022년도 이례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증시 하락으로 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운용 수익률은 -0.14%를 기록, 목표수익률 2.65%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기준수익률(BM) 대비 +0.65%p 상회하였으며, 타 연기금 대비 수익률 방어에 성공하였다. 2022년 금융시장 부진에 따른 투자자산 수익률 하락에 방어하기 위해 연간 계획 대비 주식 비중

을 축소 운용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으로 수익률 방어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산별 수익률은 단기자산 2.40%, 주식 -21.52%, 채권 -1.15%, 대체투자 7.72%를 기록하였다.

투자 자산별 성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른 긴축우려로 국내 -24.2%, 해외 -19.3%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BM대비 국내 +0.69%p, 해외 +0.31%p 초과달성 하였다.

채권의 경우 선진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 영향으로 국내 -0.32%, 해외 -14.70%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수익률 및 BM대비 모두 하회하였다. 그 외 단기 현금성 자산은 수시물 운용기간 조정과 우수상품 발굴로 2.40%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수익률(1.30%) 달성 및 BM대비로는 +0.21%p 초과 달성하였다.

대체투자는 신규 상품의 발굴 투자 및 기존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7.72%의 수익률을 기록해, 목표수익률(4.69%)을 초과달성 하였다.

### <표 61> 공제부금 자산별 운용손익 및 성과

(22.12.31. 기준, 단위: 억 원, %, %p)

구분	투자자산		운용손익		운용성과	
			손익	수익률(A)	BM(B)	BM 대비(A-B)
종장기	주식	국내	△338	△24.20	△24.89	+0.69
		해외	△308	△19.27	△19.58	+0.31
		소계	△645	△21.52	△21.79	+0.27
	채권	국내	△65	△0.32	0.11	△0.43
		해외	△231	△14.70	△11.37	△3.33
		소계	△295	△1.15	△0.98	△0.17
	대체투자		847	7.72	5.30	+2.42
	<b>계</b>		<b>△94</b>	<b>△0.35</b>	<b>△0.91</b>	<b>+0.56</b>
	단기자산		70	2.40	2.19	+0.21
자산총계		△24	△0.14	△0.79	+0.65	

##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공제회의 자산운용 규모는 설립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2년 1천억 원 달성을 시작으로 2007년 및 2008년 공제부금 일액 증가, 2010년 민간공사 등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부금납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 최초로 운용규모 1조 원을 돌파한 후, 2013년 2조 원 도달에 이어 2016년 3조 원, 2020년 4조원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운용규모 4조 6,359억 원을 달성하였고, -0.1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11]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표 62>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22.12.31. 기준, 단위: 억 원, %)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1998	1	7.77	2011	16,104	1.63
1999	72	7.77	2012	18,515	2.10
2000	334	8.54	2013	22,152	3.61
2001	725	6.04	2014	23,766	3.57
2002	1,172	5.02	2015	27,065	3.11
2003	1,844	4.76	2016	30,404	1.95
2004	2,885	4.52	2017	34,775	4.24
2005	4,178	5.32	2018	37,027	0.27
2006	5,539	6.27	2019	39,118	4.46
2007	7,404	6.96	2020	40,104	4.81
2008	8,624	△6.56	2021	42,945	4.02
2009	11,490	11.05	2022	46,359	△0.14
2010	14,128	6.02			

또한, 부금회계로 운용해 온 공제부금은 「미확인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운영수익」 특별회계가 2014년 1월 1일부로 설치됨에 따라 미회수공제증지 판매원금과 이자적립금 등을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되었다. 2022년의 특별회계의 운용 규모는 2,166억 원이다.

**<표 63>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22.12.31. 기준, 단위: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용 규모	2,034	2,070	2,114	2,188	2,180	2,242	2,320	2,308	2,166



# 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 제 1장 |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 제 2장 |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 이용자 안내

## 1. 본 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수행하는 퇴직공제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공제회에 신고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통계 수치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상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가 당해연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모든 날이 아니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시) 근로자 A씨가 2022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200일을 일한 후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50일을 일한 경우 2022년도 A씨의 적립일수는 200일이 됩니다.

- 또한, 적립일수는 근로자의 실제 작업시간을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B씨가 2022년 5월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B씨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하루에 1.5일로 환산하여 15일이 되며,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날짜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 2. 자료 추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EDI와 전자카드 등의 신고를 통해 공제회에 제출한 신고일수 자료를 근로자의 ‘근로 연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습니다.

- 직종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적립일수 자료를 근로자 별로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적립일수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하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자료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특성은 공사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공종별, 발주자별 가입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분류가 불가능한 자료는 ‘기타’에 포함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3. 동 자료집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 건설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 건설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 퇴직공제 :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또는 65세 도달(252일 미만일 경우)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피공제자 :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적립일수와 짝을 이뤄 기술할 때 ‘적립근로자’라고도 표기함
- 공제부금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할 경우 건설사업주가 1인 1일당 6,500원\*씩 계산하여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  
\* 1일 공제부금액 : 6,500원(근로자 적립분 6,200원 + 사업·운영비 300원)
-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또는 65세(252일 미만일 경우)에 이른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기간 동안 납부된 공제부금(근로자 적립분)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
- 적립일수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 그 명의로 적립된 공제부금 납부일수
- 근무기간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적립일수가 처음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 신고된 때까지 역법에 따라 계산한 기간
- 투입인원 :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그 날의 인원 수
- 직종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며, 그 복잡함과 책임의 정도가 다른 직무의 계열
- 공종 : 건설공사의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의 종목

### 4.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제부금 납부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에 해당됨
-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청

구할 수 있으므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단, 법 개정('19.11.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사망 또는 만65세에 도달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함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

## 5. 자료 추출 결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유량(flow) 지표에는 적립일수, 신규가입자수, 퇴직자수, 근무기간, 퇴직공제금 지급현황 등이 있습니다.
  - 적립일수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근로자에게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수 기준임
  - 신규가입자수는 당해 연도에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의 수를, 퇴직자수는 근로자가 그 동안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더 이상 건설 일을 하지 않게 된 사람의 수를 의미함
  -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적립일수가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신고된 때까지의 기간 기준임
  - 퇴직공제금 지급현황은 당해 연도 1년 동안 퇴직공제금 신청을 접수한 후 지급까지 완료한 사안을 기준으로 함
- 저장(stock) 지표에는 피공제자 현황,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현황 및 준공사업장 현황 등이 있습니다.
  - 피공제자는 당해 연도에 퇴직공제에 가입돼 있는 건설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가입사업장 현황은 당해 연도에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준공사업장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준공처리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6. 통계 수치는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발간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http://www.cw.or.kr))를 통해서 본 사업연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 1 건설경기 동향

### 고찰의 필요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크게 퇴직공제, 고용지원, 복지지원, 자산운용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본 공제회 사업연보는 2022년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경기 및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의 정책대상이자 출발점 그리고 추진 실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설경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수요를 생산물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고 부른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건설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의미다.

요컨대, 공제회의 사업이 활성화될지 여부 또는 추진 실적의 증감은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은 다시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둘러싼 건설경기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sup>

### 가. 개요

건설생산물의 수요 및 공급의 활성화 정도를 건설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경기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알려주는 건설경기지수를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1) 주요 통계는 박철한(2022.11), 202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2)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동행지수(Coincident Index)란 현재의 경기 상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하고, 선행지수(Leading Index)란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건설관련 지표 중 건축허가나 건설수주 활동이 건설시공 활동에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면 적 통계나 건설수주 통계가 건설투자의 선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을 측정할 건설기성액은 건설투자의 동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수주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금액과 납기 등으로 표현된다.<sup>3)</sup>

건설투자란 넓은 의미로는 자본으로서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 또는 건축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의 각 측면에서의 자본 투자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실적을 조사한 것이므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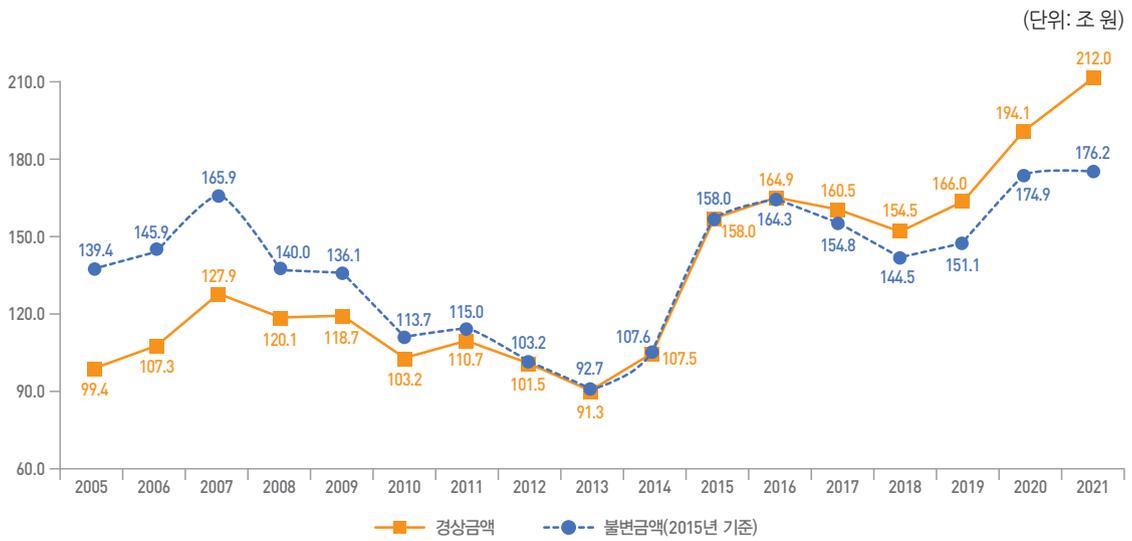
퇴직공제사업과 관련해 예를 들어본다면, 피공제자수의 동행지수는 건설투자·건설기성·건설업취업자수 등이고, 선행지수는 건설수주라고 할 수 있다.

## 나. 건설수주 동향 : 선행지수

최근 20년간 건설수주의 중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네 번의 정점과 세 번의 저점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상승세로 1997년에 정점에 이른 후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점까지 하락한 후 회복되어 2007년에 다시 정점에 도달했다.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저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상승해 2016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2018년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여 2021년에 경상금액 212조 원, 불변금액(2015년 기준) 176.2조 원으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의 2021년 호조세는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의 호조세를 선도하게 된다.

3) 건설수주, 건설투자, 건설기성 등의 정의에 대해 참조함. 통계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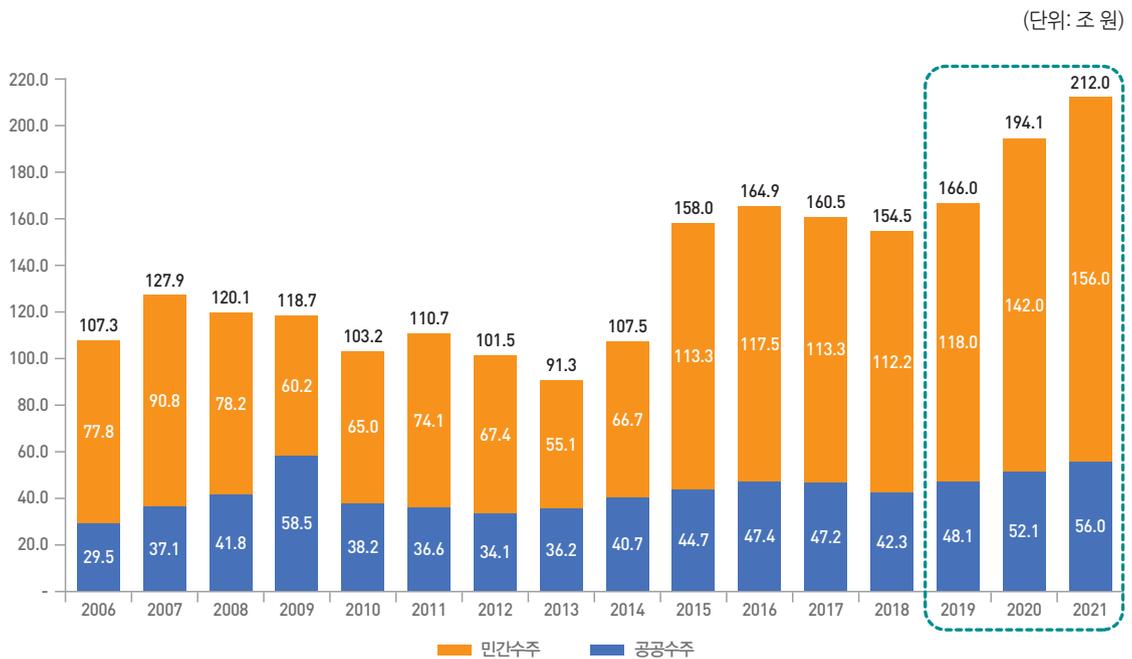
[그림 12] 국내 건설수주 증장기 추이



주 : 불변금액은 2015년 기준

자료 : 박철한(2022.11), 2023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 13]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자료 : 박철한(2022.11), 2023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다. 건설투자 동향 : 동행지수

2022년의 건설투자는 258.6조 원(2015년 연쇄가격 기준, 전망치)으로 2021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는데, 상반기에는 4.5%, 하반기에는 0.5% 각각 감소하였다.

<표 64> 건설투자 추이

(단위: 조 원, 전년 동기비 %)

구분	2020			2021			2022			202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연간
건설투자	129.6	139.7	269.3	127.4	137.5	265.0	121.7	136.9	258.6	258.9
증감률	3.5	-0.2	1.5	-1.7	-1.5	-1.6	-4.5	-0.5	-2.4	0.4

주: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e: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박철한(2022.11), 2023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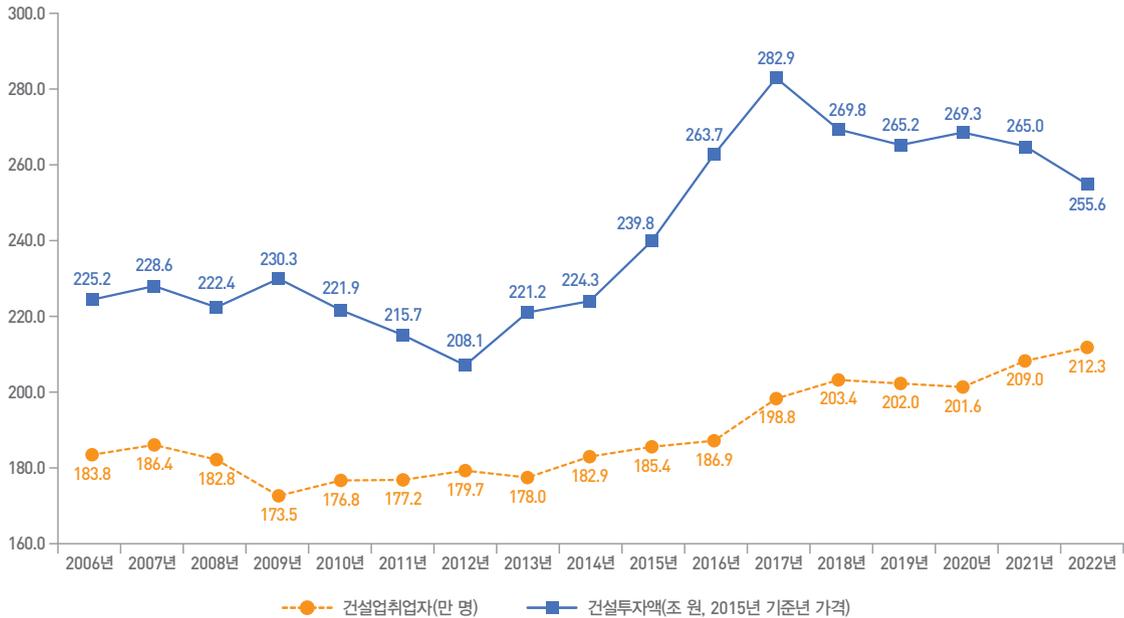
## 2 건설노동시장 동향

### 가. 건설업취업자 동향

건설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자영자 등)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업취업자다. 건설업취업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9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건설업취업자는 건설경기의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와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인다. 양자는 건설업의 생산물 수요와 그 생산물의 파생수요 간의 관계이므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이전과 2013년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나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그리고 2022년에도 양자의 흐름이 괴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설은 없다.

[그림 14]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각각 연간 자료)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인원수 구성비가 높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17천 명, 47.9%), 단순노무종사자(335천 명, 15.8%), 사무종사자(293천 명, 1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15천 명, 10.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79천 명, 8.4%) 등이다.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아우르는 건설기능인력은 1,532천 명으로 전체 건설업취업자 중 72.2%를 차지하였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13천 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39천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5천 명), 사무종사자(22천 명), 판매종사자(7천 명)이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종사자(-44천 명), 관리자(-18천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천 명) 등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2022년과 2021년 1년간의 변화만을 살펴보면, 총 33천 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3천 명)의 증가가 컸으며, 단순노무자는 8천 명 증가하였다.

<표 65>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8년간

인원 수(천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2-'14
전체	2,110	1,854	1,869	1,988	2,034	2,020	2,016	2,090	2,123	13
관리자	76	70	64	53	66	71	55	58	58	-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0	163	175	184	180	168	176	192	215	25
사무종사자	271	235	225	244	254	252	274	290	293	22
서비스종사자	2	2	3	1	2	1	2	1	2	0
판매종사자	14	15	20	20	22	22	22	22	21	7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7	3	2	3	2	4	3	3	3	-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78	924	915	950	969	990	971	1,021	1,017	3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3	192	186	190	174	169	161	177	179	-14
단순노무종사자	379	250	281	342	364	342	353	327	335	-44
소계(기능인력)	1,550	1,366	1,381	1,482	1,508	1,501	1,485	1,525	1,532	-18
구성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2-'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자	3.6	3.8	3.4	2.7	3.2	3.5	2.7	2.8	2.7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0	8.8	9.3	9.3	8.9	8.3	8.7	9.2	10.1	1.1
사무종사자	12.9	12.7	12.0	12.3	12.5	12.5	13.6	13.9	13.8	0.9
서비스종사자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판매종사자	0.7	0.8	1.1	1.0	1.1	1.1	1.1	1.0	1.0	0.3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0.3	0.2	0.1	0.2	0.1	0.2	0.1	0.2	0.1	-0.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6.3	49.8	48.9	47.8	47.7	49.0	48.2	48.8	47.9	1.6

구성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2-'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2	10.4	9.9	9.6	8.6	8.4	8.0	8.4	8.4	-0.8
단순노무종사자	18.0	13.5	15.0	17.2	17.9	16.9	17.5	15.7	15.8	-2.2
소계(기능인력)	73.5	73.7	73.9	74.5	74.1	74.3	73.7	72.9	72.2	-1.3

주 : 건설기능인력은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평균치

## 나.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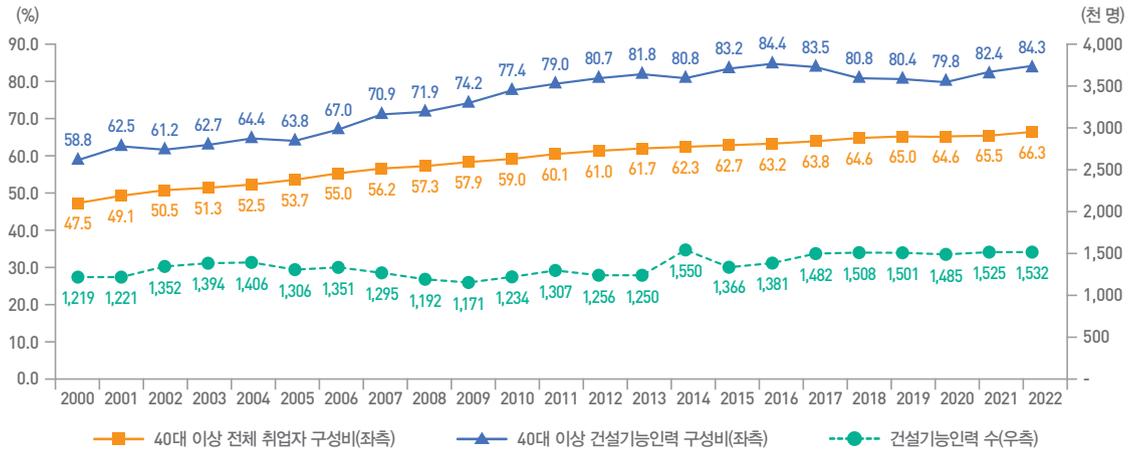
건설업취업자의 9개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3개 직종이 대체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인데, 건설기술인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건설기능인력'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대체로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공제회 제반 사업의 정책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본 사업연보에서도 건설업취업자 중 특히 건설기능인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 왔다. 인원수는 2000년에 1,219천 명이던 것이 2009년에 1,171천 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1,532천 명으로 증가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정도는 40대 이상 구성비를 전체 취업자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0년에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58.8%이고 전체 취업자의 경우 그것이 47.5%로 나타나 양자 간의 격차가 11.3%p였는데, 2022년에는 각각 84.3%와 66.3%로 그 격차가 18.0%p로 크게 벌어졌다. 2017년의 19.7%p 격차에 비해 약간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향후 건설현장 숙련인력 확보의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제회 제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다.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수행할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부족해질 경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훈련, 취업, 복지 등 공제회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이래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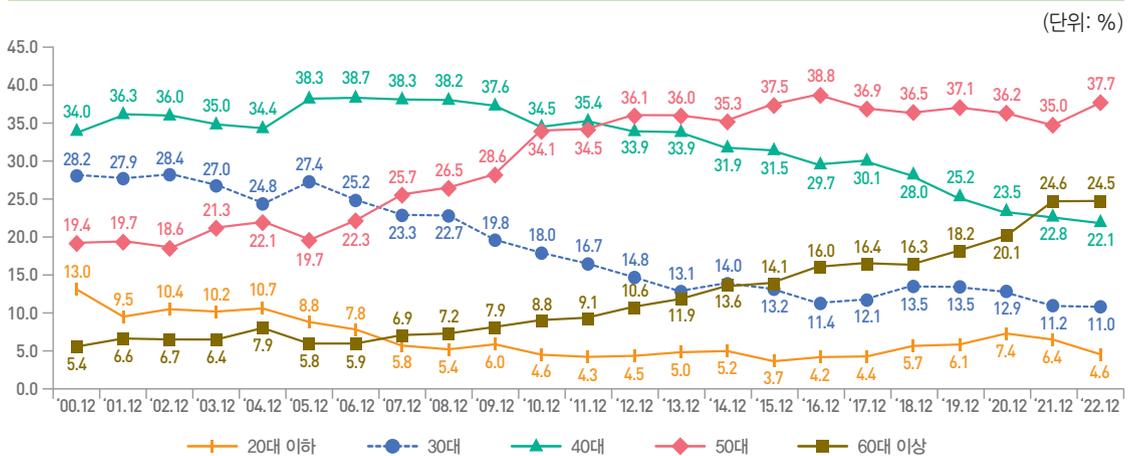
[그림 15]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주: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합한 개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건설기능인력 수의 경우 2014년 이후부터는 각 연도 평균

지난 22년 간 60대 이상(19.1%p)과 50대(18.3%p)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30대(-17.2%p), 40대(-11.9%p), 20대 이하(-8.4%p)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눈여겨볼 것은 2021년에 최초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40대 비중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젊은 층의 진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림 16]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주: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합한 개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 제2장

#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퇴직공제사업은 공제회의 주된 사업인 만큼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하고 각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공제부금 적립 일수, 수납액,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관한 특성별 분석은 2021년과 2022년 2개 연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감 정도를 비교했다.

## 1 개요

### 가. 총괄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2022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해보면, 2022년 현재 퇴직자를 제외한 피공제자 누계는 5,407,258명이고, 퇴직자 누계는 2,145,961명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4조 1,605억 원이다.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는 1,631,125명이고 연간 적립일수는 145,332천 일이다. 2022년도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75,183개소이고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8,539억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1,357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액 총계는 7조 9,159억 원이다.

그리고 2022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254,693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4,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869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급인원은 2,129,114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 총계는 3조 7,555억 원으로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64천 원이다.

<표 66>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22)

구분		합계	1998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요 항목 누계	피공제자 누계(명) (퇴직자 제외)	5,407,258	4,751,536	5,101,528	5,359,717	5,528,796	5,379,254	5,284,917	5,407,258
	퇴직자 누계(명)	2,145,961	482,442	582,934	708,318	911,640	1,417,429	1,880,874	2,145,961
	공제부금 누계(억 원) (지급액 제외)(D-F)	41,605	29,658	3,376	2,442	702	180	1,469	3,778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적립근로자(명)(A)	-	-	1,701,452	1,667,392	1,616,741	1,578,872	1,574,063	1,631,125
	적립일수(천일)(B)	-	-	144,024	138,180	134,529	129,777	129,652	145,332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	납부사업장(개소)(C)	599,599	295,192	34,767	36,516	39,354	46,327	72,260	75,183
	납부액(억 원)(D)	79,159	39,522	6,043	5,950	6,096	6,226	6,784	8,53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천 원)(D/C)	13,202	13,389	17,381	16,293	15,491	13,440	9,388	11,357
연도별 퇴직 공제금 지급	지급인원(명)(E)	2,129,114	481,628	100,541	123,884	204,391	503,416	460,561	254,693
	지급액(억 원)(F)	37,555	9,864	2,667	3,508	5,395	6,046	5,315	4,760
	1인당 평균 지급액 (천 원)(F/E)	1,764	2,048	2,653	2,831	2,639	1,201	1,154	1,869

- 주 : 1) 연도별 적립근로자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다른 해에도 중복되므로 일정 기간에 걸친 누계는 실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생략함  
 2) 지급인원은 실제 퇴직금이 지급된 시점 기준으로 산출(지급액 산정을 위해)된 인원으로서 퇴직자 수와 수치가 다름(이하 동일)  
 3) '추가지급'은 '지급액'에서 제외되어 'Part2. 주요사업 현황'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4)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 나.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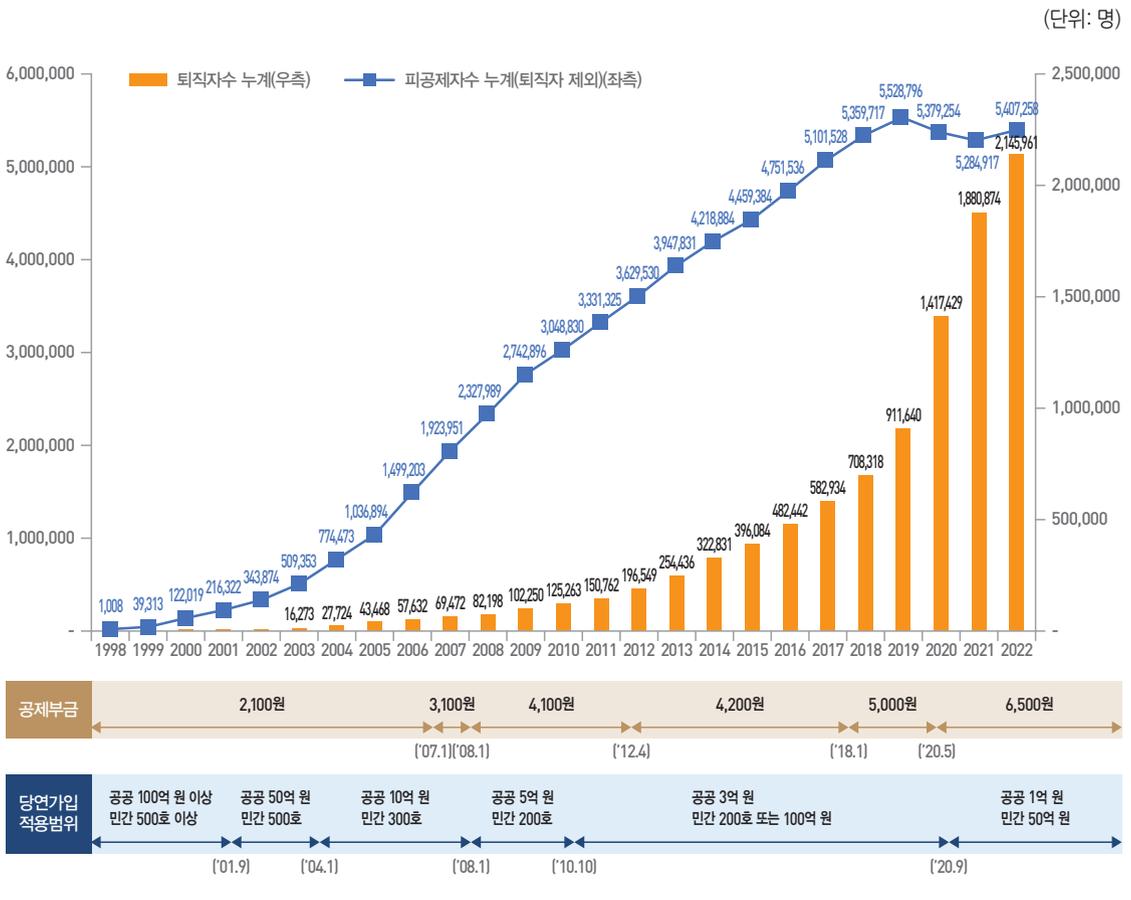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된 1998년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가 1,008명에 그쳤다. 당시 당연가입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민간공사 500호 이상이었는데 2001년 이후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5월(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대상의 경우 9월)에는 공공공사 1억 원,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과 당연가입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퇴직공제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계기가 된 것은 2002년에 시행된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 그리고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종전의 공제증지 첨부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신고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피공제자 누계(퇴직자 제외)가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선 시점은 2005년이었고, 2008년에는 약 233만 명, 2010년에는 약 305만 명, 2014년에는 약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 약 553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20년에 최초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541만 명을 기록하였다.

퇴직자수는 초기에는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해, 2009년에는 누적 퇴직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된 2020년 이후 한 해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크게 늘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03,416명, 460,561명에 달했다가 2022년 254,693명으로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2020년과 2021년에 피공제자 누계(퇴직자 제외)가 감소한 것은 건설근로자법 개정(252일 미만의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에 따라 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피공제자 누계치도 이전 추세에 근접한 5,407,25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7]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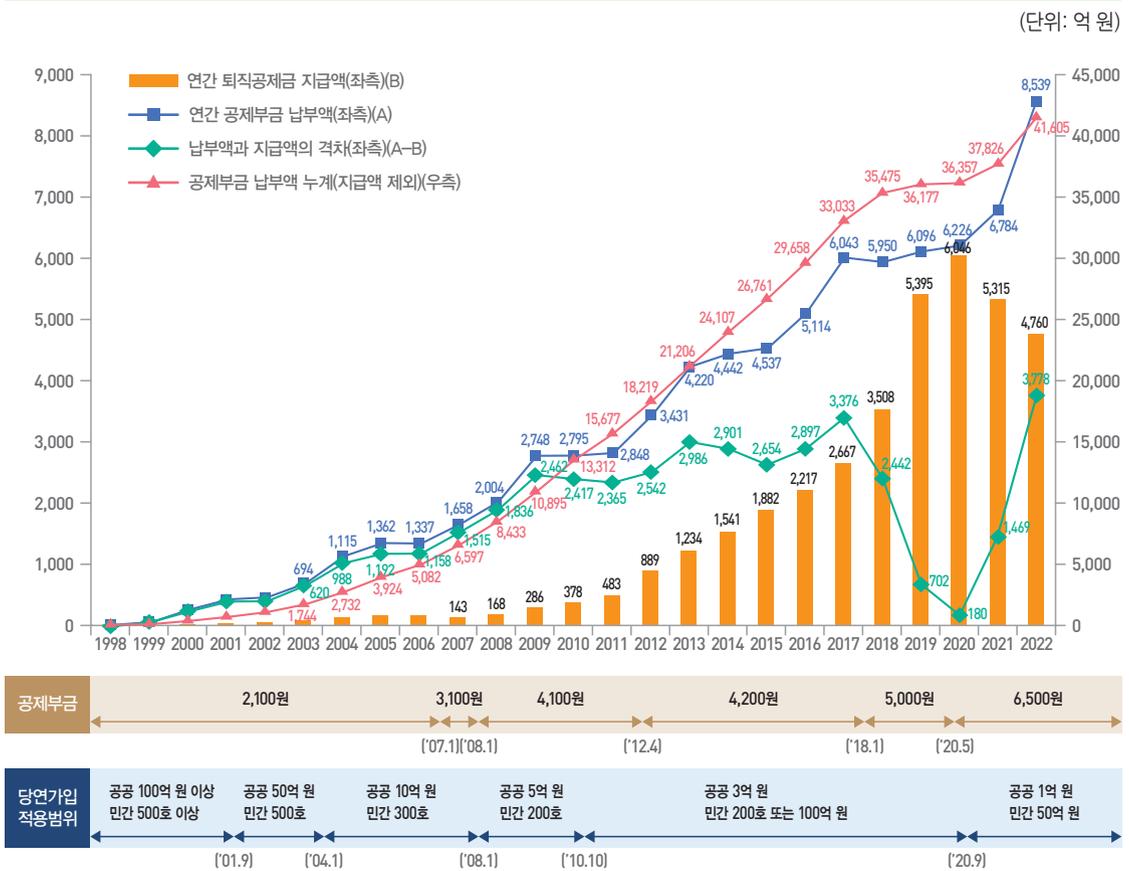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 다.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치 추이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차인 2004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1,115억 원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2,004억 원, 다시 4년 후인 2012년에는 3,431억 원, 이듬해인 2013년에는 4,220억 원, 2022년에는 8,539억 원에 이르렀다. 퇴직공제금 지급액도 2004년에는 128억 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1,234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6,046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22년에는 4,760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18]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치 추이(1998~2022)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향후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퇴직공제금 지급액 간의 격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클 경우 공제부금 누계치는 계속 증가할 텐데 격차가 클수록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격차가 준다면 증가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반대로 후자가 더

커진다면 그때부터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양자 간의 격차가 증가 추세를 지속하던 중 2017년에는 3,376억 원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442억 원으로 낮아졌는데, 2020년에는 지급액이 더욱 급증해 양자 간의 격차가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도 만 65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급권 찾아주기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수급권 확대에 의한 퇴직금 청구건수 증가율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납부액과 지급액의 격차가 2022년 3,77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현재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는 4조 1,60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도 둔화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제부금 납부액의 증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연적용 대상 공사범위의 확대 또는 공제부금 일액을 증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 공제부금 적립일수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관련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시계열 통계는 2005년까지는 연도별로 집계하지 못해 2006년 이후의 실적만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전산망으로 전환한 후로는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점을 알 수 있지만, 복지수첩에 근로일수만큼의 공제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졌던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근로자별 증지 매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할 뿐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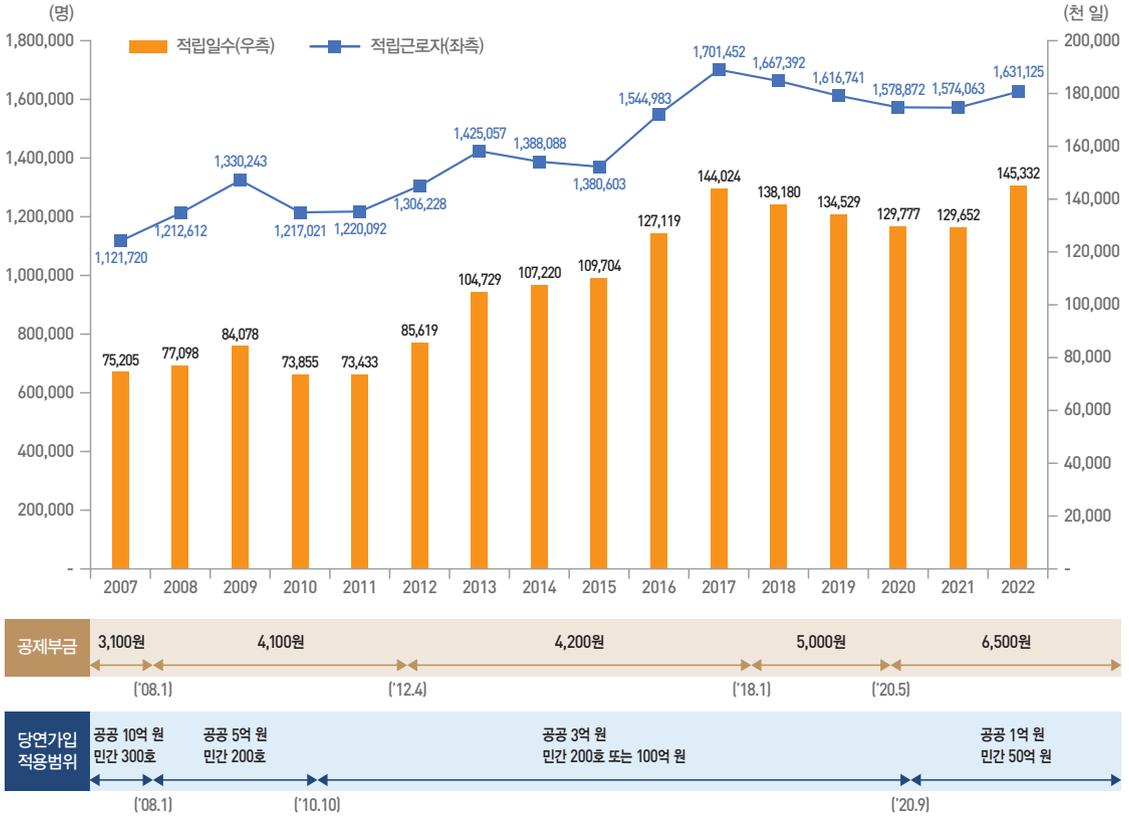
따라서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공제회로 반납해 전산망에 입력할 때 근로자별로 수첩에 첨부된 총 매수만 입력됐고, 2005년까지의 적립근로자수 또는 적립일수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전산화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적립근로자는 2007년에 1,121,720명에서 2022년에는 1,631,125명으로 45.4% 증가했으며, 동 기간 중 적립일수는 75,205천일에서 145,332천일로 93.2% 증가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증가 배율이 더 큰 이유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에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적립근로자가 약간 감소한 데 반해 적립일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동 기간 중 앞에서 본 건설기성은 2014년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하나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적립일수의 증가 추세가 건설노동시장의 실제 흐름에 보다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적립일수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동 시기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건설기성의 흐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9]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2)



주 :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67>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22)

연도	적립근로자(명)	적립일수(천 일)
평균	1,432,268	108,722
2007	1,121,720	75,205
2008	1,212,612	77,098

연도	적립근로자(명)	적립일수(천 일)
2009	1,330,243	84,078
2010	1,217,021	73,855
2011	1,220,092	73,433
2012	1,306,228	85,619
2013	1,425,057	104,729
2014	1,388,088	107,220
2015	1,380,603	109,704
2016	1,544,983	127,119
2017	1,701,452	144,024
2018	1,667,392	138,180
2019	1,616,741	134,529
2020	1,578,872	129,777
2021	1,574,063	129,652
2022	1,631,125	145,332

- 주 : 1)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2) 또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와 아래에서 기술하는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3) 건설사업주의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 가. 기본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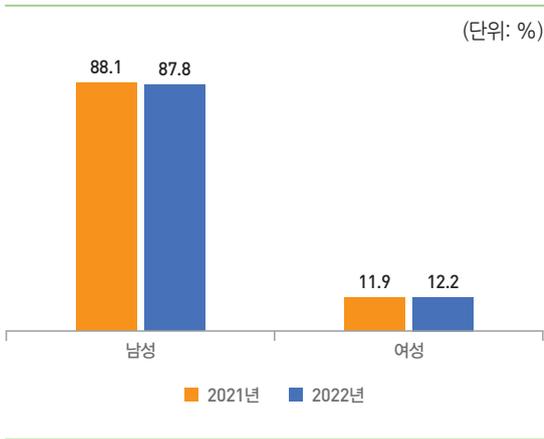
2022년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는 1,631,125명으로서 2021년의 1,574,063명에 비해 3.6%가 증가했고, 적립일수는 145,332,704일로 전년도의 129,652,569일 대비 12.1% 증가했다.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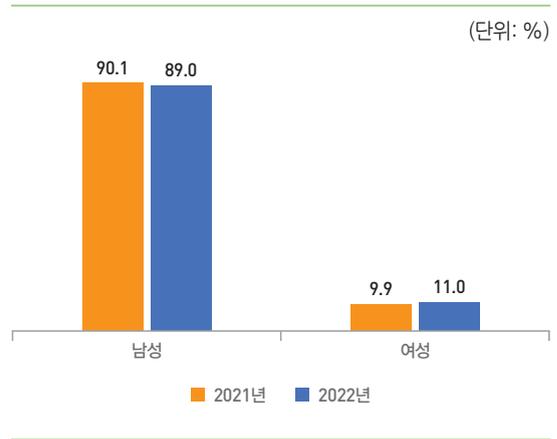
2022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는 남성 87.8%(1,431,850명), 여성 12.2%(199,275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는 남성 89.0%(129,374,823일), 여성 11.0%(15,957,881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비중이 전년 대비 미미하나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은 3.3%와 10.8% 증가했고, 여성은 6.0%, 24.0% 증가했다.

[그림 20]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1]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68>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4,063	100.0	1,631,125	100.0	3.6
	적립일수(일, %)	129,652,569	100.0	145,332,704	100.0	12.1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386,078	88.1	1,431,850	87.8	3.3
	적립일수(일, %)	116,783,734	90.1	129,374,823	89.0	10.8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187,985	11.9	199,275	12.2	6.0
	적립일수(일, %)	12,868,835	9.9	15,957,881	11.0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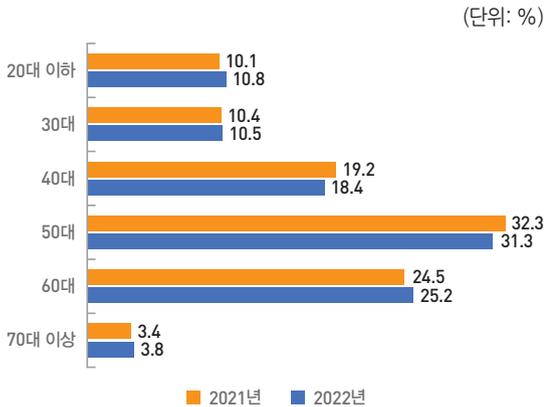
주 : 적립근로자수(적립일수)는 건설사업주의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이하동일)

##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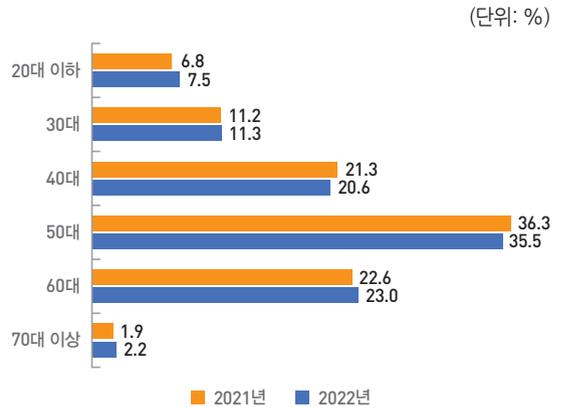
2022년도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는 50대 31.3%(510,943명), 60대 25.2%(411,244명), 40대 18.4%(299,614명) 순이고, 적립일수는 50대 35.5%(51,641,186일), 60대 23.0%(33,384,714일), 40대 20.6%(29,885,657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40대 적립근로자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가 각각 10.6%, 23.2%로 크게 증가하여 젊은 층 유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또한 14.8%, 29.4%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 또한 드러났다.

[그림 22]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3]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69>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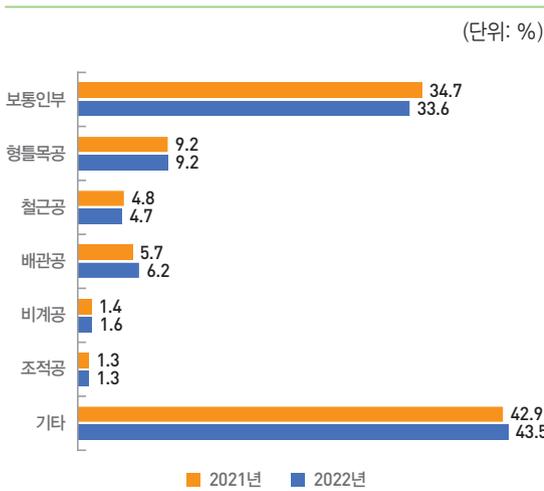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4,063	100.0	1,631,125	100.0	3.6
	적립일수(일, %)	129,652,569	100.0	145,332,704	100.0	12.1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159,693	10.1	176,677	10.8	10.6
	적립일수(일, %)	8,859,059	6.8	10,913,565	7.5	23.2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164,084	10.4	171,165	10.5	4.3
	적립일수(일, %)	14,461,250	11.2	16,360,501	11.3	13.1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302,284	19.2	299,614	18.4	-0.9
	적립일수(일, %)	27,606,804	21.3	29,885,657	20.6	8.3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08,560	32.3	510,943	31.3	0.5
	적립일수(일, %)	47,033,217	36.3	51,641,186	35.5	9.8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385,886	24.5	411,244	25.2	6.6
	적립일수(일, %)	29,260,173	22.6	33,384,714	23.0	14.1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53,556	3.4	61,482	3.8	14.8
	적립일수(일, %)	2,432,066	1.9	3,147,081	2.2	29.4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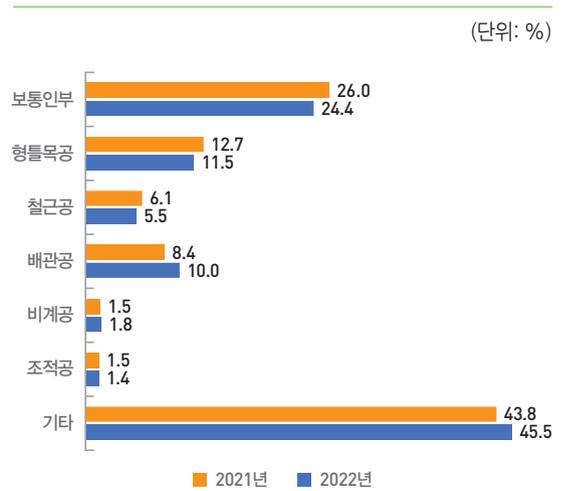
2022년도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보통인부 33.6%(547,847명), 형틀목공 9.2%(149,798명), 배관공 6.2%(100,979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 역시 보통인부 24.4%(35,438,770일), 형틀목공 11.5%(16,751,205일), 배관공 10.0%(14,503,620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조적공의 적립근로자수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순으로 비계공(17.7%, 29.7%), 배관공(13.1%, 32.9%)의 증가가 컸다.

[그림 24]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5]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70>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4,063	100.0	1,631,125	100.0	3.6
	적립일수(일, %)	129,652,569	100.0	145,332,704	100.0	12.1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546,034	34.7	547,847	33.6	0.3
	적립일수(일, %)	33,684,421	26.0	35,438,770	24.4	5.2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145,177	9.2	149,798	9.2	3.2
	적립일수(일, %)	16,496,474	12.7	16,751,205	1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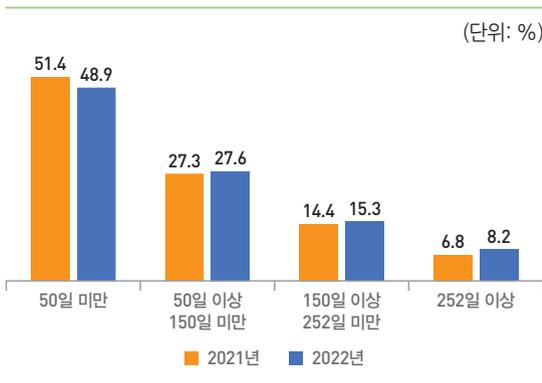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75,086	4.8	76,129	4.7	1.4
	적립일수(일, %)	7,862,982	6.1	7,948,642	5.5	1.1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89,304	5.7	100,979	6.2	13.1
	적립일수(일, %)	10,916,603	8.4	14,503,620	10.0	32.9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22,776	1.4	26,808	1.6	17.7
	적립일수(일, %)	1,965,401	1.5	2,549,522	1.8	29.7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21,014	1.3	20,524	1.3	-2.3
	적립일수(일, %)	1,907,515	1.5	1,967,194	1.4	3.1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674,672	42.9	709,040	43.5	5.1
	적립일수(일, %)	56,819,173	43.8	66,173,751	45.5	16.5

#### 4) 적립일수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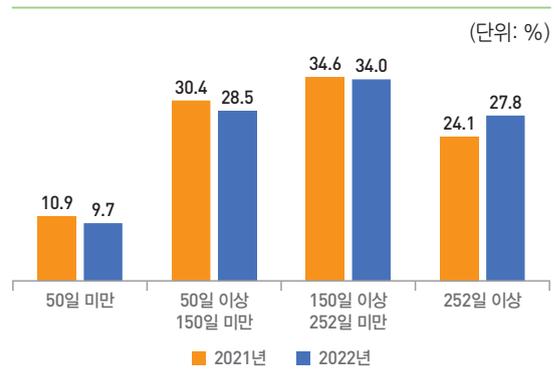
2022년도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50일 미만 48.9%(796,890명), 50일 이상 150일 미만 27.6%(449,546명), 150일 이상 252일 미만 15.3%(250,238명) 등의 순이고, 퇴직공제금 청구요건 중 하나인 252일 이상을 적립한 근로자는 8.2%(134,451명)다. 각 구간 적립일수 합계의 경우에는 150일 이상 252일 미만 34.0%(49,475,475일), 50일 이상 150일 미만 28.5%(41,357,327일), 252일 이상 27.8%(40,450,126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50일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252일 이상에서 25.3%, 29.4%로 증가가 컸다.

[그림 26]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근로자수



[그림 27] 적립일수 규모별 적립일수



<표 71> 적립일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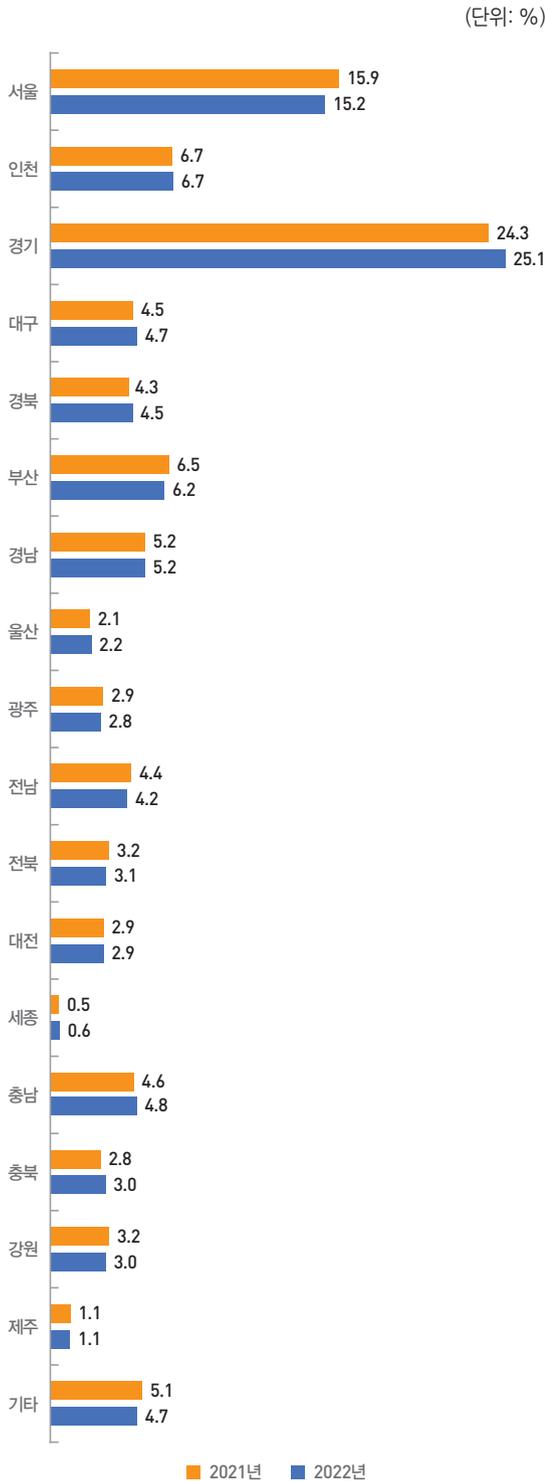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4,063	100.0	1,631,125	100.0	3.6
	적립일수(일, %)	129,652,569	100.0	145,332,704	100.0	12.1
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809,270	51.4	796,890	48.9	-1.5
	적립일수(일, %)	14,185,647	10.9	14,049,776	9.7	-1.0
50일 이상 1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430,341	27.3	449,546	27.6	4.5
	적립일수(일, %)	39,396,736	30.4	41,357,327	28.5	5.0
150일 이상 252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227,111	14.4	250,238	15.3	10.2
	적립일수(일, %)	44,816,610	34.6	49,475,475	34.0	10.4
252일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107,341	6.8	134,451	8.2	25.3
	적립일수(일, %)	31,253,576	24.1	40,450,126	27.8	29.4

##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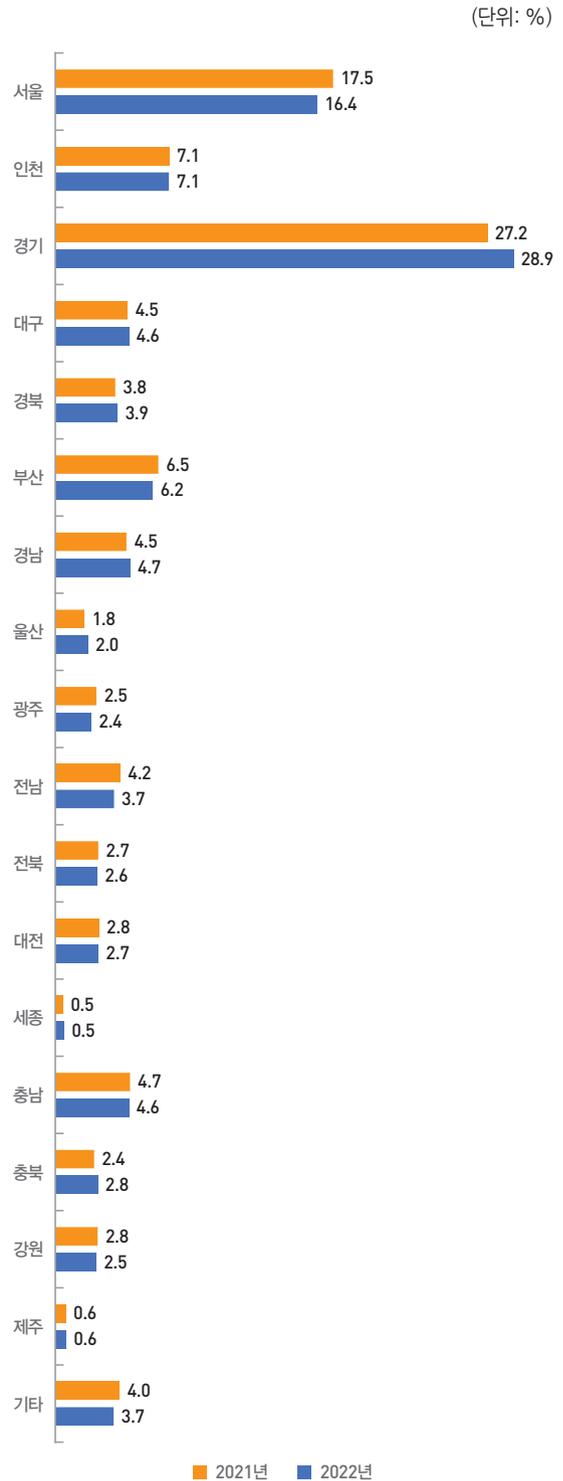
2022년도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경기 25.1%(409천 명), 서울 15.2%(247천 명), 인천 6.7%(110천 명), 부산 6.2%(102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는 경기 28.9%(4,205만 일), 서울 16.4%(2,385만 일), 인천 7.1%(1,036만 일), 부산 6.2%(900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수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증가했는데, 세종(12.6%, 15.2%), 충북(12.2%, 28.0%), 울산(11.4%, 26.4%) 등의 증가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그림 28] 지역별 적립근로자수



[그림 29] 지역별 적립일수



<표 72>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1,574,063	100.0	12,965	100.0	1,631,125	100.0	14,533	100.0	3.6	12.1
서울	249,932	15.9	2,266	17.5	247,202	15.2	2,385	16.4	-1.1	5.3
인천	104,878	6.7	922	7.1	109,992	6.7	1,036	7.1	4.9	12.4
경기	381,956	24.3	3,523	27.2	409,462	25.1	4,205	28.9	7.2	19.4
대구	70,924	4.5	586	4.5	76,105	4.7	667	4.6	7.3	13.8
경북	67,720	4.3	490	3.8	72,797	4.5	570	3.9	7.5	16.3
부산	102,277	6.5	841	6.5	101,927	6.2	900	6.2	-0.3	7.0
경남	81,260	5.2	578	4.5	85,465	5.2	677	4.7	5.2	17.1
울산	32,517	2.1	231	1.8	36,208	2.2	292	2.0	11.4	26.4
광주	45,718	2.9	329	2.5	46,110	2.8	342	2.4	0.9	4.0
전남	68,897	4.4	541	4.2	67,701	4.2	543	3.7	-1.7	0.4
전북	50,964	3.2	355	2.7	50,963	3.1	374	2.6	0.0	5.4
대전	45,575	2.9	359	2.8	47,418	2.9	398	2.7	4.0	10.9
세종	8,014	0.5	66	0.5	9,020	0.6	76	0.5	12.6	15.2
충남	71,876	4.6	607	4.7	77,956	4.8	672	4.6	8.5	10.7
충북	43,789	2.8	314	2.4	49,137	3.0	402	2.8	12.2	28.0
강원	50,818	3.2	357	2.8	49,736	3.0	367	2.5	-2.1	2.8
제주	17,148	1.1	83	0.6	17,340	1.1	89	0.6	1.1	7.2
기타	79,800	5.1	519	4.0	76,586	4.7	539	3.7	-4.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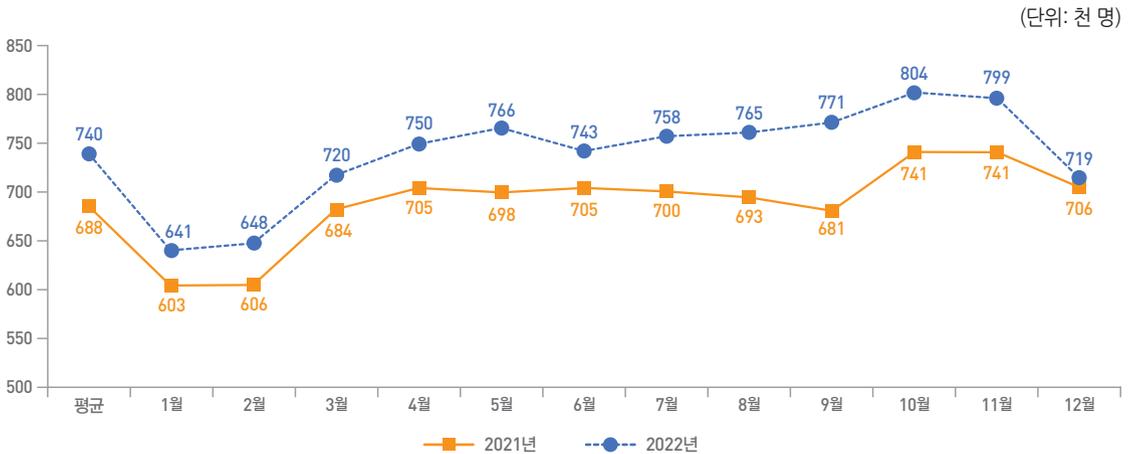
## 6) 월별(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

2022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월별 추이(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월평균 740,176명과 12,110천 일이다. 적립근로자는 10월(803,575명), 11월(799,197명), 9월(770,804명)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1월(640,884명)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적립일수는 10월(13,871천 일), 11월(13,694천 일), 5월(13,140천 일)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2월(9,532천 일)과 1월(9,911천 일)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매월 일하는 근로자는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9월(13.1%, 21.1%), 8월(10.4%, 17.9%) 순으로 증가하였고 12월 적립일수는 -1.2%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30] 월별 적립근로자수



주 :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그림 31] 월별 적립일수



주 :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표 73>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명)	적립일수(천 일)	적립근로자수(명)	적립일수(천 일)	적립근로자수(%)	적립일수(%)
평균	687,570	10,803	740,176	12,110	7.7	12.1
1월	603,011	9,325	640,884	9,911	6.3	6.3
2월	605,799	8,493	647,825	9,532	6.9	12.2
3월	683,506	11,209	719,535	12,054	5.3	7.5
4월	704,543	11,388	749,635	12,750	6.4	12.0
5월	697,527	10,716	766,140	13,140	9.8	22.6
6월	705,339	11,152	743,430	11,966	5.4	7.3
7월	699,979	11,325	757,584	12,594	8.2	11.2
8월	693,250	10,412	765,010	12,273	10.4	17.9
9월	681,302	9,790	770,804	11,851	13.1	21.1
10월	740,830	11,894	803,575	13,871	8.5	16.6
11월	740,830	12,110	799,197	13,694	7.9	13.1
12월	705,942	11,832	718,501	11,691	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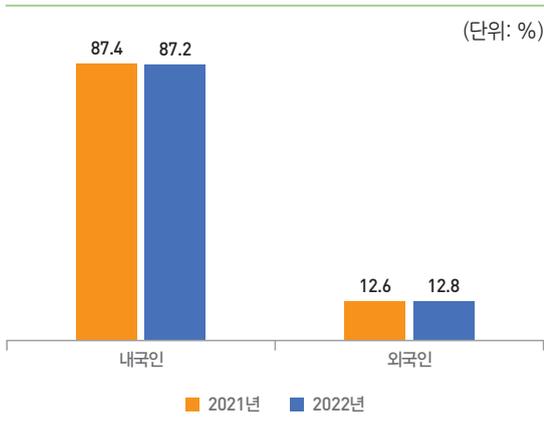
주: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와 위에서 기술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 7) 내·외국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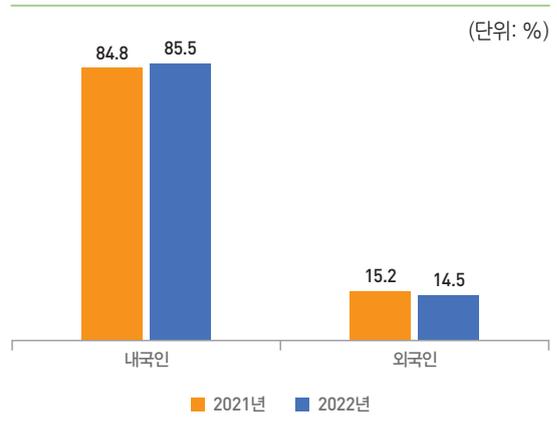
2022년도 내·외국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내국인 87.2%(1,422,016명)과 외국인 12.8%(209,109명) 그리고 적립일수는 내국인 85.5%(124,275,925일)과 외국인 14.5%(21,056,779일)로 나타나, 외국인은 근로자수에 비해 적립일수 비중이 더 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3.3% 13.0%, 외국인은 5.6%, 6.9% 증가하였다.

[그림 32] 내·외국인별 적립근로자수



[그림 33] 내·외국인별 적립일수



<표 74>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74,063	100.0	1,631,125	100.0	3.6
	적립일수(일, %)	129,652,569	100.0	145,332,704	100.0	12.1
내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1,376,114	87.4	1,422,016	87.2	3.3
	적립일수(일, %)	109,946,821	84.8	124,275,925	85.5	13.0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197,949	12.6	209,109	12.8	5.6
	적립일수(일, %)	19,705,748	15.2	21,056,779	14.5	6.9

## 나. 신규 가입 피공제자

2022년의 신규 적립 피공제자수는 373,831명으로서 2021년의 353,964명에 비해 5.6%가 증가했고, 적립일수는 22,000,850일로 전년도 17,947,950일 대비 22.6% 증가했다.

### 1) 성별

2022년도 신규 적립 피공제자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는 남성 81.3%(303,839명), 여성 18.7%(69,992명), 적립일수는 남성 81.5%(17,939,709일), 여성 18.5%(4,061,141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적립일수 증가율이 39.9%로 두드러진다.

[그림 34]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5] 성별 신규 적립일수



<표 75>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53,964	100.0	373,831	100.0	5.6
	적립일수(일, %)	17,947,950	100.0	22,000,850	100.0	22.6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289,711	81.8	303,839	81.3	4.9
	적립일수(일, %)	15,045,605	83.8	17,939,709	81.5	19.2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64,253	18.2	69,992	18.7	8.9
	적립일수(일, %)	2,902,345	16.2	4,061,141	18.5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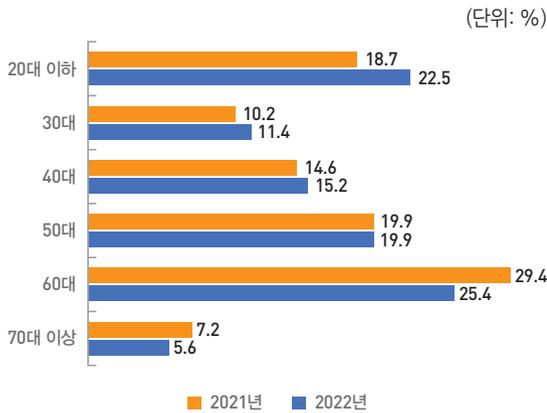
주 : 신규 적립근로자수는 적립일수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계가 추출되어 Part2, Part4의 신규 피공제자수와 차이가 있음. 건설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한 적립불가,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이하동일)

##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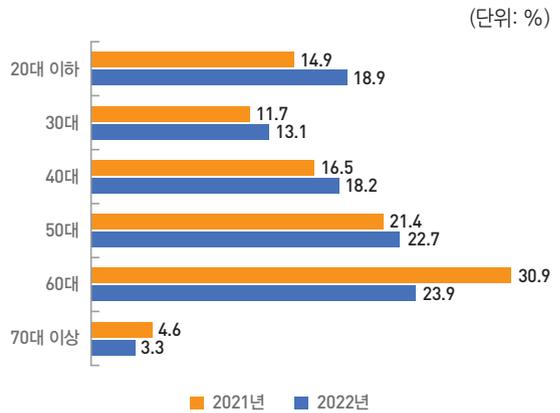
2022년도 신규 적립 피공제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는 60대 25.4%(95,053명), 20대 이하 22.5%(84,096명), 50대 19.9%(74,383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는 60대 23.9%(5,250,118일), 50대 22.7%(4,997,409일), 20대 이하 18.9%(4,154,453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 증가(27.1%, 55.1%)가 컸고, 70대 이상(-18.0%, -13.8%)에서 감소가 컸다.

[그림 36]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7] 연령별 신규 적립일수



<표 76>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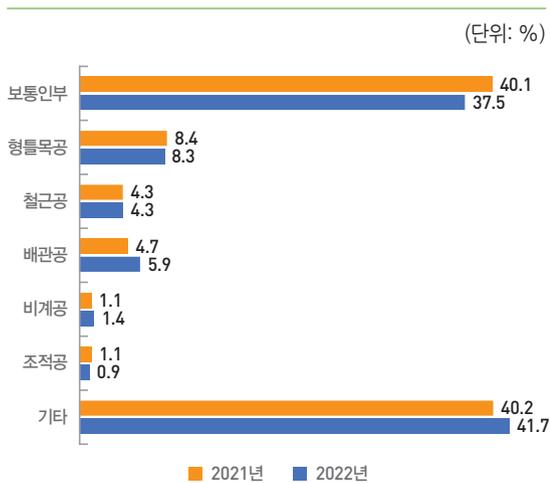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53,964	100.0	373,831	100.0	5.6
	적립일수(일, %)	17,947,950	100.0	22,000,850	100.0	22.6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66,170	18.7	84,096	22.5	27.1
	적립일수(일, %)	2,679,250	14.9	4,154,453	18.9	55.1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35,993	10.2	42,526	11.4	18.2
	적립일수(일, %)	2,098,814	11.7	2,884,177	13.1	37.4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51,805	14.6	56,925	15.2	9.9
	적립일수(일, %)	2,954,885	16.5	3,997,479	18.2	35.3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70,514	19.9	74,383	19.9	5.5
	적립일수(일, %)	3,838,721	21.4	4,997,409	22.7	30.2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104,047	29.4	95,053	25.4	-8.6
	적립일수(일, %)	5,544,446	30.9	5,250,118	23.9	-5.3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25,435	7.2	20,848	5.6	-18.0
	적립일수(일, %)	831,834	4.6	717,214	3.3	-13.8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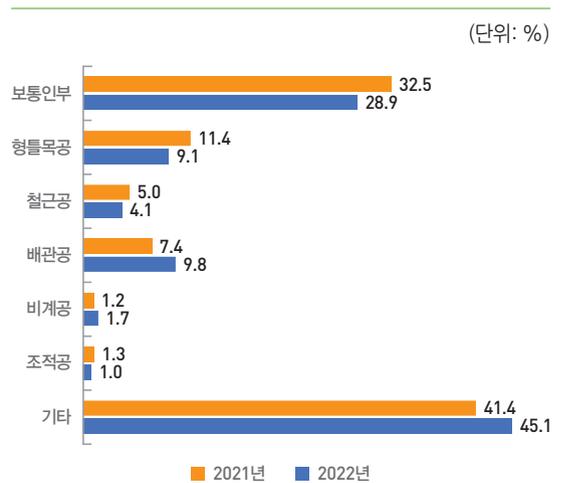
2022년도 신규 적립 피공제자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보통인부 37.5%(140,036명), 형틀목공 8.3%(31,147명), 배관공 5.9%(21,953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는 보통인부 28.9%(6,350,033일), 배관공 9.8%(2,154,017일), 형틀목공 9.1%(2,002,29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비계공(34.4%, 74.1%)과 배관공(31.3%, 63.2%)의 증가가 컸고, 조적공(-12.2%, -4.8%)에서 감소하였다.

[그림 38]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9]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표 77>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53,964	100.0	373,831	100.0	5.6
	적립일수(일, %)	17,947,950	100.0	22,000,850	100.0	22.6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141,811	40.1	140,036	37.5	-1.3
	적립일수(일, %)	5,835,390	32.5	6,350,033	28.9	8.8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29,818	8.4	31,147	8.3	4.5
	적립일수(일, %)	2,037,561	11.4	2,002,292	9.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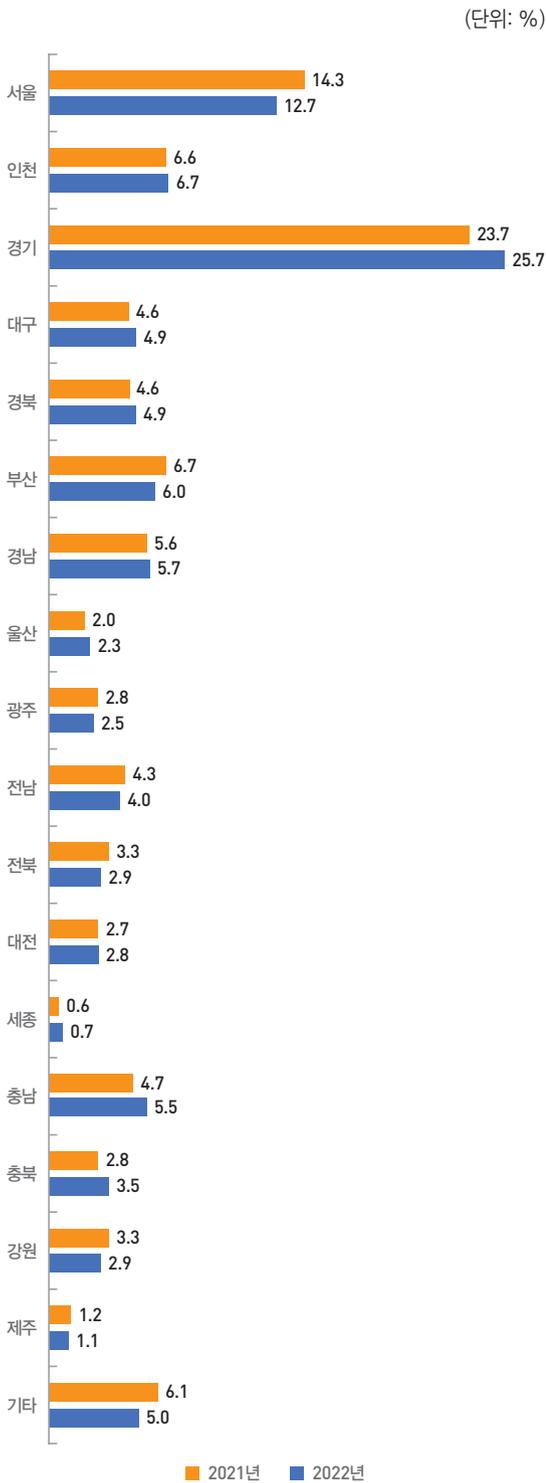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15,255	4.3	15,923	4.3	4.4
	적립일수(일, %)	889,518	5.0	893,374	4.1	0.4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16,724	4.7	21,953	5.9	31.3
	적립일수(일, %)	1,320,057	7.4	2,154,017	9.8	63.2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3,957	1.1	5,318	1.4	34.4
	적립일수(일, %)	209,180	1.2	364,133	1.7	74.1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3,978	1.1	3,493	0.9	-12.2
	적립일수(일, %)	231,817	1.3	220,730	1.0	-4.8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142,421	40.2	155,961	41.7	9.5
	적립일수(일, %)	7,424,427	41.4	10,016,271	45.5	34.9

####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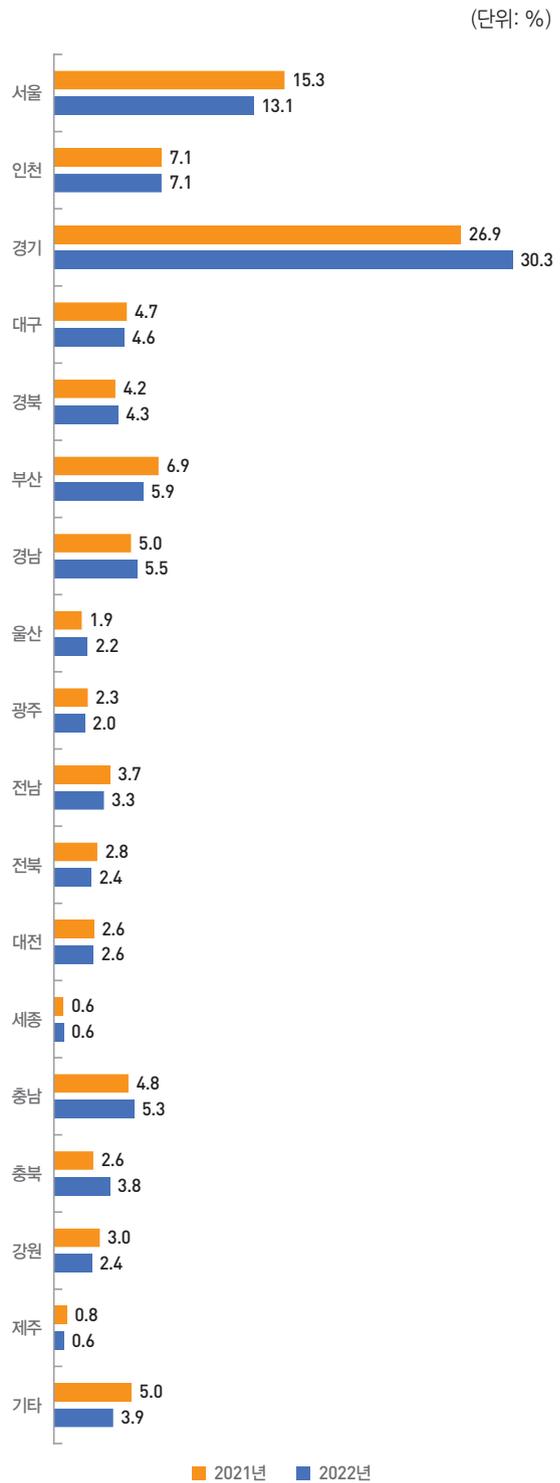
2022년도 신규 가입 피공제자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5.7%(96,231명), 서울 12.7%(47,621명), 인천 6.7%(25,146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30.3%(667만 일), 서울 13.1%(289만 일), 인천 7.1%(156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충북(30.1%), 세종(28.2%), 충남(22.4%)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고, 적립일수는 충북(80.4%), 울산(41.2%), 세종(40.0%)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0]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41]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lt;표 78&gt;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353,964	100.0	1,795	100.0	373,831	100.0	2,200	100.0	5.6	22.6
서울	50,671	14.3	274	15.3	47,621	12.7	289	13.1	-6.0	5.5
인천	23,455	6.6	127	7.1	25,146	6.7	156	7.1	7.2	22.8
경기	83,917	23.7	482	26.9	96,231	25.7	667	30.3	14.7	38.4
대구	16,112	4.6	85	4.7	18,458	4.9	102	4.6	14.6	20.0
경북	16,164	4.6	75	4.2	18,431	4.9	95	4.3	14.0	26.7
부산	23,545	6.7	123	6.9	22,409	6.0	130	5.9	-4.8	5.7
경남	19,661	5.6	90	5.0	21,294	5.7	120	5.5	8.3	33.3
울산	7,224	2.0	34	1.9	8,721	2.3	48	2.2	20.7	41.2
광주	9,843	2.8	42	2.3	9,499	2.5	44	2.0	-3.5	4.8
전남	15,341	4.3	66	3.7	14,962	4.0	72	3.3	-2.5	9.1
전북	11,693	3.3	51	2.8	11,011	2.9	53	2.4	-5.8	3.9
대전	9,675	2.7	46	2.6	10,281	2.8	57	2.6	6.3	23.9
세종	2,086	0.6	10	0.6	2,675	0.7	14	0.6	28.2	40.0
충남	16,811	4.7	87	4.8	20,570	5.5	117	5.3	22.4	34.5
충북	9,962	2.8	46	2.6	12,956	3.5	83	3.8	30.1	80.4
강원	11,850	3.3	53	3.0	10,859	2.9	53	2.4	-8.4	0.0
제주	4,289	1.2	14	0.8	3,963	1.1	13	0.6	-7.6	-7.1
기타	21,665	6.1	90	5.0	18,744	5.0	85	3.9	-13.5	-5.6

## 다. 외국인 피공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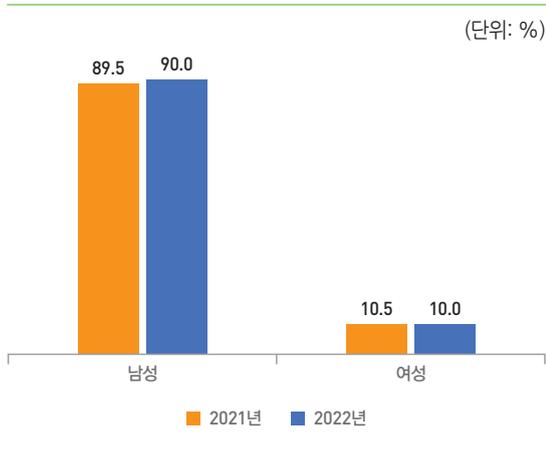
2022년의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는 209,109명으로서 2021년의 197,949명에 비해 5.6%가 증가했고, 적립일수는 21,056,779일로 전년도인 19,705,748일에 비해 6.9% 증가했다.

### 1) 성별

2022년도 외국인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는 남성 90.0%(188,192명), 여성 10.0%(20,917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는 남성 90.3%(19,018,811일), 여성 9.7%(2,037,968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성(6.2%, 6.3%)과 여성(1.0%, 12.9%)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적립일수 증가가 크다.

[그림 42]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3]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79>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97,949	100.0	209,109	100.0	5.6
	적립일수(일, %)	19,705,748	100.0	21,056,779	100.0	6.9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77,230	89.5	188,192	90.0	6.2
	적립일수(일, %)	17,900,004	90.8	19,018,811	90.3	6.3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20,719	10.5	20,917	10.0	1.0
	적립일수(일, %)	1,805,744	9.2	2,037,968	9.7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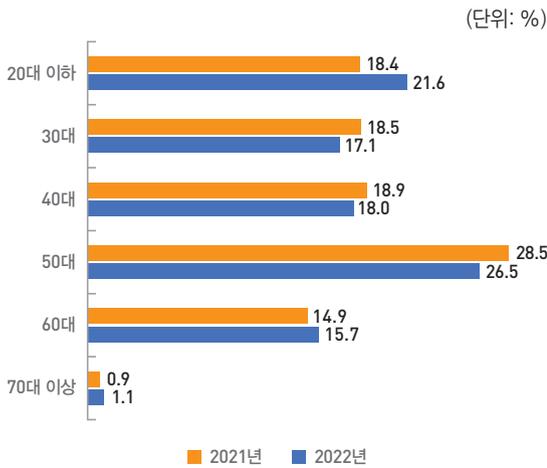
주 : 적립근로자수(적립일수)는 건설사업주의 삭감(소급)신고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이하동일)

##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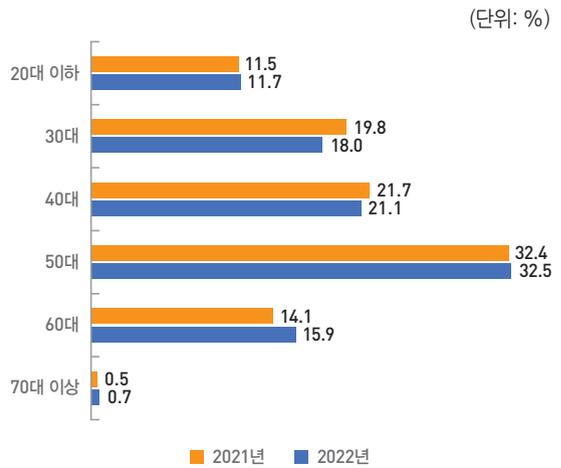
2022년도 외국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50대 26.5%(55,360명), 20대 이하 21.6%(45,193명), 40대 18.0%(37,606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는 50대 32.5%(6,849,775일), 40대 21.1%(4,435,494일), 30대 18.0%(3,799,45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는 30대에서 감소(-2.1%, -2.5%)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가했는데, 70대 이상(37.0%, 59.2%)과 20대 이하의 적립근로자수(24.0%)의 증가율이 컸다.

[그림 44]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5]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80>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97,949	100.0	209,109	100.0	5.6
	적립일수(일, %)	19,705,748	100.0	21,056,779	100.0	6.9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36,458	18.4	45,193	21.6	24.0
	적립일수(일, %)	2,265,306	11.5	2,472,417	11.7	9.1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36,538	18.5	35,757	17.1	-2.1
	적립일수(일, %)	3,897,845	19.8	3,799,454	18.0	-2.5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37,374	18.9	37,606	18.0	0.6
	적립일수(일, %)	4,268,072	21.7	4,435,494	21.1	3.9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6,382	28.5	55,360	26.5	-1.8
	적립일수(일, %)	6,390,768	32.4	6,849,775	32.5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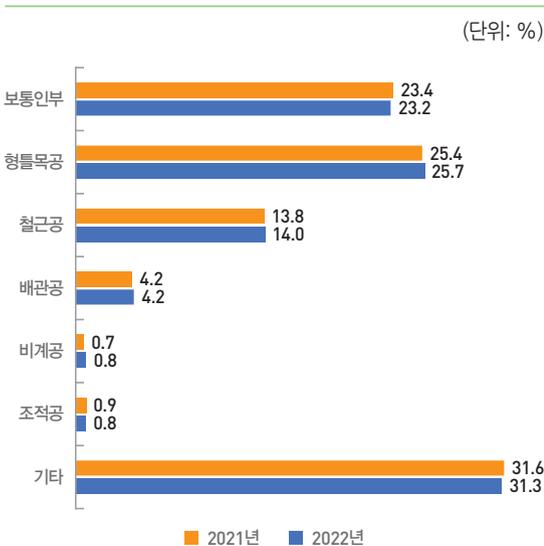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29,458	14.9	32,810	15.7	11.4
	적립일수(일, %)	2,784,674	14.1	3,341,885	15.9	20.0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1,739	0.9	2,383	1.1	37.0
	적립일수(일, %)	99,083	0.5	157,754	0.7	59.2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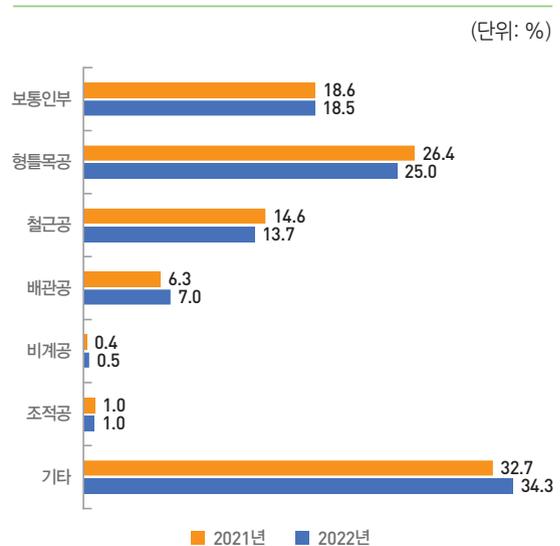
2022년도 외국인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는 형틀목공 25.7%(53,807명), 보통인부 23.2%(48,500명), 철근공 14.0%(29,186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는 형틀목공 25.0%(5,270,233일), 보통인부 18.5%(3,888,678일), 철근공 13.7%(2,893,629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조적공 적립근로자수(-1.2%)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계공(26.4%, 37.9%)의 증가가 컸다.

[그림 46]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7]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81>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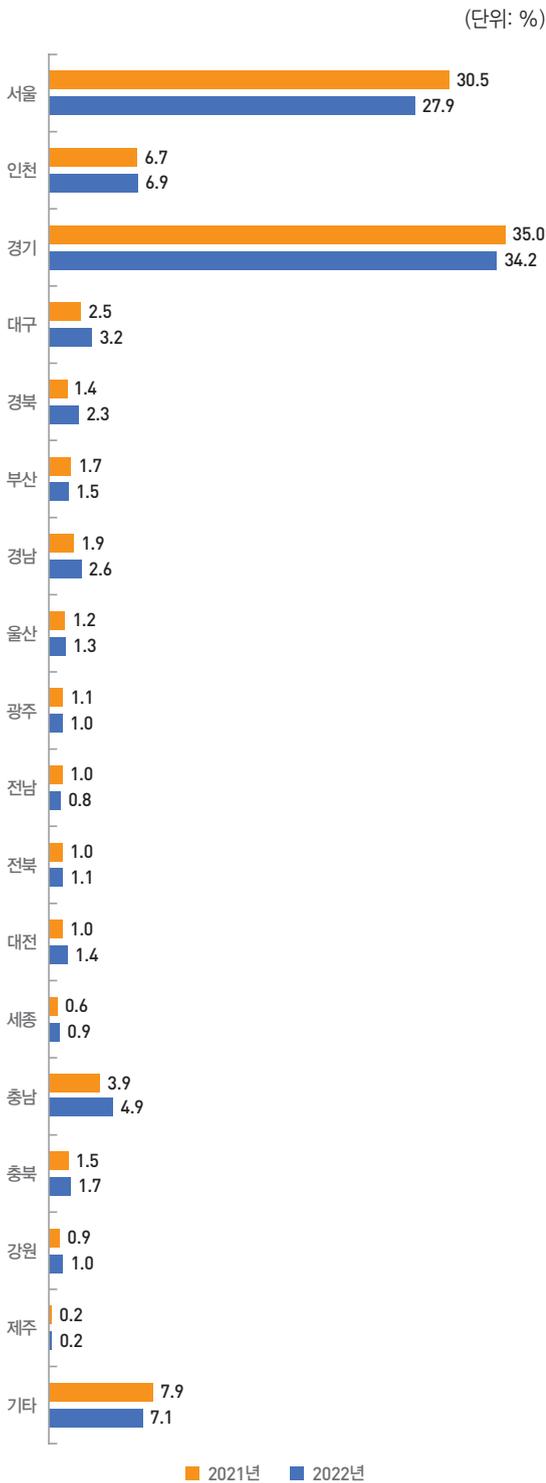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97,949	100.0	209,109	100.0	5.6
	적립일수(일, %)	19,705,748	100.0	21,056,779	100.0	6.9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46,322	23.4	48,500	23.2	4.7
	적립일수(일, %)	3,669,915	18.6	3,888,678	18.5	6.0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50,372	25.4	53,807	25.7	6.8
	적립일수(일, %)	5,203,315	26.4	5,270,233	25.0	1.3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27,398	13.8	29,186	14.0	6.5
	적립일수(일, %)	2,874,515	14.6	2,893,629	13.7	0.7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8,268	4.2	8,869	4.2	7.3
	적립일수(일, %)	1,241,176	6.3	1,471,623	7.0	18.6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1,330	0.7	1,681	0.8	26.4
	적립일수(일, %)	76,517	0.4	105,498	0.5	37.9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1,718	0.9	1,697	0.8	-1.2
	적립일수(일, %)	198,755	1.0	209,583	1.0	5.4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62,541	31.6	65,369	31.3	4.5
	적립일수(일, %)	6,441,555	32.7	7,217,535	34.3	12.0

####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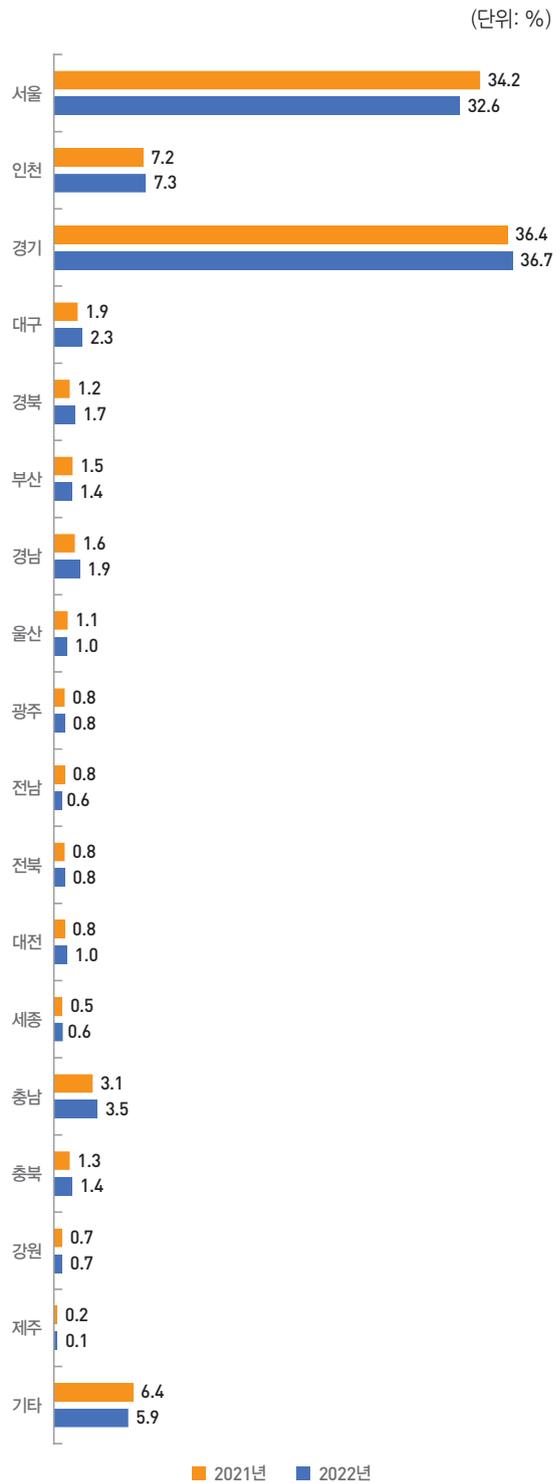
2022년도 외국인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는 경기 34.2%(71,470명), 서울 27.9%(58,240명), 인천 6.9%(14,364명), 충남 4.9%(10,226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도 역시 경기 36.7%(773만 일), 서울 32.6%(686만 일), 인천 7.3%(154만 일), 충남 3.5%(73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경북(72.0%, 52.5%), 대전(51.2%, 31.3%), 경남(48.3%, 32.3%) 등에서의 증가가 컸다.

[그림 48]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9]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82>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 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197,949	100.0	1,971	100.0	209,109	100.0	2,106	100.0	5.6	6.8
서울	60,427	30.5	674	34.2	58,240	27.9	686	32.6	-3.6	1.8
인천	13,327	6.7	142	7.2	14,364	6.9	154	7.3	7.8	8.5
경기	69,247	35.0	718	36.4	71,470	34.2	773	36.7	3.2	7.7
대구	4,918	2.5	38	1.9	6,672	3.2	48	2.3	35.7	26.3
경북	2,845	1.4	23	1.2	4,893	2.3	35	1.7	72.0	52.2
부산	3,323	1.7	30	1.5	3,209	1.5	29	1.4	-3.4	-3.3
경남	3,736	1.9	31	1.6	5,539	2.6	41	1.9	48.3	32.3
울산	2,413	1.2	21	1.1	2,616	1.3	22	1.0	8.4	4.8
광주	2,193	1.1	16	0.8	2,191	1.0	16	0.8	-0.1	0.0
전남	1,908	1.0	15	0.8	1,747	0.8	13	0.6	-8.4	-13.3
전북	2,008	1.0	15	0.8	2,337	1.1	16	0.8	16.4	6.7
대전	1,883	1.0	16	0.8	2,847	1.4	21	1.0	51.2	31.3
세종	1,281	0.6	10	0.5	1,796	0.9	13	0.6	40.2	30.0
충남	7,662	3.9	61	3.1	10,226	4.9	73	3.5	33.5	19.7
충북	3,003	1.5	25	1.3	3,556	1.7	30	1.4	18.4	20.0
강원	1,805	0.9	14	0.7	2,091	1.0	15	0.7	15.8	7.1
제주	406	0.2	3	0.2	421	0.2	3	0.1	3.7	0.0
기타	15,564	7.9	126	6.4	14,894	7.1	124	5.9	-4.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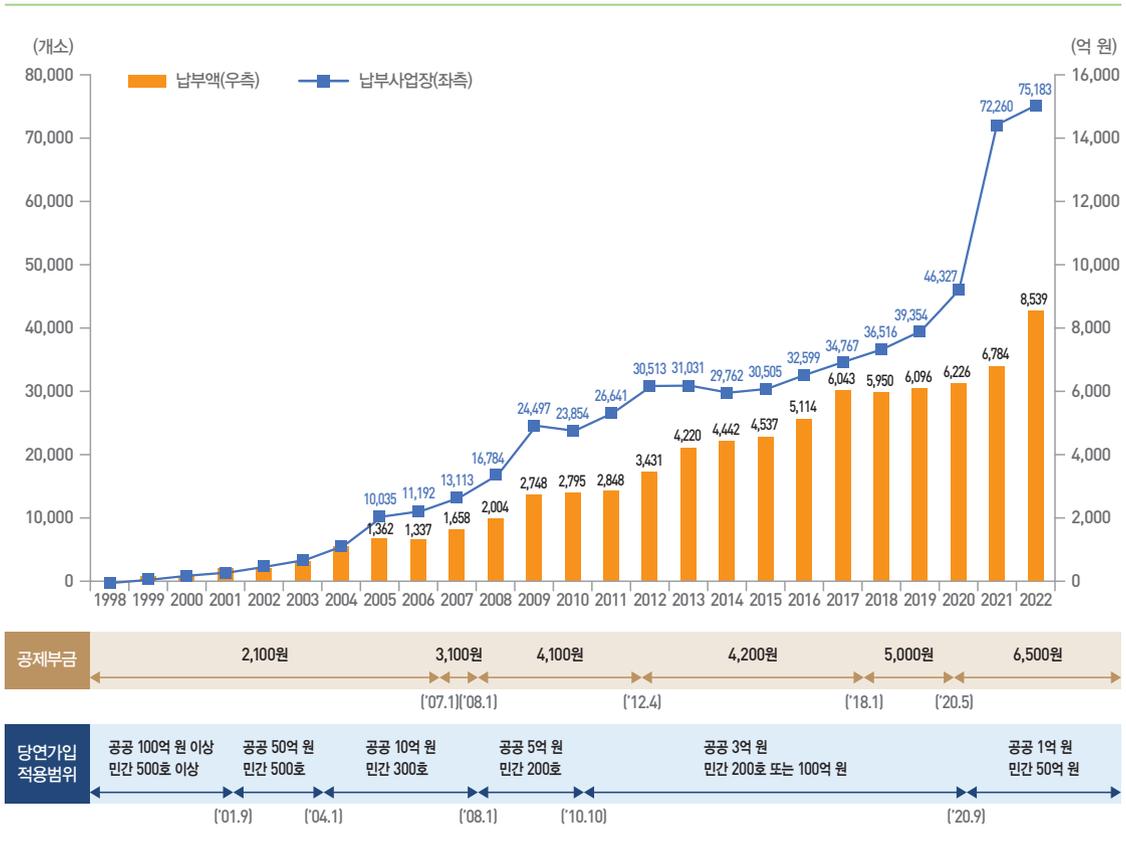
### 3 공제부금 납부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납부사업장 수와 납부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09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공제부금의 인상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16,784개소이던 사업장 수가 2009년에는 24,497개

소로 전년 대비 46.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납부액은 2,004억 원에서 2,748억 원으로 37.1%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대체로 건설기성의 증가에 따라 납부사업장과 납부액이 동반 증가했는데, 다만, 2014년의 경우 사업장 수는 줄었는데 납부액은 늘었고, 2018년에는 사업장 수는 늘었으나 납부액은 감소했다. 2022년에는 사업장 수가 75,183개소로 전년대비 4.0%납부액은 8,539억 원으로 25.9% 증가하였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누계는 각각 599,599개소와 7조 9,161억 원이고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3백만 원이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998년의 3백만 원에서 시작해 2000년에는 25백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중소기업 현장으로까지의 당연가입 적용범위 확대와 경기부진의 여파 등이 겹치면서 2011년에는 11백만 원까지 감소했고, 다시 제도의 정착과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17백만 원에 이르렀다. 2021년 이후에는 또다시 당연가입 적용범위의 확대로 소규모 현장의 가입이 늘면서 2022년 11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0]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22)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lt;표 83&gt;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9~2022)

연도	납부사업장 (개소)(A)	납부액 (억 원)(B)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 (백만 원)(B/A)
총합계	599,599	79,161	13
1998	32	1	3
1999	443	72	16
2000	1,074	266	25
2001	1,661	409	25
2002	2,352	470	20
2003	3,296	694	21
2004	5,808	1,115	19
2005	10,035	1,362	14
2006	11,192	1,337	12
2007	13,113	1,658	13
2008	16,784	2,004	12
2009	24,497	2,748	11
2010	23,854	2,795	12
2011	26,641	2,848	11
2012	30,513	3,431	11
2013	31,031	4,220	14
2014	29,762	4,442	15
2015	30,505	4,537	15
2016	32,599	5,114	16
2017	34,767	6,043	17
2018	36,516	5,950	16
2019	39,354	6,096	15
2020	46,327	6,226	13
2021	72,260	6,784	9
2022	75,183	8,539	11

## 기본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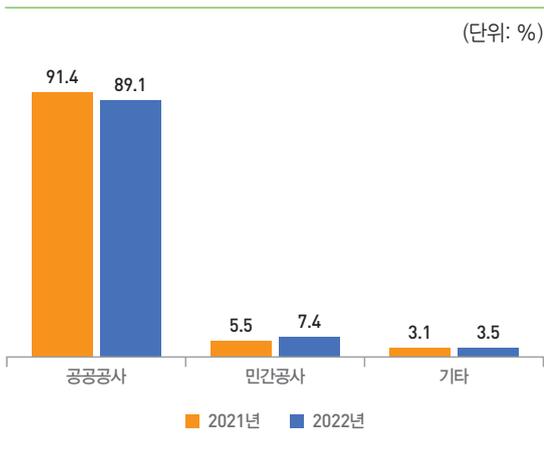
2022년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75,183개소로서 2021년의 72,260개소에 비해 4.0%, 납부액은 8,539억 원으로 전년도 6,784억 원 대비 25.9%증가했으며,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1.4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9.4백만 원 대비 21.0% 증가했다.

### 1) 공사유형별(공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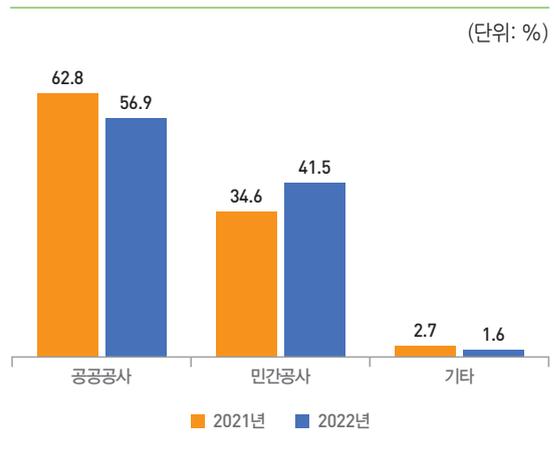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은 공공공사 89.1% (67,022개소), 민간공사 7.4%(5,529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은 공공공사 56.9%(4,859억 원), 민간공사 41.5%(3,541억 원)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의 경우 납부사업장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납부액이 적은 것은 소규모 현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순으로 살펴보면, 공공공사는 각각 1.5%, 14.1% 증가했고, 민간공사는 38.6%, 50.9% 증가하였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공공공사는 12.5%, 민간공사는 8.9% 증가했다.

[그림 51]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2]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lt;표 84&gt;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72,260	100.0	75,183	100.0	4.0
	납부액(억 원, %)	6,784	100.0	8,539	100.0	25.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9.4		11.4		21.0
공공공사	납부사업장(개소, %)	66,037	91.4	67,022	89.1	1.5
	납부액(억 원, %)	4,257	62.8	4,859	56.9	14.1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6.4		7.2		12.5
민간공사	납부사업장(개소, %)	3,990	5.5	5,529	7.4	38.6
	납부액(억 원, %)	2,347	34.6	3,541	41.5	50.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58.8		64.0		8.9
기타	납부사업장(개소, %)	2,233	3.1	2,632	3.5	17.9
	납부액(억 원, %)	180	2.7	138	1.6	-23.3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8.1		5.2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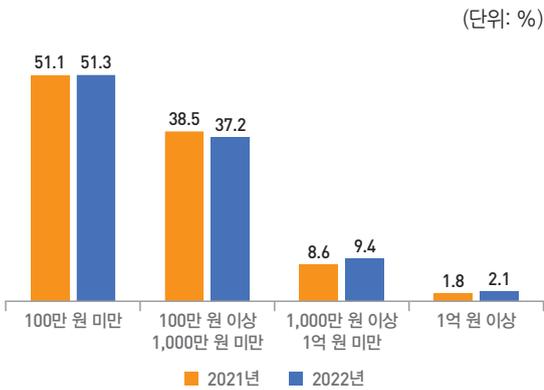
주 : 추출기준의 변경으로 2019년 전·후를 시계열로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하동일)

## 2) 납부액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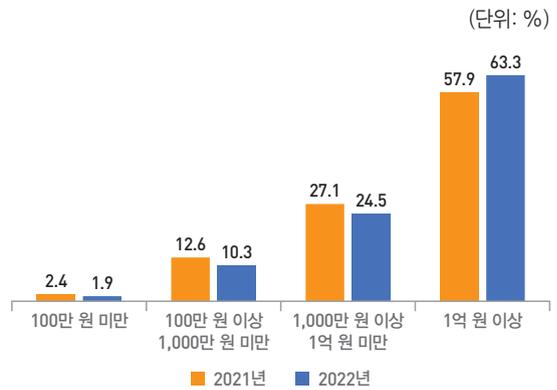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부금의 납부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은 100만 원 미만 51.3% (38,589개소),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7.2%(27,933개소),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4%(7,074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은 1억 원 이상 63.3%(5,403억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5%(2,095억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0.3%(878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억 원 이상 3억 40.5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9.6백만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모두 증가하였는데 1억 원 이상(18.8%, 37.4%)에서의 증가율이 컸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00만 원 미만에서 3.2% 감소하고 1억 원 이상에서 15.7% 증가하였다.

[그림 53]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4]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8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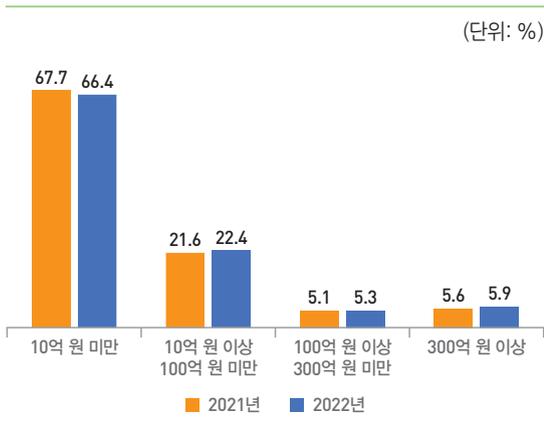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72,260	100.0	75,183	100.0	4.0
	납부액(억 원, %)	6,784	100.0	8,539	100.0	25.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9.4		11.4		21.0
1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36,903	51.1	38,589	51.3	4.6
	납부액(억 원, %)	160	2.4	162	1.9	1.3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0.4		0.4		-3.2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27,810	38.5	27,933	37.2	0.4
	납부액(억 원, %)	857	12.6	878	10.3	2.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1		3.1		2.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6,211	8.6	7,074	9.4	13.9
	납부액(억 원, %)	1,836	27.1	2,095	24.5	14.1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9.6		29.6		0.2
1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1,336	1.8	1,587	2.1	18.8
	납부액(억 원, %)	3,931	57.9	5,403	63.3	37.4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94.2		340.5		15.7

### 3) 공사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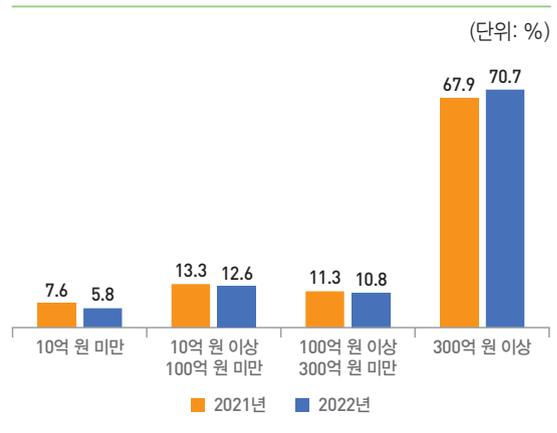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은 10억 원 미만 66.4%(49,921개소),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2.4%(16,859개소), 300억 원 이상 5.9%(4,410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은 300억 원 이상 70.7%(6,040억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2.6%(1,077억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0.8%(923억 원)로 나타났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개수는 많으나 납부액은 적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300억 원 이상 137.0백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3.1백만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6.4백만 원, 10억 원 미만은 1.0백만 원으로 격차가 컸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보다는 납부액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300억 원 이상에서 31.2%,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0.5%,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에서 19.8%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6]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86>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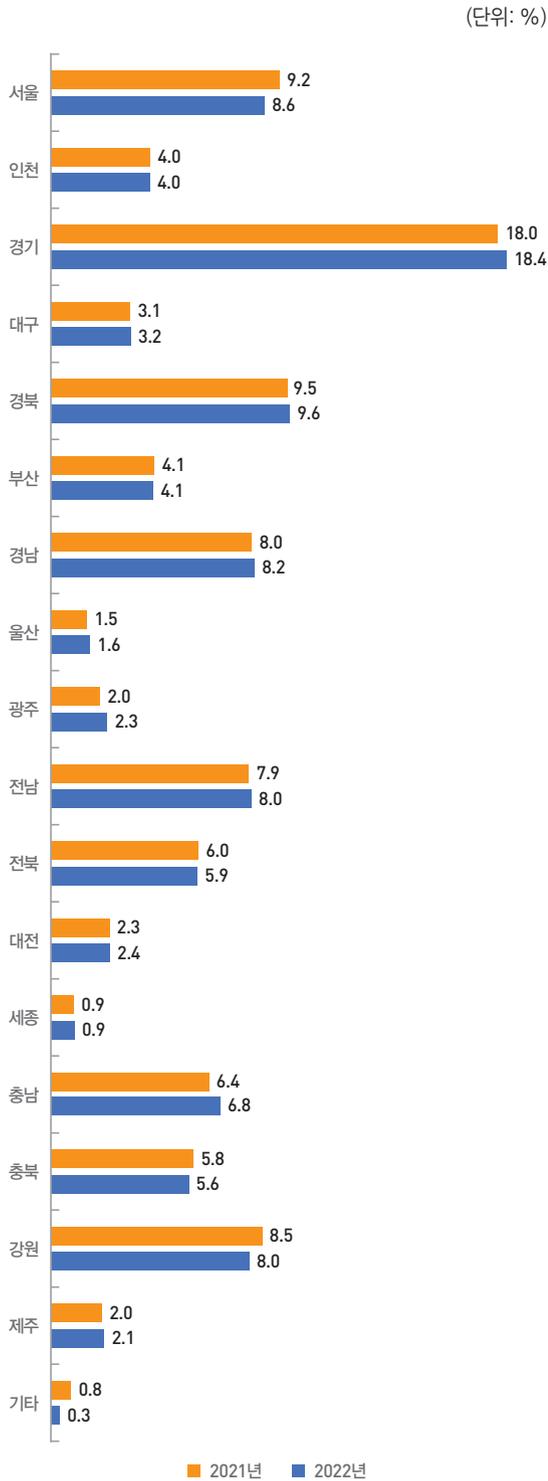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72,260	100.0	75,183	100.0	4.0
	납부액(억 원, %)	6,784	100.0	8,539	100.0	25.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9.4		11.4		21.0
1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48,932	67.7	49,921	66.4	2.0
	납부액(억 원, %)	514	7.6	499	5.8	-2.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1		1.0		-4.8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5,633	21.6	16,859	22.4	7.8
	납부액(억 원, %)	899	13.3	1,077	12.6	19.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5.8		6.4		11.1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3,662	5.1	3,993	5.3	9.0
	납부액(억 원, %)	766	11.3	923	10.8	20.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0.9		23.1		10.5
300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4,033	5.6	4,410	5.9	9.3
	납부액(억 원, %)	4,604	67.9	6,040	70.7	31.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14.2		137.0		20.0

####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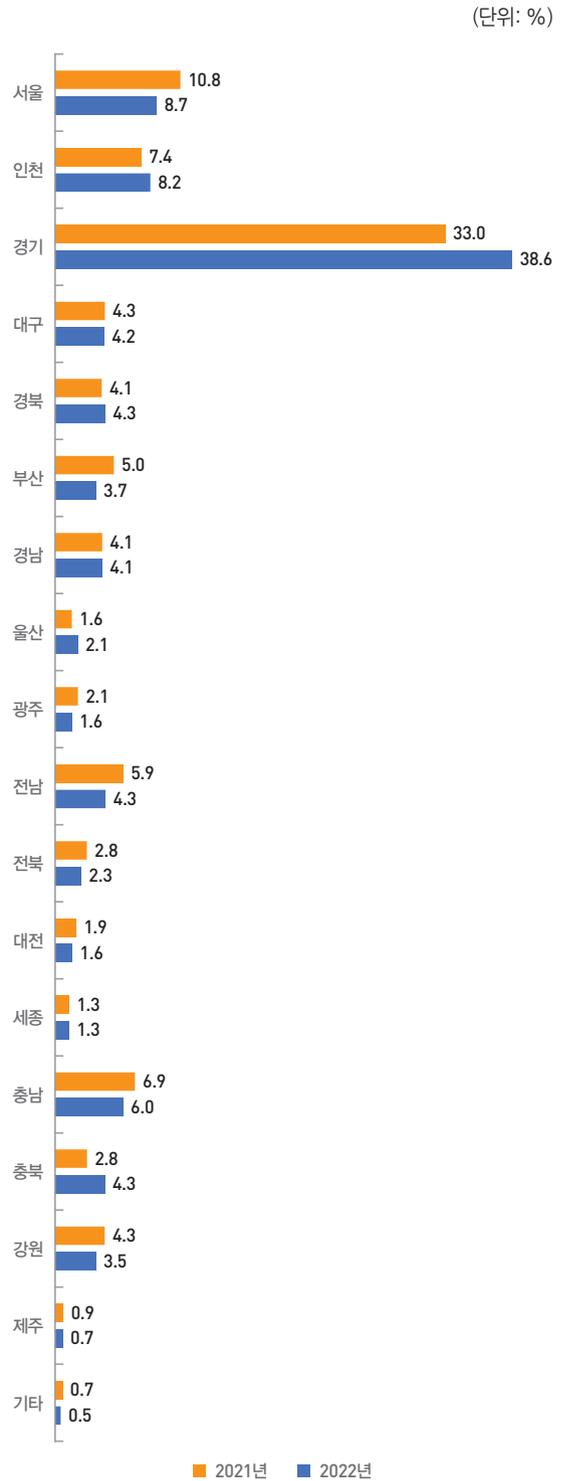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경기 18.4%(13,844개소), 경북 9.6%(7,217개소), 서울 8.6%(6,48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경기 38.6%(330십억 원), 서울 8.7%(74십억 원), 인천 8.2%(70십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순위는 달라지는데, 경기 23.8백만 원, 인천 23.4백만 원, 세종 16.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은 광주 21.5%, 울산 11.0%, 충남 10.5% 순으로 증가가 컸고, 납부액은 충북 94.7%, 울산 63.6%, 경기 47.3% 순으로 증가가 컸다.

[그림 5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8]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8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 (개소, %)		납부액 (십억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사업장 (개소, %)		납부액 (십억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 사업장 (%)	납부액 (%)	평균 납부액 (%)
계	72,260	100.0	678	100.0	9.4	75,183	100.0	854	100.0	11.4	4.0	26.0	21.1
서울	6,655	9.2	73	10.8	11.0	6,481	8.6	74	8.7	11.4	-2.6	1.4	4.1
인천	2,858	4.0	50	7.4	17.5	2,996	4.0	70	8.2	23.4	4.8	40.0	33.6
경기	12,981	18.0	224	33.0	17.3	13,844	18.4	330	38.6	23.8	6.6	47.3	38.1
대구	2,267	3.1	29	4.3	12.8	2,383	3.2	36	4.2	15.1	5.1	24.1	18.1
경북	6,871	9.5	28	4.1	4.1	7,217	9.6	37	4.3	5.1	5.0	32.1	25.8
부산	2,983	4.1	34	5.0	11.4	3,090	4.1	32	3.7	10.4	3.6	-5.9	-9.1
경남	5,816	8.0	28	4.1	4.8	6,164	8.2	35	4.1	5.7	6.0	25.0	17.9
울산	1,070	1.5	11	1.6	10.3	1,188	1.6	18	2.1	15.2	11.0	63.6	47.4
광주	1,437	2.0	14	2.1	9.7	1,746	2.3	14	1.6	8.0	21.5	0.0	-17.7
전남	5,744	7.9	40	5.9	7.0	6,036	8.0	37	4.3	6.1	5.1	-7.5	-12.0
전북	4,312	6.0	19	2.8	4.4	4,444	5.9	20	2.3	4.5	3.1	5.3	2.1
대전	1,679	2.3	13	1.9	7.7	1,787	2.4	14	1.6	7.8	6.4	7.7	1.2
세종	649	0.9	9	1.3	13.9	684	0.9	11	1.3	16.1	5.4	22.2	16.0
충남	4,629	6.4	47	6.9	10.2	5,113	6.8	51	6.0	10.0	10.5	8.5	-1.8
충북	4,158	5.8	19	2.8	4.6	4,205	5.6	37	4.3	8.8	1.1	94.7	92.6
강원	6,119	8.5	29	4.3	4.7	5,984	8.0	30	3.5	5.0	-2.2	3.4	5.8
제주	1,462	2.0	6.00	0.9	4.1	1,606	2.1	6.00	0.7	3.7	9.8	0.0	-9.0
기타	570	0.8	5	0.7	8.8	215	0.3	4	0.5	18.6	-62.3	-20.0	112.1

### 5) 공사종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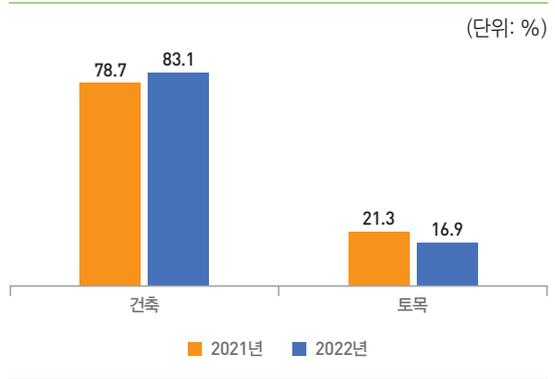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토목 55.5% (41,702개소), 건축 44.5%(33,481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건축 83.1%(7,093억 원), 토목 16.9%(1,446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 21.2백만 원, 토목 3.5백만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축은 15.1%, 32.9%로 모두 증가하였고, 토목의 납부사업장은 3.4% 감소하였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건축 15.4%, 토목 3.5% 증가했다.

[그림 5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60]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88>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72,260	100.0	75,183	100.0	4.0
	납부액(억 원, %)	6,784	100.0	8,539	100.0	25.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9.4		11.4	21.0
건축	납부사업장(개소, %)	29,087	40.3	33,481	44.5	15.1
	납부액(억 원, %)	5,338	78.7	7,093	83.1	32.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8.4		21.2	15.4
토목	납부사업장(개소, %)	43,173	59.7	41,702	55.5	-3.4
	납부액(억 원, %)	1,446	21.3	1,446	16.9	0.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3		3.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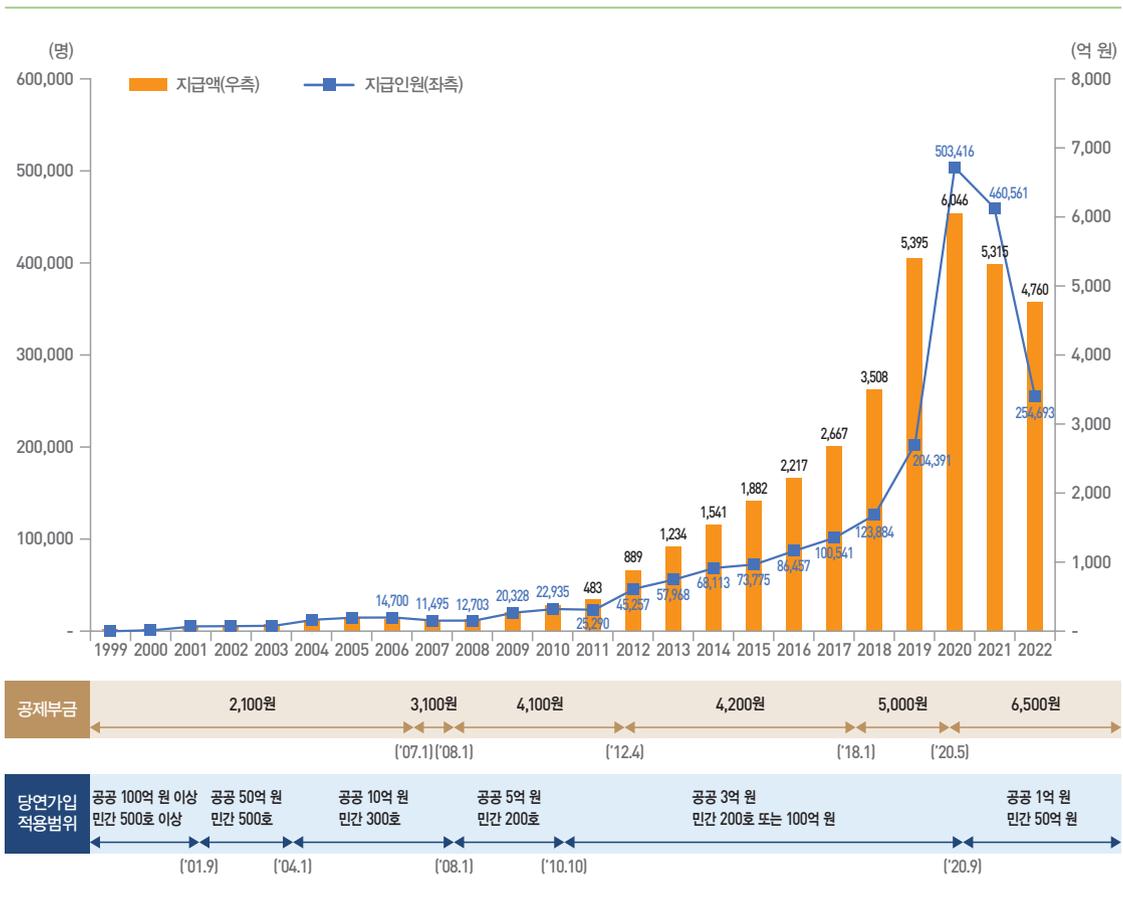
## 4 퇴직공제금 지급

199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지급인원 수와 지급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2년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근로내역 신고일수의 적  
 립이 촉진된 것과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등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 25,290명이던 지급인원 수가 2012년에는 45,257명으로 전년 대비 79.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지급액은 483억 원에서 889억 원으로 84.1%가 급증했다. 2022년의 지급인원은 254,693명,  
 지급액은 476,01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44.7%, 10.4% 감소하였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2020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점차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이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누계는 각각 2,129,114명과 3조 7,555억 원이  
 고, 퇴직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64천 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99년의 558천 원으로 시작  
 해 2002년에는 1,044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2,129천 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  
 했으며, 2018년에는 2,831천 원까지 상승했다. 2021년에는 수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액의 지급인원  
 수가 급증해 평균 지급액은 1,154천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869천 원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그림 61]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2)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lt;표 89&gt;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22)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b>총합계</b>	<b>2,129,114</b>	<b>3,755,466</b>	<b>1,764</b>
1999	3	2	558
2000	638	512	803
2001	3,836	3,599	938
2002	5,046	5,268	1,044
2003	6,621	7,323	1,106
2004	11,419	12,775	1,119
2005	15,044	17,046	1,133
2006	14,700	17,905	1,218
2007	11,495	14,259	1,240
2008	12,703	16,779	1,321
2009	20,328	28,602	1,407
2010	22,935	37,773	1,647
2011	25,290	48,268	1,909
2012	45,257	88,869	1,964
2013	57,968	123,411	2,129
2014	68,113	154,102	2,262
2015	73,775	188,241	2,552
2016	86,457	221,681	2,564
2017	100,541	266,702	2,653
2018	123,884	350,765	2,831
2019	204,391	539,487	2,639
2020	503,416	604,624	1,201
2021	460,561	531,459	1,154
2022	254,693	476,013	1,869

주 : '추가지급'은 '지급액'에서 제외되어 'Part2. 주요사업 현황'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 특성별 분포

2022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254,693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44.7%가 감소했고, 지급액은 476,01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86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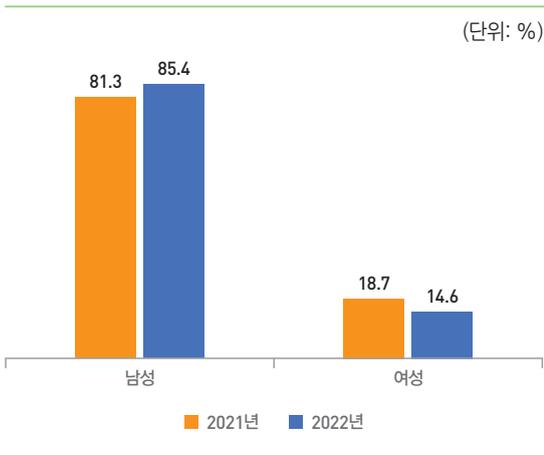
### 1) 성별

2022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남성 85.4%(217,430명), 여성 14.6%(37,263명)로 나타났고, 지급액은 남성 90.5%(431,027백만 원), 여성 9.5%(44,986백만 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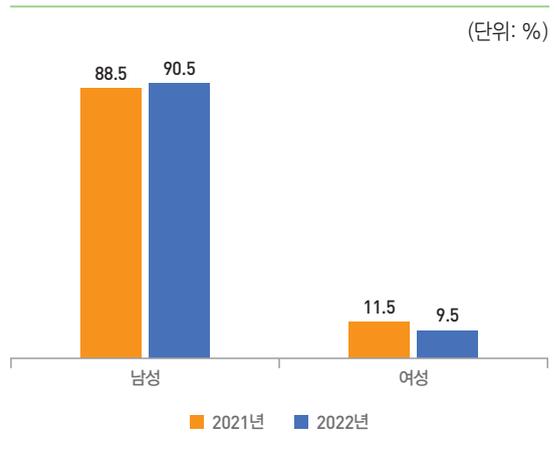
대체로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지급인원의 비중에 비해 지급액의 비중이 더 큰데, 이것은 남성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982천 원으로서 여성의 1,207천 원에 비해 775천 원 더 많은 데 기인한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남성(-41.9%, -8.4%)과 여성(-56.7%, -26.4%)에서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남녀 모두 증가하였는데 여성(70.0%)의 증가폭이 남성(57.8%)보다 컸다.

[그림 62]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3]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lt;표 90&gt;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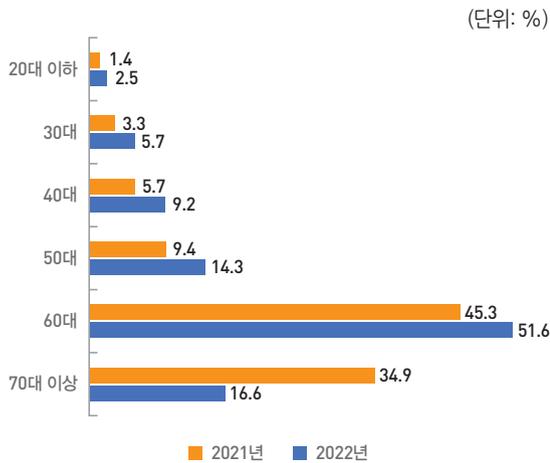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460,561	100.0	254,693	100.0	-44.7
	지급액(백만 원, %)	531,459	100.0	476,013	100.0	-10.4
	평균 지급액(천 원)	1,154		1,869		62.0
남성	지급인원(명, %)	374,498	81.3	217,430	85.4	-41.9
	지급액(백만 원, %)	470,356	88.5	431,027	90.5	-8.4
	평균 지급액(천 원)	1,256		1,982		57.8
여성	지급인원(명, %)	86,063	18.7	37,263	14.6	-56.7
	지급액(백만 원, %)	61,103	11.5	44,986	9.5	-26.4
	평균 지급액(천 원)	710		1,207		70.0

##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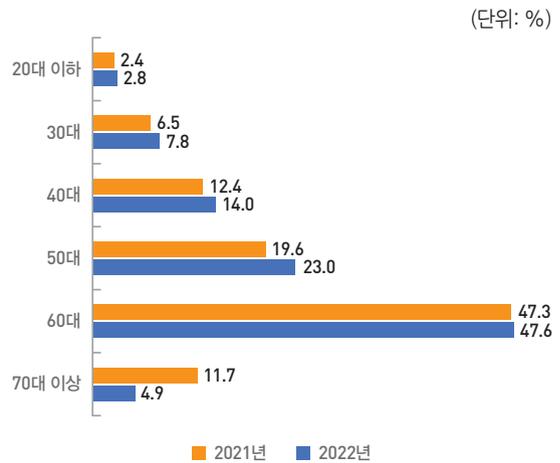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60대 51.6%(131,532명), 70대 이상 16.6%(42,367명), 50대 14.3%(36,430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은 60대 47.6%(226,661백만 원), 50대 23.0%(109,288백만 원), 40대 14.0%(66,567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연령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50대 3,000천 원, 40대 2,839천 원, 30대 2,530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모두 줄고 지급액도 대체로 감소하였는데, 70대 이상(-73.7%, -62.8%)과 60대(-37.0%, -9.9%)에서 감소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60대(42.9%)와 70대 이상(41.2%)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림 64]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5]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91>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460,561	100.0	254,693	100.0	-44.7
	지급액(백만 원, %)	531,459	100.0	476,013	100.0	-10.4
	평균 지급액(천 원)	1,154		1,869		62.0
20대 이하	지급인원(명, %)	6,595	1.4	6,317	2.5	-4.2
	지급액(백만 원, %)	12,875	2.4	13,384	2.8	4.0
	평균 지급액(천 원)	1,952		2,119		8.5
30대	지급인원(명, %)	15,147	3.3	14,600	5.7	-3.6
	지급액(백만 원, %)	34,704	6.5	36,932	7.8	6.4
	평균 지급액(천 원)	2,291		2,530		10.4
40대	지급인원(명, %)	26,151	5.7	23,447	9.2	-10.3
	지급액(백만 원, %)	65,759	12.4	66,567	14.0	1.2
	평균 지급액(천 원)	2,515		2,839		12.9
50대	지급인원(명, %)	43,092	9.4	36,430	14.3	-15.5
	지급액(백만 원, %)	104,117	19.6	109,288	23.0	5.0
	평균 지급액(천 원)	2,416		3,000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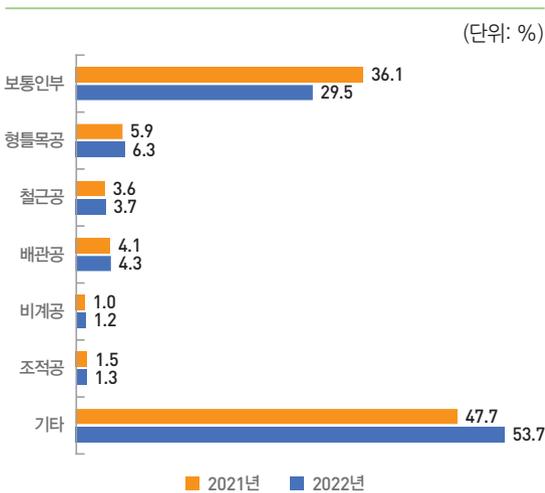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60대	지급인원(명, %)	208,686	45.3	131,532	51.6	-37.0
	지급액(백만 원, %)	251,645	47.3	226,661	47.6	-9.9
	평균 지급액(천 원)		1,206		1,723	42.9
70대 이상	지급인원(명, %)	160,890	34.9	42,367	16.6	-73.7
	지급액(백만 원, %)	62,359	11.7	23,181	4.9	-62.8
	평균 지급액(천 원)		388		547	41.2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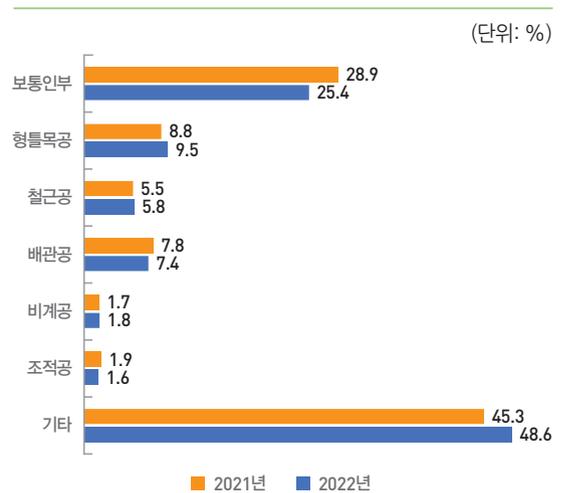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상위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보통인부 29.5% (75,075명), 형틀목공 6.3%(15,957명), 배관공 4.3%(11,011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 역시 보통인부 25.4%(121,114백만 원), 형틀목공 9.5%(45,030백만 원), 배관공 7.4%(35,056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직종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배관공 3,184천 원, 철근공 2,889천 원, 비계공 2,826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조적공(-52.6%, -23.6%)과 철근공(-42.6%, -7.1%)의 감소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보통인부(74.9%)와 형틀목공(65.0%)의 증가가 컸다.

[그림 66]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7]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92>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460,561	100.0	254,693	100.0	-44.7
	지급액(백만 원, %)	531,459	100.0	476,013	100.0	-10.4
	평균 지급액(천 원)	1,154		1,869		62.0
보통인부	지급인원(명, %)	166,395	36.1	75,075	29.5	-54.9
	지급액(백만 원, %)	153,451	28.9	121,114	25.4	-21.1
	평균 지급액(천 원)	922		1,613		74.9
형틀목공	지급인원(명, %)	27,317	5.9	15,957	6.3	-41.6
	지급액(백만 원, %)	46,728	8.8	45,030	9.5	-3.6
	평균 지급액(천 원)	1,711		2,822		65.0
철근공	지급인원(명, %)	16,519	3.6	9,480	3.7	-42.6
	지급액(백만 원, %)	29,466	5.5	27,384	5.8	-7.1
	평균 지급액(천 원)	1,784		2,889		61.9
배관공	지급인원(명, %)	18,854	4.1	11,011	4.3	-41.6
	지급액(백만 원, %)	41,573	7.8	35,056	7.4	-15.7
	평균 지급액(천 원)	2,205		3,184		44.4
비계공	지급인원(명, %)	4,708	1.0	2,993	1.2	-36.4
	지급액(백만 원, %)	8,984	1.7	8,457	1.8	-5.9
	평균 지급액(천 원)	1,908		2,826		48.1
조적공	지급인원(명, %)	6,962	1.5	3,298	1.3	-52.6
	지급액(백만 원, %)	10,253	1.9	7,832	1.6	-23.6
	평균 지급액(천 원)	1,473		2,375		61.3
기타	지급인원(명, %)	219,806	47.7	136,879	53.7	-37.7
	지급액(백만 원, %)	241,005	45.3	231,138	48.6	-4.1
	평균 지급액(천 원)	1,096		1,689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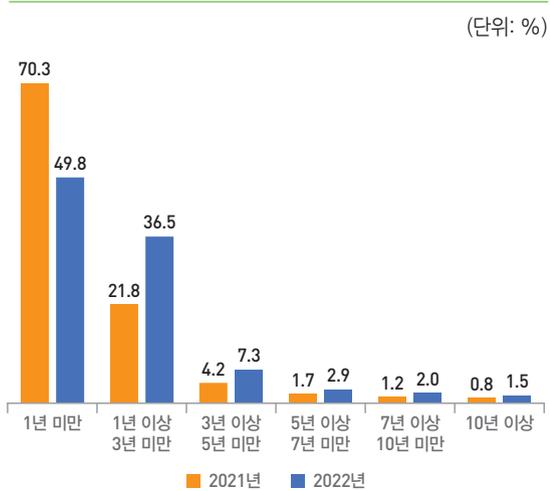
#### 4) 적립일수 규모별

2022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1년 미만 49.8% (126,758명), 1년 이상 3년 미만 36.5%(92,999명), 3년 이상 5년 미만 7.3%(18,5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지급액은 1년 이상 3년 미만 38.7%(184,350백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17.6%(83,989백만 원), 10년 이상 12.1%(57,76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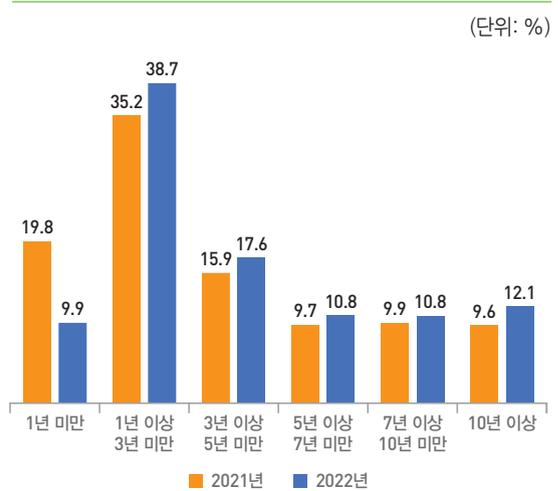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제부금 일액이 임금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 금액이므로, 적립일수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15,153천 원, 7년 이상 10년 미만 9,973천 원, 5년 이상 7년 미만 6,918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대부분 감소하였는데 1년 미만 (-60.9%, -55.3%)에서 감소율이 컸다. 수급요건 완화로 인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급증했던 상황이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68]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9]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93>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460,561	100.0	254,693	100.0	-44.7
	지급액(백만 원, %)	531,459	100.0	476,013	100.0	-10.4
	평균 지급액(천 원)	1,154		1,869		62.0
1년 미만	지급인원(명, %)	323,962	70.3	126,758	49.8	-60.9
	지급액(백만 원, %)	105,357	19.8	47,058	9.9	-55.3
	평균 지급액(천 원)	325		371		14.2
1년 이상 3년 미만	지급인원(명, %)	100,430	21.8	92,999	36.5	-7.4
	지급액(백만 원, %)	186,829	35.2	184,350	38.7	-1.3
	평균 지급액(천 원)	1,860		1,982		6.6
3년 이상 5년 미만	지급인원(명, %)	19,428	4.2	18,530	7.3	-4.6
	지급액(백만 원, %)	84,351	15.9	83,989	17.6	-0.4
	평균 지급액(천 원)	4,342		4,533		4.4
5년 이상 7년 미만	지급인원(명, %)	7,728	1.7	7,445	2.9	-3.7
	지급액(백만 원, %)	51,413	9.7	51,501	10.8	0.2
	평균 지급액(천 원)	6,653		6,918		4.0
7년 이상 10년 미만	지급인원(명, %)	5,454	1.2	5,149	2.0	-5.6
	지급액(백만 원, %)	52,564	9.9	51,349	10.8	-2.3
	평균 지급액(천 원)	9,638		9,973		3.5
10년 이상	지급인원(명, %)	3,559	0.8	3,812	1.5	7.1
	지급액(백만 원, %)	50,945	9.6	57,765	12.1	13.4
	평균 지급액(천 원)	14,314		15,153		5.9

주 : 추가 지급자 제외, 적립규모가 1년 미만인 경우 2020년부터 퇴직공제금이 지급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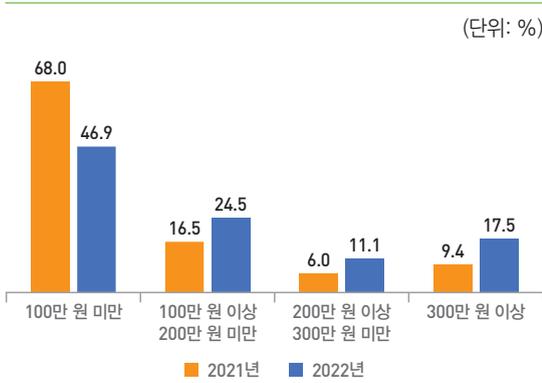
## 5) 지급액 규모별

2022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100만원 미만 46.9% (119,455명),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4.5%(62,412명), 300만 원 이상 17.5%(44,539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은 300만 원 이상 58.2%(276,857백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9.3%(92,021백만 원),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4.5%(68,966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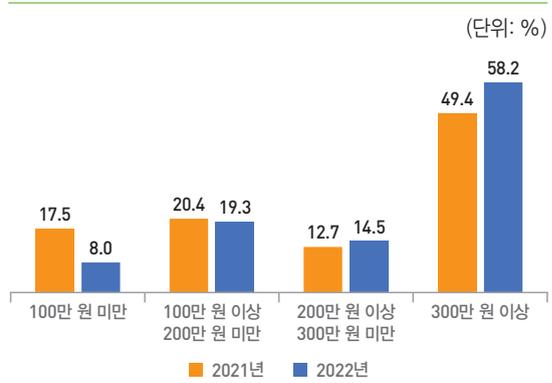
지급액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지급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300만 원 이상 6,216천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438천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474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61.9%, -59.0%)의 감소가 가장 크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8.0%, -15.0%)에서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70]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71]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94>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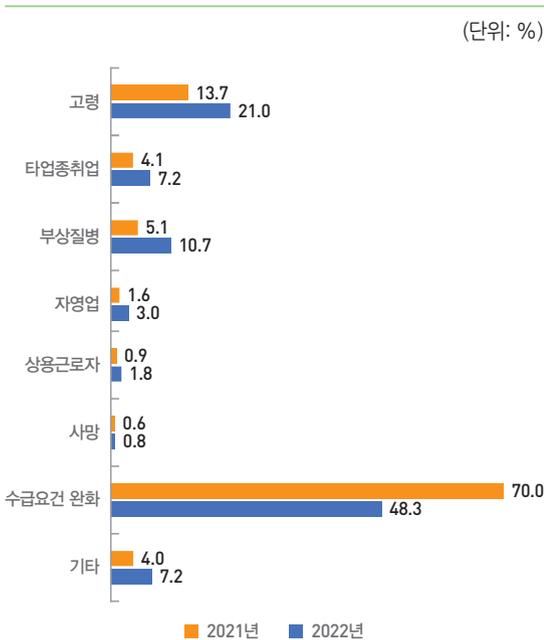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460,561	100.0	254,693	100.0	-44.7
	지급액(백만 원, %)	531,459	100.0	476,013	100.0	-10.4
	평균 지급액(천 원)	1,154		1,869		62.0
1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313,348	68.0	119,455	46.9	-61.9
	지급액(백만 원, %)	93,101	17.5	38,169	8.0	-59.0
	평균 지급액(천 원)	297		320		7.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76,155	16.5	62,412	24.5	-18.0
	지급액(백만 원, %)	108,263	20.4	92,021	19.3	-15.0
	평균 지급액(천 원)	1,422		1,474		3.7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27,807	6.0	28,287	11.1	1.7
	지급액(백만 원, %)	67,679	12.7	68,966	14.5	1.9
	평균 지급액(천 원)	2,434		2,438		0.2
300만 원 이상	지급인원(명, %)	43,251	9.4	44,539	17.5	3.0
	지급액(백만 원, %)	262,416	49.4	276,857	58.2	5.5
	평균 지급액(천 원)	6,067		6,216		2.5

## 6) 지급사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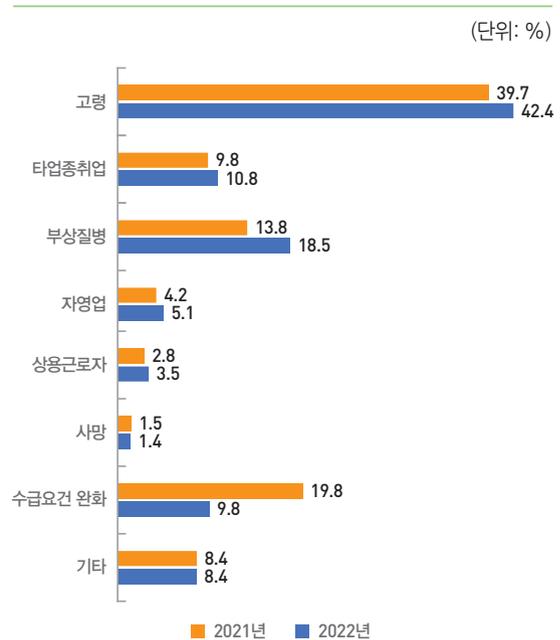
2022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사유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수급요건 완화 48.3% (123,060명), 고령 21.0%(53,581명), 부상·질병 10.7%(27,134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은 고령 42.4%(202,054백만 원), 부상·질병 18.5%(87,983백만 원), 타업종 취업 10.8%(51,334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위와 다른데, 고령 3,771천 원, 상용근로자 3,757천 원, 사망 3,338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수급요건 완화(-61.8%, -55.5%)가 크게 줄었고, 다음으로 사망(-21.0%, -12.3%)의 감소가 컸다.

[그림 72]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73]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lt;표 95&gt;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460,561	100.0	254,693	100.0	-44.7
	지급액(백만 원, %)	531,459	100.0	476,013	100.0	-10.4
	평균 지급액(천 원)	1,154		1,869		62.0
고령	지급인원(명, %)	63,313	13.7	53,581	21.0	-15.4
	지급액(백만 원, %)	211,080	39.7	202,054	42.4	-4.3
	평균 지급액(천 원)	3,334		3,771		13.1
타업종 취업	지급인원(명, %)	19,068	4.1	18,331	7.2	-3.9
	지급액(백만 원, %)	52,118	9.8	51,334	10.8	-1.5
	평균 지급액(천 원)	2,733		2,800		2.5
부상·질병	지급인원(명, %)	23,684	5.1	27,134	10.7	14.6
	지급액(백만 원, %)	73,549	13.8	87,983	18.5	19.6
	평균 지급액(천 원)	3,105		3,243		4.4
자영업	지급인원(명, %)	7,206	1.6	7,725	3.0	7.2
	지급액(백만 원, %)	22,092	4.2	24,132	5.1	9.2
	평균 지급액(천 원)	3,066		3,124		1.9
상용근로자	지급인원(명, %)	3,952	0.9	4,471	1.8	13.1
	지급액(백만 원, %)	15,004	2.8	16,797	3.5	12.0
	평균 지급액(천 원)	3,797		3,757		-1.0
사망	지급인원(명, %)	2,580	0.6	2,038	0.8	-21.0
	지급액(백만 원, %)	7,756	1.5	6,803	1.4	-12.3
	평균 지급액(천 원)	3,006		3,338		11.0
수급요건 완화	지급인원(명, %)	322,465	70.0	123,060	48.3	-61.8
	지급액(백만 원, %)	105,119	19.8	46,801	9.8	-55.5
	평균 지급액(천 원)	326		380		16.7
기타	지급인원(명, %)	18,293	4.0	18,353	7.2	0.3
	지급액(백만 원, %)	44,742	8.4	40,109	8.4	-10.4
	평균 지급액(천 원)	2,446		2,185		-10.6



# 4



## 부록

###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1. 부록의 통계자료 추출 기준은 피공제자 '가입연도'이므로 분문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Part3의 '지급자 수'와 Part4의 '퇴직자 수'는 산정기준일이 다르므로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는 건설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한 적립 불가 등의 사유로 Part3의 신규적립자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4. 연도별 피공제자수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정정 등으로 매년 통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t;부표 1&gt;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신규 피공제자	퇴직자
합계	7,553,219	2,145,961
1998년	1,008	0
1999년	38,309	4
2000년	83,443	737
2001년	98,165	3,862
2002년	132,502	4,950
2003년	172,199	6,720
2004년	276,571	11,451
2005년	278,165	15,744
2006년	476,473	14,164
2007년	436,588	11,840
2008년	416,764	12,726
2009년	434,959	20,052
2010년	328,947	23,013
2011년	307,994	25,499
2012년	343,992	45,787
2013년	376,188	57,887
2014년	339,448	68,395
2015년	313,753	73,253
2016년	378,510	86,358
2017년	450,484	100,492
2018년	383,573	125,384
2019년	372,401	203,322
2020년	356,246	505,789
2021년	369,109	463,445
2022년	387,428	265,087

<부표 2>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7,553,219	6,373,072	1,180,147
1998년	1,008	938	70
1999년	38,309	36,322	1,987
2000년	83,443	77,942	5,501
2001년	98,165	89,509	8,656
2002년	132,502	120,072	12,430
2003년	172,199	154,499	17,700
2004년	276,571	248,902	27,669
2005년	278,165	248,577	29,588
2006년	476,473	424,729	51,744
2007년	436,588	380,396	56,192
2008년	416,764	354,147	62,617
2009년	434,959	361,276	73,683
2010년	328,947	267,426	61,521
2011년	307,994	252,103	55,891
2012년	343,992	284,987	59,005
2013년	376,188	311,920	64,268
2014년	339,448	277,941	61,507
2015년	313,753	259,461	54,292
2016년	378,510	316,762	61,748
2017년	450,484	373,553	76,931
2018년	383,573	313,572	70,001
2019년	372,401	307,487	64,914
2020년	356,246	294,337	61,909
2021년	369,109	301,580	67,529
2022년	387,428	314,634	72,794

&lt;부표 3&gt;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7,553,219	272,571	671,902	584,769	591,221	732,498	864,053
1998년	1,008	13	40	90	126	169	178
1999년	38,309	434	1,717	3,651	4,736	6,318	6,865
2000년	83,443	911	3,426	6,302	9,005	12,039	14,846
2001년	98,165	979	4,511	7,156	10,265	13,009	17,078
2002년	132,502	1,537	7,290	9,183	13,103	15,772	21,030
2003년	172,199	1,772	10,332	12,656	17,754	21,269	27,200
2004년	276,571	2,740	15,986	21,465	30,258	37,372	43,699
2005년	278,165	2,543	14,405	21,153	29,390	38,103	43,453
2006년	476,473	6,438	28,988	36,796	45,920	62,994	70,581
2007년	436,588	9,261	34,297	38,200	39,488	55,116	59,802
2008년	416,764	9,889	33,119	36,118	35,172	51,001	56,183
2009년	434,959	10,268	34,802	36,984	35,399	50,845	58,817
2010년	328,947	10,742	29,435	26,252	26,456	34,513	41,083
2011년	307,994	11,116	29,286	23,428	23,902	29,113	37,139
2012년	343,992	12,991	37,345	24,741	27,379	31,136	40,870
2013년	376,188	15,134	43,239	26,891	29,671	31,971	42,629
2014년	339,448	12,534	40,137	25,321	25,775	28,003	37,464
2015년	313,753	13,170	35,690	23,100	22,109	24,759	31,345
2016년	378,510	20,302	46,318	31,110	27,887	29,991	34,756
2017년	450,484	27,629	57,067	38,863	31,869	36,945	39,426
2018년	383,573	22,029	39,087	30,298	25,509	31,234	32,562
2019년	372,401	19,100	34,243	27,236	21,252	26,518	28,682
2020년	356,246	15,209	30,821	24,870	18,829	22,755	26,379
2021년	369,109	18,739	28,163	23,557	17,797	19,930	24,453
2022년	387,428	27,091	32,158	29,348	22,170	21,623	27,533

<부표 3>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합계	957,505	904,756	735,941	698,028	98,329	272,919	168,727
1998년	145	112	80	38	2	9	6
1999년	5,113	4,170	3,314	1,542	141	234	74
2000년	12,367	10,628	8,245	4,279	412	772	211
2001년	14,598	12,429	9,799	6,140	661	1,264	276
2002년	19,475	16,434	13,185	10,898	1,129	2,686	780
2003년	26,259	20,163	16,379	12,675	1,417	3,297	1,026
2004년	43,233	31,069	24,150	17,538	2,266	5,040	1,755
2005년	45,250	33,016	24,495	16,282	2,168	5,588	2,319
2006년	77,195	58,829	40,642	27,089	4,332	10,910	5,759
2007년	67,386	52,331	36,246	23,759	4,550	10,374	5,778
2008년	62,932	53,106	35,199	24,364	3,313	10,584	5,784
2009년	65,001	57,694	37,955	26,118	3,396	10,968	6,712
2010년	44,698	43,622	30,827	22,719	2,740	9,672	6,188
2011년	40,082	42,083	30,652	22,201	3,013	9,003	6,976
2012년	42,352	45,956	34,498	26,501	3,950	8,847	7,426
2013년	45,958	48,961	38,485	31,812	4,346	9,912	7,179
2014년	41,476	43,293	35,391	30,453	3,870	9,378	6,353
2015년	36,759	38,352	34,595	34,409	3,762	9,764	5,939
2016년	42,553	43,100	39,832	39,810	4,065	11,819	6,967
2017년	49,382	49,567	46,684	46,806	5,610	12,882	7,754
2018년	42,443	43,208	41,999	48,219	5,080	13,644	8,261
2019년	38,512	42,198	41,575	58,632	6,998	16,887	10,568
2020년	33,633	38,206	37,706	55,603	9,715	26,074	16,446
2021년	29,524	36,724	36,779	56,806	10,465	39,780	26,392
2022년	31,179	39,505	37,229	53,335	10,928	33,531	21,798

&lt;부표 4&gt; 연도별 지역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7,553,219	1,181,852	465,030	1,670,659	348,046	393,292	424,163	511,996	161,429
1998년	1,008	209	57	247	46	23	15	16	2
1999년	38,309	7,570	2,710	7,992	1,971	1,464	985	1,659	552
2000년	83,443	12,426	4,709	14,715	4,442	5,078	4,027	4,916	1,476
2001년	98,165	13,313	5,533	17,164	4,862	6,381	4,860	6,615	1,490
2002년	132,502	16,245	6,242	21,862	7,088	9,874	8,879	9,605	2,399
2003년	172,199	23,490	8,780	30,967	12,417	10,866	8,862	16,447	2,895
2004년	276,571	41,775	16,886	55,091	13,851	15,981	15,843	23,701	5,209
2005년	278,165	43,283	18,667	57,241	12,972	13,935	15,532	20,388	4,108
2006년	476,473	80,466	29,018	93,538	25,821	28,423	26,650	33,473	7,975
2007년	436,588	71,659	25,732	83,729	25,741	25,103	26,172	30,648	7,746
2008년	416,764	71,715	23,294	85,774	21,905	23,451	23,282	27,123	6,445
2009년	434,959	71,439	27,745	91,383	21,038	24,321	23,472	26,571	7,566
2010년	328,947	50,806	21,778	65,162	16,102	19,675	19,254	21,708	5,759
2011년	307,994	45,768	19,462	60,484	13,807	19,240	18,104	21,496	6,858
2012년	343,992	52,423	20,942	72,407	13,964	19,872	20,794	24,812	8,944
2013년	376,188	60,155	23,099	81,459	15,521	19,527	22,797	26,415	10,427
2014년	339,448	58,221	20,769	82,258	13,227	16,104	18,065	21,198	7,279
2015년	313,753	51,781	18,910	73,345	13,438	15,479	17,187	20,825	6,372
2016년	378,510	60,931	22,950	93,506	15,004	17,723	20,436	24,530	8,978
2017년	450,484	72,209	27,261	114,245	15,910	18,619	26,401	28,979	15,383
2018년	383,573	61,892	23,513	96,990	13,794	15,190	21,915	25,650	10,703
2019년	372,401	58,624	23,363	97,868	14,224	15,308	18,743	24,505	8,487
2020년	356,246	53,462	23,203	86,259	14,828	15,716	19,304	23,160	7,889
2021년	369,109	52,655	24,370	87,571	16,793	16,854	20,547	24,464	7,511
2022년	387,428	49,335	26,037	99,402	19,280	19,085	22,037	23,092	8,976

<부표 4> 연도별 지역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218,597	36,072	345,431	241,621	232,416	365,565	300,151	283,842	94,318	278,739
1998년	104	2	20	16	23	50	86	79	2	11
1999년	2,225	133	1,512	1,588	1,468	1,945	1,656	1,473	426	980
2000년	4,483	283	4,623	4,556	2,603	5,180	4,252	3,762	507	1,405
2001년	4,251	303	5,061	4,556	3,340	5,956	6,080	5,225	1,375	1,800
2002년	4,927	410	7,630	5,718	5,056	9,096	7,487	6,382	1,326	2,276
2003년	6,196	483	8,556	6,249	6,207	10,470	8,868	6,136	1,509	2,801
2004년	9,555	720	11,228	9,656	9,072	15,435	12,957	10,902	3,228	5,481
2005년	9,242	671	11,365	10,077	8,606	15,457	13,081	13,196	4,563	5,781
2006년	14,327	1,058	18,372	16,531	15,407	24,608	21,888	21,848	5,015	12,055
2007년	11,893	1,148	17,977	14,376	15,943	23,211	19,482	19,894	4,930	11,204
2008년	11,410	1,167	17,626	13,752	15,779	22,194	18,826	17,219	5,414	10,388
2009년	13,238	1,343	19,132	14,662	14,799	23,589	20,137	17,310	6,340	10,874
2010년	10,274	1,096	14,279	11,620	11,297	18,387	15,484	13,149	4,919	8,198
2011년	9,205	1,160	14,042	10,053	10,532	18,577	14,807	12,898	4,208	7,293
2012년	8,987	1,253	17,251	10,236	11,263	20,168	15,837	13,276	4,874	6,689
2013년	10,761	1,651	17,311	11,170	12,473	19,501	16,094	13,289	5,575	8,963
2014년	9,062	2,001	15,636	9,812	10,504	15,455	12,968	12,132	4,988	9,769
2015년	8,628	2,122	14,914	9,012	8,667	12,571	10,623	11,256	4,348	14,275
2016년	9,565	3,088	18,060	10,411	9,274	13,634	10,796	12,220	4,737	22,667
2017년	10,504	3,493	22,687	12,289	10,098	14,671	11,989	14,322	4,958	26,466
2018년	9,627	2,887	16,261	11,886	9,964	13,788	10,883	11,610	4,266	22,754
2019년	9,796	2,505	16,240	10,400	9,778	14,230	10,931	10,961	4,133	22,305
2020년	9,746	2,140	16,709	9,312	10,120	15,792	11,117	11,738	4,050	21,701
2021년	10,014	2,203	17,468	10,368	10,312	15,971	12,370	12,308	4,560	22,770
2022년	10,577	2,752	21,471	13,315	9,831	15,629	11,452	11,257	4,067	19,833

&lt;부표 5&gt;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7,553,219	4,579,602	912,621	1,019,291	403,731	212,187
1998년	1,008	602	77	98	63	45
1999년	38,309	21,383	3,142	3,997	2,263	1,560
2000년	83,443	46,849	7,095	8,604	4,912	3,334
2001년	98,165	55,336	8,785	10,256	5,715	3,807
2002년	132,502	78,409	12,077	13,624	7,417	4,764
2003년	172,199	96,853	16,914	19,202	10,128	6,559
2004년	276,571	150,193	30,266	33,369	17,112	10,624
2005년	278,165	146,128	35,152	36,502	17,747	10,602
2006년	476,473	268,085	64,289	62,199	27,018	15,308
2007년	436,588	272,967	53,271	51,488	20,781	11,357
2008년	416,764	267,632	49,347	49,387	18,969	9,847
2009년	434,959	285,763	50,877	50,555	18,437	9,552
2010년	328,947	218,589	37,290	38,596	13,625	6,873
2011년	307,994	196,558	34,275	39,204	14,662	7,601
2012년	343,992	214,523	38,057	45,776	17,543	9,373
2013년	376,188	228,993	42,262	53,541	20,212	10,674
2014년	339,448	199,177	38,297	51,172	20,763	10,847
2015년	313,753	177,430	36,282	51,753	20,530	10,436
2016년	378,510	214,141	45,303	62,476	24,393	12,260
2017년	450,484	261,793	54,642	71,303	26,367	14,116
2018년	383,573	229,574	46,687	57,858	21,620	12,429
2109년	372,401	219,083	45,833	58,104	24,034	14,023
2020년	356,246	212,885	46,834	55,609	24,768	11,720
2021년	369,109	237,288	50,798	55,698	20,552	4,253
2022년	387,428	279,368	64,769	38,920	4,100	223

<부표 5>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합계	128,523	84,525	58,442	41,611	112,686
1998년	22	16	17	17	51
1999년	1,184	954	705	621	2,500
2000년	2,624	1,911	1,554	1,274	5,286
2001년	2,929	2,306	1,747	1,410	5,874
2002년	3,391	2,613	2,050	1,693	6,464
2003년	4,613	3,627	2,760	2,359	9,184
2004년	7,608	5,539	4,517	3,507	13,836
2005년	7,354	5,377	4,132	3,224	11,947
2006년	9,976	7,077	5,297	3,905	13,319
2007년	7,055	4,868	3,598	2,808	8,395
2008년	6,096	4,029	2,952	2,307	6,198
2009년	5,742	3,913	2,798	2,074	5,248
2010년	4,058	2,764	1,993	1,425	3,734
2011년	4,631	3,258	2,289	1,668	3,848
2012년	5,771	3,785	2,754	2,057	4,353
2013년	6,659	4,366	3,056	2,256	4,169
2014년	6,438	4,212	3,001	2,231	3,310
2015년	6,071	4,080	2,899	1,988	2,284
2016년	7,273	5,164	3,598	2,284	1,618
2017년	9,274	6,362	3,999	1,798	830
2018년	8,067	4,706	1,885	557	190
2019년	7,574	2,857	713	137	43
2020년	3,633	685	99	8	5
2021년	458	49	12	1	0
2022년	22	7	17	2	0

&lt;부표 6&gt;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7,553,219	5,477,294	1,053,654	401,208	209,886	125,119
1998년	1,008	644	108	62	52	31
1999년	38,309	23,086	4,286	2,535	1,770	1,312
2000년	83,443	50,552	9,203	5,487	3,755	2,941
2001년	98,165	59,992	10,974	6,487	4,515	3,334
2002년	132,502	85,024	15,007	8,321	5,677	3,935
2003년	172,199	106,102	21,065	11,657	7,796	5,412
2004년	276,571	167,095	37,551	20,092	12,517	8,820
2005년	278,165	165,231	43,161	21,103	12,805	8,524
2006년	476,473	299,575	79,610	34,015	18,775	11,820
2007년	436,588	305,810	64,134	25,181	13,045	8,016
2008년	416,764	305,602	57,298	21,331	10,886	6,415
2009년	434,959	332,546	54,395	19,215	9,851	5,759
2010년	328,947	255,465	39,853	13,646	6,855	4,024
2011년	307,994	231,625	39,736	14,585	7,493	4,637
2012년	343,992	254,205	46,065	17,297	9,351	5,557
2013년	376,188	273,387	53,737	19,895	10,516	6,594
2014년	339,448	239,833	51,352	20,498	10,712	6,284
2015년	313,753	216,503	51,913	20,155	10,291	5,989
2016년	378,510	263,540	63,010	23,851	11,995	7,062
2017년	450,484	322,648	72,052	25,794	13,662	8,630
2018년	383,573	284,069	58,499	20,636	11,423	6,288
2019년	372,401	276,924	58,665	21,915	11,111	3,286
2020년	356,246	276,822	54,487	19,852	4,656	409
2021년	369,109	311,582	49,838	7,315	341	24
2022년	387,428	369,432	17,655	283	36	16

<부표 6>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81,123	55,556	39,427	28,843	81,109
1998년	14	21	21	10	45
1999년	1,068	816	672	590	2,174
2000년	2,264	1,794	1,420	1,183	4,844
2001년	2,588	1,980	1,589	1,388	5,318
2002년	2,958	2,410	1,860	1,558	5,752
2003년	4,117	3,158	2,571	2,130	8,191
2004년	6,334	4,934	4,000	3,215	12,013
2005년	6,117	4,583	3,658	2,874	10,109
2006년	8,170	5,808	4,455	3,489	10,756
2007년	5,289	3,874	2,879	2,257	6,103
2008년	4,224	3,011	2,266	1,684	4,047
2009년	3,942	2,712	1,949	1,394	3,196
2010년	2,724	1,935	1,376	1,019	2,050
2011년	3,138	2,232	1,535	1,083	1,930
2012년	3,727	2,619	1,947	1,311	1,913
2013년	4,230	2,927	2,012	1,397	1,493
2014년	4,006	2,883	1,916	1,143	821
2015년	3,778	2,559	1,555	746	264
2016년	4,639	2,869	1,191	287	66
2017년	5,132	2,006	470	73	17
2018년	2,203	366	75	11	3
2019년	431	57	7	1	4
2020년	15	2	3	0	0
2021년	9	0	0	0	0
2022년	6	0	0	0	0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내국인	외국인
합계	7,553,219	6,765,596	787,623
1998년	1,008	1,008	0
1999년	38,309	38,309	0
2000년	83,443	83,443	0
2001년	98,165	98,165	0
2002년	132,502	132,498	4
2003년	172,199	172,198	1
2004년	276,571	272,594	3,977
2005년	278,165	275,357	2,808
2006년	476,473	453,035	23,438
2007년	436,588	404,773	31,815
2008년	416,764	368,759	48,005
2009년	434,959	394,864	40,095
2010년	328,947	306,567	22,380
2011년	307,994	281,234	26,760
2012년	343,992	312,601	31,391
2013년	376,188	335,770	40,418
2014년	339,448	291,906	47,542
2015년	313,753	268,904	44,849
2016년	378,510	314,155	64,355
2017년	450,484	367,843	82,641
2018년	383,573	314,573	69,000
2019년	372,401	313,164	59,237
2020년	356,246	310,158	46,088
2021년	369,109	321,401	47,708
2022년	387,428	332,317	55,111

<부표 8> 성별 연령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18년	5,521,251	65,633	189,284	344,555	365,674	450,861	464,461
남성	4,670,320	62,833	178,752	324,987	335,925	397,117	391,569
여성	850,931	2,800	10,532	19,568	29,749	53,744	72,892
2019년	5,765,327	74,443	170,521	360,847	373,543	455,595	470,439
남성	4,860,877	71,270	159,578	339,794	342,780	402,457	396,859
여성	904,450	3,173	10,943	21,053	30,763	53,138	73,580
2020년	5,925,305	83,312	153,679	364,957	378,706	451,641	481,717
남성	4,981,549	79,894	142,518	342,576	347,683	399,889	408,075
여성	943,756	3,418	11,161	22,381	31,023	51,752	73,642
2021년	5,791,367	97,368	140,618	353,933	391,365	444,200	499,315
남성	4,868,661	93,567	129,413	330,784	359,368	394,075	424,148
여성	922,706	3,801	11,205	23,149	31,997	50,125	75,167
2022년	5,706,837	114,933	131,742	342,909	411,408	434,779	518,338
남성	4,799,980	110,275	120,533	318,154	377,954	386,186	441,596
여성	906,857	4,658	11,209	24,755	33,454	48,593	76,742

주: <부표 8> ~ <부표 17>의 누적 피공제자수는 퇴직자를 포함. 퇴직년도에 일한 일수 및 누적금액 산정을 위해 <부표 1>과 차이가 있음

&lt;부표 8&gt; 성별 연령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2018년	643,113	711,338	785,378	652,033	88,820	305,271	454,830
남성	536,882	591,686	645,346	535,424	72,560	248,747	348,492
여성	106,231	119,652	140,032	116,609	16,260	56,524	106,338
2019년	639,182	733,551	801,907	720,822	110,418	328,771	525,288
남성	530,828	606,662	657,613	590,266	90,335	267,409	405,026
여성	108,354	126,889	144,294	130,556	20,083	61,362	120,262
2020년	616,156	737,677	795,558	765,701	131,434	373,550	591,217
남성	509,139	607,373	650,533	624,218	106,883	304,997	457,771
여성	107,017	130,304	145,025	141,483	24,551	68,553	133,446
2021년	587,471	748,571	795,874	804,368	131,959	318,687	477,638
남성	483,205	612,433	649,411	651,787	107,461	261,903	371,106
여성	104,266	136,138	146,463	152,581	24,498	56,784	106,532
2022년	568,481	756,697	786,347	830,271	147,668	293,724	369,540
남성	464,958	615,332	636,698	668,600	119,685	245,651	294,358
여성	103,523	141,365	149,649	161,671	27,983	48,073	75,182

<부표 9> 성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8년	5,521,251	861,204	334,071	1,195,706	250,250	296,560	319,204	371,376	121,494
남자	4,670,320	753,164	282,565	1,023,208	210,399	250,741	268,717	317,565	102,167
여자	850,931	108,040	51,506	172,498	39,851	45,819	50,487	53,811	19,327
2019년	5,765,327	894,646	348,801	1,262,476	258,883	305,835	332,125	385,780	127,415
남자	4,860,877	779,931	294,020	1,075,661	216,929	257,959	278,694	328,569	106,874
여자	904,450	114,715	54,781	186,815	41,954	47,876	53,431	57,211	20,541
2020년	5,925,305	913,346	359,234	1,301,736	265,585	311,699	340,884	395,310	131,613
남자	4,981,549	793,720	301,888	1,105,890	222,041	261,984	285,351	335,772	110,214
여자	943,756	119,626	57,346	195,846	43,544	49,715	55,533	59,538	21,399
2021년	5,791,367	886,711	351,485	1,290,486	258,173	299,572	332,505	379,043	129,260
남자	4,868,661	768,295	295,544	1,093,608	216,068	252,456	278,949	321,809	108,072
여자	922,706	118,416	55,941	196,878	42,105	47,116	53,556	57,234	21,188
2022년	5,706,837	870,993	348,549	1,294,421	255,059	289,408	325,277	368,766	129,098
남자	4,799,980	753,947	292,786	1,094,303	213,738	244,539	274,055	313,370	107,583
여자	906,857	117,046	55,763	200,118	41,321	44,869	51,222	55,396	21,515

&lt;부표 9&gt; 성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18년	158,051	24,855	251,128	180,760	172,295	275,219	227,635	217,334	73,527	190,582
남자	132,690	20,666	213,925	153,203	132,842	218,570	184,622	184,407	60,070	160,799
여자	25,361	4,189	37,203	27,557	39,453	56,649	43,013	32,927	13,457	29,783
2019년	164,151	26,595	261,565	187,137	178,928	285,073	233,667	224,052	76,588	211,610
남자	137,543	22,093	222,378	158,113	137,621	225,737	189,009	189,662	62,231	177,853
여자	26,608	4,502	39,187	29,024	41,307	59,336	44,658	34,390	14,357	33,757
2020년	167,722	27,582	269,252	189,616	183,305	291,614	236,859	228,405	78,449	233,094
남자	140,148	22,824	228,264	159,814	140,855	230,153	191,247	192,786	63,356	195,242
여자	27,574	4,758	40,988	29,802	42,450	61,461	45,612	35,619	15,093	37,852
2021년	163,232	27,665	265,550	183,089	178,338	280,920	225,628	218,479	76,727	244,504
남자	136,188	22,822	225,209	154,381	137,539	223,281	182,871	184,970	61,902	204,697
여자	27,044	4,843	40,341	28,708	40,799	57,639	42,757	33,509	14,825	39,807
2022년	160,841	28,360	262,931	178,502	174,165	267,335	214,621	207,879	75,050	255,582
남자	134,302	23,420	223,054	150,112	134,893	214,080	174,845	176,533	60,681	213,739
여자	26,539	4,940	39,877	28,390	39,272	53,255	39,776	31,346	14,369	41,843

<부표 10>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5,521,251	3,932,929	659,497	461,561	178,537	95,875
남성	4,670,320	3,274,226	561,918	404,596	160,449	87,828
여성	850,931	658,703	97,579	56,965	18,088	8,047
2019년	5,765,327	4,093,743	698,454	475,611	187,141	100,402
남성	4,860,877	3,397,295	593,143	415,788	167,178	91,036
여성	904,450	696,448	105,311	59,823	19,963	9,366
2020년	5,925,305	4,250,503	716,263	449,675	183,092	101,812
남성	4,981,549	3,516,031	608,143	394,198	163,019	91,751
여성	943,756	734,472	108,120	55,477	20,073	10,061
2021년	5,791,367	4,134,756	681,504	440,389	184,351	105,454
남성	4,868,661	3,420,687	574,912	386,271	164,508	94,922
여성	922,706	714,069	106,592	54,118	19,843	10,532
2022년	5,706,837	3,989,132	674,336	454,350	195,208	112,748
남성	4,799,980	3,302,618	566,452	396,571	173,176	101,256
여성	906,857	686,514	107,884	57,779	22,032	11,492

&lt;부표 10&gt;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8년	60,162	41,494	30,085	21,957	39,154
남성	55,770	38,763	28,328	20,844	37,598
여성	4,392	2,731	1,757	1,113	1,556
2019년	61,901	42,458	31,256	23,394	50,967
남성	56,942	39,423	29,206	22,073	48,793
여성	4,959	3,035	2,050	1,321	2,174
2020년	63,750	43,414	31,309	23,895	61,592
남성	58,163	40,032	29,044	22,377	58,791
여성	5,587	3,382	2,265	1,518	2,801
2021년	67,822	46,305	33,195	24,713	72,878
남성	61,746	42,563	30,686	23,022	69,344
여성	6,076	3,742	2,509	1,691	3,534
2022년	74,387	52,299	37,889	28,228	88,260
남성	67,535	47,802	34,890	26,165	83,515
여성	6,852	4,497	2,999	2,063	4,745

<부표 11>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5,521,251	4,530,581	494,538	187,643	99,437	61,598
남성	4,670,320	3,782,441	432,058	168,330	90,931	57,050
여성	850,931	748,140	62,480	19,313	8,506	4,548
2019년	5,765,327	4,747,895	501,315	193,473	102,143	62,785
남성	4,860,877	3,952,572	436,720	172,639	92,569	57,709
여성	904,450	795,323	64,595	20,834	9,574	5,076
2020년	5,925,305	4,959,317	459,612	181,940	99,756	62,291
남성	4,981,549	4,117,643	402,538	162,013	89,988	56,855
여성	943,756	841,674	57,074	19,927	9,768	5,436
2021년	5,791,367	4,847,137	436,869	176,918	98,626	63,349
남성	4,868,661	4,022,313	383,741	158,047	88,855	57,823
여성	922,706	824,824	53,128	18,871	9,771	5,526
2022년	5,706,837	4,742,492	439,729	177,156	101,001	65,567
남성	4,799,980	3,936,551	385,626	158,021	91,114	59,671
여성	906,857	805,941	54,103	19,135	9,887	5,896

&lt;부표 11&gt;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8년	42,199	30,143	22,711	17,023	35,378
남성	39,477	28,366	21,466	16,180	34,021
여성	2,722	1,777	1,245	843	1,357
2019년	42,422	31,059	23,189	17,995	43,051
남성	39,420	29,115	21,797	17,040	41,296
여성	3,002	1,944	1,392	955	1,755
2020년	41,832	30,514	23,084	17,847	49,112
남성	38,662	28,378	21,683	16,754	47,035
여성	3,170	2,136	1,401	1,093	2,077
2021년	42,461	30,676	22,773	17,953	54,605
남성	39,072	28,480	21,298	16,860	52,172
여성	3,389	2,196	1,475	1,093	2,433
2022년	45,139	32,559	23,958	18,280	60,956
남성	41,369	30,108	22,303	17,121	58,096
여성	3,770	2,451	1,655	1,159	2,860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8년	5,521,251	861,204	334,071	1,195,706	250,250	296,560	319,204	371,376	121,494
19세 이하	65,633	6,186	1,952	17,125	2,176	3,161	4,930	2,793	2,075
20~24세	189,284	22,817	11,214	44,440	7,018	8,874	10,416	13,758	5,383
25~29세	344,555	44,921	22,315	76,373	14,068	18,091	21,100	28,155	9,727
30~34세	365,674	52,656	23,540	77,563	17,049	19,483	22,128	27,992	9,489
35~39세	450,861	67,656	26,978	95,869	20,810	23,307	27,479	35,020	10,986
40~44세	464,461	70,385	27,009	102,850	21,006	24,214	27,320	30,925	10,447
45~49세	643,113	103,665	38,527	148,735	29,051	32,125	36,741	38,860	13,950
50~54세	711,338	118,538	44,463	165,137	32,715	35,777	38,466	41,316	14,636
55~59세	785,378	133,343	49,767	176,037	36,648	40,687	42,522	48,905	15,899
60~64세	652,033	112,081	39,904	139,504	30,177	36,060	36,925	44,878	13,425
65세	88,820	15,769	5,197	18,006	4,353	5,440	5,045	6,454	1,935
66~69세	305,271	51,517	17,257	57,052	14,916	18,469	18,426	22,519	6,114
70세 이상	454,830	61,670	25,948	77,015	20,263	30,872	27,706	29,801	7,428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18년	158,051	24,855	251,128	180,760	172,295	275,219	227,635	217,334	73,527	190,582
19세 이하	1,193	1,950	3,863	2,287	836	1,353	1,198	2,671	538	9,346
20~24세	5,053	1,128	10,211	5,763	6,073	8,638	5,969	7,636	3,665	11,228
25~29세	9,666	1,806	16,321	9,918	11,011	16,949	12,782	12,543	5,497	13,312
30~34세	10,723	1,707	15,959	11,286	12,650	17,920	14,496	13,020	4,721	13,292
35~39세	13,770	1,975	19,428	13,700	16,393	21,890	18,373	15,495	6,199	15,533
40~44세	14,335	2,150	20,841	14,380	17,064	22,569	19,873	16,109	6,680	16,304
45~49세	19,142	2,726	28,741	20,098	21,354	29,368	25,119	22,943	9,379	22,589
50~54세	20,481	2,794	31,631	22,498	21,760	32,410	27,158	26,255	9,703	25,600
55~59세	22,544	2,971	34,426	25,381	22,517	36,431	30,621	31,262	9,641	25,776
60~64세	18,744	2,636	28,289	22,502	17,643	30,596	27,157	27,848	7,624	16,040
65세	2,459	337	3,714	3,010	2,310	4,169	3,728	3,655	935	2,304
66~69세	8,302	1,175	13,775	10,247	9,090	17,789	15,029	12,400	3,390	7,804
70세 이상	11,639	1,500	23,929	19,690	13,594	35,137	26,132	25,497	5,555	11,454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9년	5,765,327	894,646	348,801	1,262,476	258,883	305,835	332,125	385,780	127,415
19세 이하	74,443	6,862	2,379	19,519	2,668	3,499	5,430	3,212	2,336
20~24세	170,521	19,899	9,830	41,435	6,271	7,696	9,115	12,219	4,621
25~29세	360,847	47,156	22,898	83,183	14,031	18,209	21,276	28,628	10,201
30~34세	373,543	53,404	24,566	81,230	17,218	19,644	22,345	28,582	9,748
35~39세	455,595	67,528	27,412	97,809	20,887	23,457	27,740	35,467	11,320
40~44세	470,439	71,611	27,425	104,814	21,059	23,834	27,908	32,310	10,776
45~49세	639,182	101,259	38,026	148,172	28,586	31,822	36,539	38,895	14,072
50~54세	733,551	120,008	45,329	171,306	33,382	36,468	40,566	42,756	15,501
55~59세	801,907	136,342	51,095	183,315	36,523	40,433	43,177	48,685	15,996
60~64세	720,822	122,584	44,531	155,789	33,376	39,635	40,177	48,409	15,014
65세	110,418	19,054	6,455	22,702	5,258	6,115	6,357	7,878	2,222
66~69세	328,771	55,602	18,870	63,289	16,003	19,897	19,471	24,069	6,823
70세 이상	525,288	73,337	29,985	89,913	23,621	35,126	32,024	34,670	8,785

## &lt;부표 12&gt;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19년	164,151	26,595	261,565	187,137	178,928	285,073	233,667	224,052	76,588	211,610
19세 이하	1,722	2,159	4,500	2,461	884	1,478	1,273	2,918	544	10,599
20~24세	4,561	1,058	8,822	5,104	5,767	8,007	5,196	6,629	3,181	11,110
25~29세	10,083	1,971	17,493	10,338	11,311	17,046	12,786	12,926	5,998	15,313
30~34세	10,724	1,826	16,323	11,252	12,424	17,862	14,294	13,121	4,761	14,219
35~39세	13,766	2,037	19,588	13,731	16,544	22,006	18,094	15,534	6,172	16,503
40~44세	14,450	2,203	20,795	14,431	16,929	22,672	19,396	15,853	6,717	17,256
45~49세	18,764	2,825	28,486	19,661	21,725	29,551	25,443	22,298	9,402	23,656
50~54세	21,047	2,975	32,458	23,235	22,536	33,301	27,746	26,865	10,144	27,928
55~59세	22,861	3,117	35,291	25,466	22,832	36,526	30,661	31,010	9,958	28,619
60~64세	20,635	2,878	31,204	24,578	19,894	33,837	29,110	30,316	8,517	20,338
65세	3,119	476	4,828	3,702	2,948	5,313	4,742	4,790	1,236	3,223
66~69세	8,988	1,317	14,425	11,178	9,363	17,970	15,253	13,510	3,588	9,155
70세 이상	13,431	1,753	27,352	22,000	15,771	39,504	29,673	28,282	6,370	13,691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20년	5,925,305	913,346	359,234	1,301,736	265,585	311,699	340,884	395,310	131,613
19세 이하	83,312	7,668	2,742	20,909	3,320	3,737	5,860	3,595	2,697
20~24세	153,679	17,323	8,485	37,127	5,810	6,947	8,337	11,263	3,901
25~29세	364,957	47,107	22,883	86,239	14,037	17,701	20,986	28,044	10,299
30~34세	378,706	53,387	25,304	83,675	17,007	19,660	22,435	28,815	9,936
35~39세	451,641	66,385	27,761	97,779	20,695	23,232	27,337	34,558	11,398
40~44세	481,717	72,797	28,236	107,333	21,402	24,034	28,886	34,460	11,209
45~49세	616,156	95,670	36,388	142,582	27,524	30,739	35,434	37,638	13,764
50~54세	737,677	119,201	44,946	172,279	33,492	36,607	41,451	43,394	15,742
55~59세	795,558	134,488	50,653	184,485	36,317	39,907	42,904	46,815	16,057
60~64세	765,701	129,443	47,742	167,418	34,929	40,956	42,082	50,177	15,932
65세	131,434	22,053	8,088	27,100	6,155	7,262	7,534	9,566	2,772
66~69세	373,550	63,204	21,811	73,469	18,169	22,088	21,902	27,420	7,797
70세 이상	591,217	84,620	34,195	101,341	26,728	38,829	35,736	39,565	10,109

&lt;부표 12&gt;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20년	167,722	27,582	269,252	189,616	183,305	291,614	236,859	228,405	78,449	233,094
19세 이하	2,066	2,247	5,424	2,540	1,128	1,774	1,644	3,149	632	12,180
20~24세	4,103	969	7,880	4,367	5,402	7,696	4,800	5,804	2,731	10,734
25~29세	10,105	2,032	17,900	10,414	11,516	16,952	12,427	13,080	6,164	17,071
30~34세	10,777	1,942	16,751	11,157	12,400	18,064	14,222	13,278	4,968	14,928
35~39세	13,501	2,045	19,475	13,644	16,171	21,486	17,461	15,440	5,999	17,274
40~44세	14,497	2,230	21,167	14,451	17,082	23,113	19,436	16,023	6,809	18,552
45~49세	18,083	2,837	27,789	18,824	21,150	28,688	24,664	21,243	9,111	24,028
50~54세	21,269	3,049	32,551	22,986	22,930	33,455	27,566	26,901	10,302	29,556
55~59세	22,187	3,115	34,813	25,051	22,631	35,816	29,508	29,799	10,067	30,945
60~64세	21,768	2,984	33,317	25,324	21,327	35,928	30,085	31,769	9,040	25,480
65세	3,793	563	5,801	4,481	3,572	6,160	5,779	5,431	1,524	3,800
66~69세	10,250	1,548	15,931	12,585	10,287	19,286	16,026	15,785	4,089	11,903
70세 이상	15,323	2,021	30,453	23,792	17,709	43,196	33,241	30,703	7,013	16,643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21년	5,791,367	886,711	351,485	1,290,486	258,173	299,572	332,505	379,043	129,260
19세 이하	97,368	9,461	3,281	23,635	4,937	4,399	6,653	4,012	3,009
20~24세	140,618	15,341	7,677	33,265	5,595	6,491	7,584	10,339	3,509
25~29세	353,933	44,897	21,831	84,883	13,783	16,549	19,746	26,644	9,641
30~34세	391,365	54,099	26,284	88,082	17,203	20,155	23,302	29,758	10,441
35~39세	444,200	64,938	28,060	97,409	20,182	22,493	26,644	33,175	11,127
40~44세	499,315	74,849	29,593	110,757	22,221	24,962	30,259	36,880	11,815
45~49세	587,471	89,475	34,580	135,321	26,312	29,331	34,304	36,312	13,166
50~54세	748,571	119,920	45,256	175,352	33,786	36,976	42,301	44,157	16,139
55~59세	795,874	134,987	50,490	186,931	35,894	39,347	42,771	45,639	16,153
60~64세	804,368	132,779	50,747	175,908	36,885	42,214	44,343	51,941	16,850
65세	131,959	21,721	8,142	27,964	6,164	7,744	7,773	9,065	2,789
66~69세	318,687	54,565	18,912	65,740	14,499	17,896	18,080	21,405	6,451
70세 이상	477,638	69,679	26,632	85,239	20,712	31,015	28,745	29,716	8,170

&lt;부표 12&gt;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21년	163,232	27,665	265,550	183,089	178,338	280,920	225,628	218,479	76,727	244,504
19세 이하	2,431	2,448	6,855	2,723	1,277	1,978	2,043	3,460	607	14,159
20~24세	3,813	895	7,269	3,926	5,139	7,501	4,605	5,270	2,429	9,970
25~29세	9,732	1,978	17,561	10,125	11,438	16,116	11,817	12,723	6,023	18,446
30~34세	11,085	2,058	17,503	11,282	12,585	18,554	14,260	13,522	5,346	15,846
35~39세	13,053	2,032	19,197	13,369	15,664	21,099	17,022	15,129	5,788	17,819
40~44세	14,913	2,317	21,667	14,956	17,476	23,681	19,750	16,503	7,015	19,701
45~49세	17,292	2,772	26,561	17,904	20,498	27,617	23,503	20,059	8,606	23,858
50~54세	21,596	3,176	33,558	23,039	23,310	33,791	27,939	26,844	10,646	30,785
55~59세	21,694	3,169	34,325	24,539	22,859	35,959	28,953	28,958	10,338	32,868
60~64세	22,872	3,166	35,637	26,397	22,482	37,770	30,978	33,040	9,402	30,957
65세	3,787	569	5,709	4,599	3,456	6,127	5,353	5,669	1,516	3,812
66~69세	8,891	1,347	14,251	11,018	8,299	15,785	13,080	13,504	3,398	11,566
70세 이상	12,073	1,738	25,457	19,212	13,855	34,942	26,325	23,798	5,613	14,717

<부표 12>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22년	5,706,837	870,993	348,549	1,294,421	255,059	289,408	325,277	368,766	129,098
19세 이하	114,933	10,622	3,824	26,375	7,133	6,061	8,325	4,241	3,423
20~24세	131,742	13,328	7,246	31,491	5,519	6,424	7,366	9,524	3,194
25~29세	342,909	42,227	20,936	84,929	13,639	15,714	18,660	24,572	9,006
30~34세	411,408	55,602	27,635	94,993	17,820	20,715	24,266	31,481	10,996
35~39세	434,779	63,054	28,058	97,185	19,757	21,957	25,711	31,801	10,891
40~44세	518,338	77,212	31,188	115,943	22,906	25,767	31,605	38,687	12,481
45~49세	568,481	84,538	33,390	130,617	25,278	28,512	33,662	35,696	13,046
50~54세	756,697	120,280	45,876	178,964	33,855	37,230	42,822	44,335	16,548
55~59세	786,347	130,518	49,558	186,028	35,434	38,788	42,387	44,818	16,420
60~64세	830,271	137,033	52,914	183,719	38,325	42,574	45,581	52,187	17,423
65세	147,668	24,295	9,073	31,828	6,564	8,295	8,469	9,796	3,174
66~69세	293,724	52,259	17,916	62,465	13,208	15,501	15,838	19,146	6,004
70세 이상	369,540	60,025	20,935	69,884	15,621	21,870	20,585	22,482	6,492

&lt;부표 12&gt; 연령별 지역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2022년	160,841	28,360	262,931	178,502	174,165	267,335	214,621	207,879	75,050	255,582
19세 이하	3,314	2,975	9,213	2,974	1,378	2,162	2,534	3,824	615	15,940
20~24세	3,842	891	6,796	4,028	5,014	7,091	4,421	4,780	2,074	8,713
25~29세	9,446	1,962	17,275	10,088	11,169	15,201	10,865	12,126	5,804	19,290
30~34세	11,428	2,181	18,756	11,920	13,066	19,077	14,520	13,986	5,836	17,130
35~39세	12,504	2,089	18,960	13,259	14,997	20,352	16,355	14,604	5,506	17,739
40~44세	15,280	2,428	22,361	15,515	17,866	24,355	19,853	16,925	7,226	20,740
45~49세	16,876	2,743	25,914	17,646	19,888	26,795	22,937	19,144	8,341	23,458
50~54세	21,641	3,360	34,076	23,289	23,654	33,759	28,136	26,456	10,814	31,602
55~59세	21,399	3,229	34,306	24,462	22,923	35,715	28,294	28,006	10,530	33,532
60~64세	23,524	3,328	36,819	26,676	23,067	37,958	31,296	32,934	9,679	35,234
65세	4,095	604	6,494	5,070	4,028	7,113	5,896	6,492	1,743	4,639
66~69세	8,133	1,278	12,946	9,668	7,252	13,349	11,152	11,679	3,038	12,892
70세 이상	9,359	1,292	19,015	13,907	9,863	24,408	18,362	16,923	3,844	14,673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5,521,251	3,932,929	659,497	461,561	178,537	95,875
19세 이하	65,633	52,057	8,701	4,071	654	118
20~24세	189,284	169,817	13,050	5,429	841	117
25~29세	344,555	288,186	30,667	18,456	4,943	1,559
30~34세	365,674	290,498	37,105	24,490	7,726	3,239
35~39세	450,861	338,426	51,151	35,744	12,538	5,754
40~44세	464,461	320,736	59,479	43,757	17,256	8,891
45~49세	643,113	418,276	84,684	66,407	28,018	15,220
50~54세	711,338	445,743	92,894	76,363	33,560	19,749
55~59세	785,378	487,590	100,224	82,438	37,592	22,418
60~64세	652,033	438,596	88,435	61,200	22,421	12,503
65세	88,820	63,338	12,142	7,223	2,456	1,318
66~69세	305,271	228,579	40,227	20,747	6,703	3,279
70세 이상	454,830	391,087	40,738	15,236	3,829	1,710

&lt;부표 13&gt;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8년	60,162	41,494	30,085	21,957	39,154
19세 이하	22	9	1	0	0
20~24세	23	4	1	0	2
25~29세	473	189	49	22	11
30~34세	1,411	651	295	134	125
35~39세	3,047	1,795	1,042	605	759
40~44세	5,234	3,275	2,073	1,444	2,316
45~49세	9,715	6,780	4,666	3,376	5,971
50~54세	12,767	9,167	6,749	5,017	9,329
55~59세	15,672	11,291	8,984	6,691	12,478
60~64세	8,252	6,028	4,629	3,581	6,388
65세	787	516	327	240	473
66~69세	1,902	1,266	928	629	1,011
70세 이상	857	523	341	218	291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9년	5,765,327	4,093,743	698,454	475,611	187,141	100,402
19세 이하	74,443	57,329	10,940	5,123	851	159
20~24세	170,521	151,606	12,480	5,268	916	206
25~29세	360,847	298,418	33,543	19,536	6,104	2,121
30~34세	373,543	294,164	37,674	25,414	9,081	3,879
35~39세	455,595	341,556	50,780	35,514	13,587	6,291
40~44세	470,439	325,149	59,291	43,588	18,070	9,203
45~49세	639,182	414,337	83,761	65,365	28,528	15,639
50~54세	733,551	458,768	95,744	77,725	34,647	20,161
55~59세	801,907	494,979	102,894	83,929	38,253	22,844
60~64세	720,822	483,015	100,594	67,272	23,600	13,084
65세	110,418	78,794	15,603	8,697	2,824	1,544
66~69세	328,771	245,960	45,250	21,334	6,408	3,402
70세 이상	525,288	449,668	49,900	16,846	4,272	1,869

&lt;부표 13&gt;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9년	61,901	42,458	31,256	23,394	50,967
19세 이하	28	12	1	0	0
20~24세	33	8	2	0	2
25~29세	740	257	89	25	14
30~34세	1,743	865	386	185	152
35~39세	3,238	1,904	1,183	644	898
40~44세	5,373	3,343	2,232	1,492	2,698
45~49세	9,540	6,609	4,792	3,412	7,199
50~54세	13,080	9,249	6,965	5,255	11,957
55~59세	15,484	11,449	8,791	6,971	16,313
60~64세	8,743	6,221	5,016	4,077	9,200
65세	920	562	413	352	709
66~69세	2,001	1,352	969	702	1,393
70세 이상	978	627	417	279	432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0년	5,925,305	4,250,503	716,263	449,675	183,092	101,812
19세 이하	83,312	63,036	12,754	6,139	1,122	204
20~24세	153,679	135,170	11,857	5,291	1,034	256
25~29세	364,957	300,136	34,781	19,618	6,201	2,551
30~34세	378,706	298,321	37,958	24,158	9,268	4,593
35~39세	451,641	340,834	49,096	32,577	13,305	6,912
40~44세	481,717	337,000	59,237	41,239	18,022	9,659
45~49세	616,156	402,548	79,688	59,593	26,720	15,536
50~54세	737,677	464,124	95,759	73,959	34,576	20,165
55~59세	795,558	492,536	101,634	79,311	37,508	22,709
60~64세	765,701	518,040	107,348	67,751	23,433	12,968
65세	131,434	96,147	18,568	8,800	2,918	1,492
66~69세	373,550	287,850	51,401	18,534	5,812	3,114
70세 이상	591,217	514,761	56,182	12,705	3,173	1,653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0년	63,750	43,414	31,309	23,895	61,592
19세 이하	42	13	2	0	0
20~24세	55	11	2	1	2
25~29세	1,060	397	142	45	26
30~34세	2,217	1,112	594	253	232
35~39세	3,743	2,096	1,251	784	1,043
40~44세	5,803	3,586	2,360	1,543	3,268
45~49세	9,585	6,408	4,543	3,410	8,125
50~54세	13,364	9,310	6,915	5,363	14,142
55~59세	15,403	11,474	8,579	7,028	19,376
60~64세	8,561	6,371	5,100	4,079	12,050
65세	1,018	673	469	342	1,007
66~69세	1,974	1,376	956	758	1,775
70세 이상	925	587	396	289	546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1년	5,791,367	4,134,756	681,504	440,389	184,351	105,454
19세 이하	97,368	72,825	14,740	7,816	1,517	370
20~24세	140,618	122,269	11,427	5,365	1,150	303
25~29세	353,933	289,000	34,832	18,842	6,337	2,730
30~34세	391,365	308,623	39,317	23,332	9,235	4,969
35~39세	444,200	334,925	47,908	30,675	12,556	7,335
40~44세	499,315	351,918	60,185	40,419	17,653	10,152
45~49세	587,471	384,766	75,338	54,483	25,224	14,962
50~54세	748,571	470,650	96,710	72,795	34,392	20,803
55~59세	795,874	489,577	101,417	78,222	37,497	23,058
60~64세	804,368	542,206	112,104	70,769	25,432	13,866
65세	131,959	95,733	18,910	8,967	3,080	1,668
66~69세	318,687	247,541	34,225	18,082	6,976	3,643
70세 이상	477,638	424,723	34,391	10,622	3,302	1,595

&lt;부표 13&gt;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1년	67,822	46,305	33,195	24,713	72,878
19세 이하	72	21	6	1	0
20~24세	76	20	5	1	2
25~29세	1,255	563	246	81	47
30~34세	2,850	1,444	823	410	362
35~39세	4,328	2,623	1,527	904	1,419
40~44세	6,463	4,202	2,734	1,849	3,740
45~49세	9,431	6,598	4,561	3,315	8,793
50~54세	14,071	9,824	7,282	5,376	16,668
55~59세	16,022	11,596	8,843	7,060	22,582
60~64세	9,079	6,551	5,161	4,209	14,991
65세	978	607	489	345	1,182
66~69세	2,246	1,603	1,097	859	2,415
70세 이상	951	653	421	303	677

<부표 13>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2년	5,706,837	3,989,132	674,336	454,350	195,208	112,748
19세 이하	114,933	84,915	17,250	9,907	2,139	499
20~24세	131,742	110,677	12,538	6,564	1,394	407
25~29세	342,909	273,443	35,880	20,730	6,776	3,113
30~34세	411,408	320,994	42,590	24,711	9,845	5,293
35~39세	434,779	325,661	46,945	29,574	12,376	7,262
40~44세	518,338	364,791	61,234	41,051	18,296	10,631
45~49세	568,481	370,059	72,201	52,158	24,186	14,764
50~54세	756,697	468,772	97,184	73,754	35,367	21,747
55~59세	786,347	475,314	99,620	77,793	37,784	23,519
60~64세	830,271	547,191	114,676	73,786	29,981	16,599
65세	147,668	103,928	21,238	11,077	4,258	2,262
66~69세	293,724	218,521	30,476	21,097	8,716	4,606
70세 이상	369,540	324,866	22,504	12,148	4,090	2,046

&lt;부표 13&gt;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2년	74,387	52,299	37,889	28,228	88,260
19세 이하	163	42	9	6	3
20~24세	119	28	13	2	0
25~29세	1,587	747	378	157	98
30~34세	3,300	2,011	1,221	718	725
35~39세	4,688	3,117	2,018	1,262	1,876
40~44세	6,969	4,926	3,445	2,327	4,668
45~49세	9,767	7,020	4,923	3,594	9,809
50~54세	15,050	10,923	8,072	6,167	19,661
55~59세	16,564	12,485	9,576	7,506	26,186
60~64세	10,762	7,460	5,806	4,719	19,291
65세	1,448	824	580	414	1,639
66~69세	2,803	1,906	1,335	978	3,286
70세 이상	1,167	810	513	378	1,018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5,521,251	4,530,581	494,538	187,643	99,437	61,598
19세 이하	65,633	60,872	3,965	649	115	22
20~24세	189,284	182,965	5,365	814	113	19
25~29세	344,555	318,961	18,431	4,901	1,522	470
30~34세	365,674	326,313	25,572	7,891	3,246	1,414
35~39세	450,861	385,669	38,488	13,148	5,923	3,147
40~44세	464,461	374,564	47,133	18,085	9,224	5,462
45~49세	643,113	493,958	70,875	29,437	15,914	10,009
50~54세	711,338	528,377	80,773	35,144	20,379	13,172
55~59세	785,378	575,672	87,480	39,170	23,173	15,757
60~64세	652,033	518,267	65,632	23,469	13,005	8,373
65세	88,820	74,525	7,806	2,590	1,382	780
66~69세	305,271	264,934	23,280	7,314	3,470	1,984
70세 이상	454,830	425,504	19,738	5,031	1,971	989

&lt;부표 14&gt;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8년	42,199	30,143	22,711	17,023	35,378
19세 이하	9	1	0	0	0
20~24세	5	1	0	0	2
25~29세	185	53	21	8	3
30~34세	654	299	139	71	75
35~39세	1,795	1,056	650	405	580
40~44세	3,337	2,149	1,509	1,065	1,933
45~49세	6,881	4,711	3,526	2,513	5,289
50~54세	9,363	6,729	5,148	3,911	8,342
55~59세	11,639	8,834	6,910	5,279	11,464
60~64세	6,012	4,710	3,672	2,877	6,016
65세	488	340	254	198	457
66~69세	1,261	904	638	530	956
70세 이상	570	356	244	166	261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9년	5,765,327	4,747,895	501,315	193,473	102,143	62,785
19세 이하	74,443	68,520	4,912	822	151	26
20~24세	170,521	164,474	4,982	844	183	24
25~29세	360,847	332,806	19,123	5,894	1,994	694
30~34세	373,543	331,766	25,855	8,960	3,754	1,681
35~39세	455,595	389,965	37,636	13,790	6,297	3,234
40~44세	470,439	380,643	46,336	18,540	9,295	5,446
45~49세	639,182	491,849	69,025	29,347	16,013	9,702
50~54세	733,551	546,922	81,273	35,900	20,522	13,377
55~59세	801,907	588,737	88,014	39,638	23,264	15,635
60~64세	720,822	577,062	70,380	24,461	13,359	8,887
65세	110,418	93,556	9,233	2,921	1,594	932
66~69세	328,771	288,405	23,143	6,887	3,543	2,055
70세 이상	525,288	493,190	21,403	5,469	2,174	1,092

&lt;부표 14&gt;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9년	42,422	31,059	23,189	17,995	43,051
19세 이하	11	1	0	0	0
20~24세	11	1	0	0	2
25~29세	220	79	25	7	5
30~34세	829	367	174	79	78
35~39세	1,858	1,145	667	413	590
40~44세	3,382	2,182	1,497	1,004	2,114
45~49세	6,633	4,773	3,351	2,575	5,914
50~54세	9,272	6,991	5,214	4,064	10,016
55~59세	11,407	8,790	6,925	5,651	13,846
60~64세	6,312	4,941	3,993	3,225	8,202
65세	544	387	339	264	648
66~69세	1,294	956	705	519	1,264
70세 이상	649	446	299	194	372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0년	5,925,305	4,959,317	459,612	181,940	99,756	62,291
19세 이하	83,312	76,312	5,741	1,031	178	36
20~24세	153,679	147,957	4,626	849	191	44
25~29세	364,957	336,935	18,713	5,670	2,290	867
30~34세	378,706	337,698	23,973	8,876	4,248	1,970
35~39세	451,641	390,224	33,523	13,023	6,554	3,468
40~44세	481,717	395,452	42,867	17,973	9,325	5,582
45~49세	616,156	480,235	61,953	26,736	15,285	9,413
50~54세	737,677	557,039	76,462	34,631	20,059	13,167
55~59세	795,558	590,425	81,803	37,816	22,539	15,311
60~64세	765,701	624,839	67,869	22,988	12,806	8,570
65세	131,434	114,853	8,753	2,828	1,483	960
66~69세	373,550	339,047	18,756	5,785	3,064	1,918
70세 이상	591,217	568,301	14,573	3,734	1,734	985

&lt;부표 14&gt;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0년	41,832	30,514	23,084	17,847	49,112
19세 이하	13	1	0	0	0
20~24세	9	1	0	0	2
25~29세	315	112	38	11	6
30~34세	1,022	494	226	107	92
35~39세	1,936	1,188	717	423	585
40~44세	3,477	2,176	1,501	1,061	2,303
45~49세	6,154	4,512	3,226	2,361	6,281
50~54세	9,064	6,798	5,276	3,981	11,200
55~59세	11,191	8,531	6,750	5,506	15,686
60~64세	6,189	4,913	4,067	3,326	10,134
65세	622	448	328	294	865
66~69세	1,290	920	697	558	1,515
70세 이상	550	420	258	219	443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1년	5,791,367	4,847,137	436,869	176,918	98,626	63,349
19세 이하	97,368	88,808	6,928	1,280	284	50
20~24세	140,618	135,327	4,241	815	177	44
25~29세	353,933	327,514	17,241	5,367	2,187	1,003
30~34세	391,365	351,218	22,491	8,508	4,403	2,381
35~39세	444,200	385,299	30,953	12,064	6,608	3,886
40~44세	499,315	414,379	41,155	17,182	9,453	6,020
45~49세	587,471	462,192	55,841	24,692	14,047	8,973
50~54세	748,571	569,389	74,560	33,757	20,052	13,320
55~59세	795,874	592,800	79,540	37,227	22,180	15,249
60~64세	804,368	662,374	66,788	23,305	12,803	8,517
65세	131,959	115,911	8,352	2,810	1,467	884
66~69세	318,687	283,968	17,080	6,440	3,390	2,083
70세 이상	477,638	457,958	11,699	3,471	1,575	939

&lt;부표 14&gt;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1년	42,461	30,676	22,773	17,953	54,605
19세 이하	14	3	1	0	0
20~24세	9	3	0	0	2
25~29세	401	154	42	17	7
30~34세	1,174	638	291	145	116
35~39세	2,173	1,251	802	480	684
40~44세	3,680	2,410	1,544	1,079	2,413
45~49세	5,959	4,284	2,929	2,275	6,279
50~54세	9,193	6,726	5,107	4,054	12,413
55~59세	11,091	8,412	6,697	5,388	17,290
60~64세	6,219	4,937	4,018	3,424	11,983
65세	548	431	317	256	983
66~69세	1,422	1,015	742	625	1,922
70세 이상	578	412	283	210	513

<부표 14>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2년	5,706,837	4,742,492	439,729	177,156	101,001	65,567
19세 이하	114,933	104,591	8,303	1,584	353	72
20~24세	131,742	126,232	4,513	762	179	44
25~29세	342,909	316,263	17,417	5,215	2,264	1,026
30~34세	411,408	369,859	22,909	8,293	4,634	2,581
35~39세	434,779	378,231	28,865	11,199	6,395	3,994
40~44세	518,338	432,300	41,222	16,821	9,585	6,140
45~49세	568,481	449,344	52,469	22,986	13,409	8,729
50~54세	756,697	574,441	74,986	33,661	20,217	13,836
55~59세	786,347	582,897	78,959	36,214	22,148	15,383
60~64세	830,271	677,304	68,964	25,823	14,212	9,269
65세	147,668	128,091	9,926	3,599	1,890	1,126
66~69세	293,724	254,587	19,057	7,213	3,896	2,338
70세 이상	369,540	348,352	12,139	3,786	1,819	1,029

&lt;부표 14&gt;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2년	45,139	32,559	23,958	18,280	60,956
19세 이하	23	5	2	0	0
20~24세	10	2	0	0	0
25~29세	426	197	71	21	9
30~34세	1,500	825	429	213	165
35~39세	2,490	1,483	872	491	759
40~44세	4,160	2,723	1,744	1,128	2,515
45~49세	5,956	4,214	3,048	2,093	6,233
50~54세	9,557	7,150	5,268	4,102	13,479
55~59세	11,384	8,623	6,591	5,367	18,781
60~64세	6,784	5,258	4,418	3,664	14,575
65세	632	460	355	317	1,272
66~69세	1,535	1,163	849	631	2,455
70세 이상	682	456	311	253	713

<부표 15>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2018년	내국인	외국인	2019년	내국인	외국인	2020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5,521,251	4,988,485	532,766	5,765,327	5,191,329	573,998	5,925,305	5,323,083	602,222
19세 이하	65,633	10,844	54,789	74,443	9,746	64,697	83,312	9,305	74,007
20~24세	189,284	183,095	6,189	170,521	164,271	6,250	153,679	147,884	5,795
25~29세	344,555	319,060	25,495	360,847	337,558	23,289	364,957	345,030	19,927
30~34세	365,674	318,377	47,297	373,543	323,748	49,795	378,706	329,681	49,025
35~39세	450,861	405,281	45,580	455,595	406,952	48,643	451,641	399,065	52,576
40~44세	464,461	419,116	45,345	470,439	421,294	49,145	481,717	431,410	50,307
45~49세	643,113	579,103	64,010	639,182	575,020	64,162	616,156	555,201	60,955
50~54세	711,338	641,148	70,190	733,551	661,241	72,310	737,677	664,607	73,070
55~59세	785,378	717,135	68,243	801,907	726,192	75,715	795,558	716,177	79,381
60~64세	652,033	594,880	57,153	720,822	659,282	61,540	765,701	698,614	67,087
65세	88,820	80,535	8,285	110,418	100,572	9,846	131,434	120,391	11,043
66~69세	305,271	280,532	24,739	328,771	301,394	27,377	373,550	341,198	32,352
70세 이상	454,830	439,379	15,451	525,288	504,059	21,229	591,217	564,520	26,697

&lt;부표 15&gt;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2021년	내국인	외국인	2022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5,791,367	5,163,214	628,153	5,706,837	5,045,288	661,549
19세 이하	97,368	8,728	88,640	114,933	8,831	106,102
20~24세	140,618	134,747	5,871	131,742	124,876	6,866
25~29세	353,933	336,109	17,824	342,909	326,225	16,684
30~34세	391,365	345,520	45,845	411,408	369,392	42,016
35~39세	444,200	387,218	56,982	434,779	374,764	60,015
40~44세	499,315	447,716	51,599	518,338	462,906	55,432
45~49세	587,471	529,381	58,090	568,481	512,947	55,534
50~54세	748,571	673,997	74,574	756,697	679,412	77,285
55~59세	795,874	709,271	86,603	786,347	702,933	83,414
60~64세	804,368	739,735	64,633	830,271	760,240	70,031
65세	131,959	120,023	11,936	147,668	134,509	13,159
66~69세	318,687	284,481	34,206	293,724	256,197	37,527
70세 이상	477,638	446,288	31,350	369,540	332,056	37,484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5,521,251	4,592,426	461,561	178,537	95,875
서울	861,204	694,096	79,425	32,856	18,235
인천	334,071	272,808	28,732	11,426	6,502
경기	1,195,706	967,592	110,507	44,609	23,847
대구	250,250	209,827	19,247	7,526	4,112
경북	296,560	253,591	22,613	8,287	4,185
경남	319,204	277,749	24,046	7,731	3,535
부산	371,376	312,476	29,722	10,931	5,768
울산	121,494	103,464	10,289	3,523	1,842
대전	158,051	129,252	13,327	5,320	3,158
세종	24,855	19,928	2,469	919	485
충남	251,128	209,459	21,108	8,146	4,291
충북	180,760	151,834	15,066	5,616	2,904
광주	172,295	144,352	13,913	5,225	2,885
전남	275,219	232,834	20,569	7,785	4,493
전북	227,635	193,630	18,181	6,557	3,288
강원	217,334	186,008	16,309	5,969	3,200
제주	73,527	63,610	5,815	2,000	940
기타	190,582	169,916	10,223	4,111	2,205

&lt;부표 16&gt;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8년	60,162	41,494	30,085	21,957	39,154
서울	11,371	7,750	5,914	4,351	7,206
인천	4,268	3,012	2,252	1,753	3,318
경기	14,955	10,386	7,671	5,552	10,587
대구	2,764	1,890	1,372	1,197	2,315
경북	2,548	1,715	1,186	845	1,590
경남	2,021	1,403	884	633	1,202
부산	3,755	2,578	2,002	1,522	2,622
울산	1,021	598	291	174	292
대전	1,995	1,529	1,134	795	1,541
세종	327	217	163	117	230
충남	2,745	1,962	1,326	870	1,221
충북	1,770	1,142	792	592	1,044
광주	1,807	1,279	915	689	1,230
전남	2,987	2,178	1,459	1,048	1,866
전북	2,013	1,335	991	646	994
강원	2,006	1,340	935	616	951
제주	509	279	148	92	134
기타	1,300	901	650	465	811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9년	5,765,327	4,792,197	475,611	187,141	100,402
서울	894,646	721,267	80,856	33,717	18,770
인천	348,801	285,220	29,300	12,020	6,568
경기	1,262,476	1,018,255	115,305	48,005	26,054
대구	258,883	217,631	19,565	7,522	4,172
경북	305,835	262,389	22,676	8,213	4,313
경남	332,125	287,984	25,181	8,501	3,910
부산	385,780	324,612	30,585	11,619	5,903
울산	127,415	108,140	10,739	3,910	1,971
대전	164,151	134,468	13,702	5,446	3,114
세종	26,595	21,344	2,624	977	502
충남	261,565	217,832	21,741	8,573	4,545
충북	187,137	157,231	15,306	5,796	3,026
광주	178,928	150,116	14,081	5,326	2,950
전남	285,073	240,961	21,214	8,129	4,429
전북	233,667	199,343	18,128	6,508	3,368
강원	224,052	192,105	16,554	6,073	3,168
제주	76,588	66,452	5,899	2,013	974
기타	211,610	186,847	12,155	4,793	2,665

&lt;부표 16&gt;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9년	61,901	42,458	31,256	23,394	50,967
서울	11,720	8,083	5,963	4,607	9,663
인천	4,308	3,111	2,258	1,786	4,230
경기	16,025	10,894	8,037	6,051	13,850
대구	2,701	1,898	1,381	1,120	2,893
경북	2,534	1,679	1,220	860	1,951
경남	2,068	1,356	981	664	1,480
부산	3,747	2,564	1,922	1,529	3,299
울산	1,063	640	378	208	366
대전	1,999	1,503	1,140	852	1,927
세종	323	232	175	120	298
충남	2,720	1,986	1,399	1,039	1,730
충북	1,777	1,160	874	617	1,350
광주	1,882	1,290	988	698	1,597
전남	2,962	2,096	1,626	1,224	2,432
전북	2,002	1,325	964	712	1,317
강원	1,941	1,353	976	646	1,236
제주	525	270	182	98	175
기타	1,604	1,018	792	563	1,173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0년	5,925,305	4,966,766	449,675	183,092	101,812
서울	913,346	744,691	75,304	32,403	18,581
인천	359,234	296,605	27,831	11,632	6,697
경기	1,301,736	1,057,029	110,318	47,557	26,949
대구	265,585	225,245	18,549	7,379	4,120
경북	311,699	270,311	20,826	7,869	4,162
경남	340,884	298,008	23,278	8,470	4,152
부산	395,310	335,986	28,622	11,180	6,120
울산	131,613	111,948	10,495	4,033	2,096
대전	167,722	139,029	12,830	5,173	3,123
세종	27,582	22,507	2,388	975	525
충남	269,252	225,733	20,730	8,402	4,669
충북	189,616	161,586	13,665	5,380	2,960
광주	183,305	155,585	13,030	5,151	2,839
전남	291,614	247,239	20,457	8,142	4,498
전북	236,859	205,055	16,130	5,943	3,239
강원	228,405	197,959	15,303	5,767	3,038
제주	78,449	69,048	5,424	1,809	920
기타	233,094	203,202	14,495	5,827	3,124

&lt;부표 16&gt;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0년	63,750	43,414	31,309	23,895	61,592
서울	11,817	8,206	5,969	4,604	11,771
인천	4,349	3,054	2,288	1,781	4,997
경기	17,195	11,570	8,280	6,242	16,596
대구	2,653	1,942	1,330	1,070	3,297
경북	2,530	1,660	1,144	886	2,311
경남	2,243	1,405	918	689	1,721
부산	3,793	2,530	1,845	1,408	3,826
울산	1,171	742	420	236	472
대전	1,916	1,451	1,125	830	2,245
세종	286	247	179	122	353
충남	2,935	1,929	1,482	1,078	2,294
충북	1,821	1,148	826	631	1,599
광주	1,838	1,266	938	753	1,905
전남	2,935	2,054	1,618	1,370	3,301
전북	1,960	1,322	919	710	1,581
강원	1,885	1,335	950	690	1,478
제주	495	280	160	112	201
기타	1,928	1,273	918	683	1,644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1년	5,791,367	4,816,260	440,389	184,351	105,454
서울	886,711	717,915	71,844	32,032	18,977
인천	351,485	287,247	27,720	11,731	6,960
경기	1,290,486	1,040,879	107,496	47,531	28,244
대구	258,173	216,684	18,740	7,419	4,278
경북	299,572	258,267	20,197	7,664	4,284
경남	332,505	287,829	23,394	8,831	4,437
부산	379,043	319,426	27,777	11,276	6,210
울산	129,260	108,991	10,224	4,247	2,224
대전	163,232	134,627	12,334	5,211	3,048
세종	27,665	22,550	2,359	944	552
충남	265,550	220,799	20,363	8,569	4,906
충북	183,089	155,200	13,261	5,205	3,012
광주	178,338	150,528	12,688	5,155	2,884
전남	280,920	236,209	19,370	8,341	4,681
전북	225,628	194,285	15,446	5,879	3,141
강원	218,479	187,857	15,041	5,795	3,105
제주	76,727	67,637	5,186	1,714	909
기타	244,504	209,330	16,949	6,807	3,602

&lt;부표 16&gt;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1년	67,822	4,134,756	46,305	33,195	24,713
서울	12,378	612,053	8,608	6,177	4,818
인천	4,590	245,950	3,184	2,379	1,840
경기	18,278	886,122	12,769	8,987	6,726
대구	2,761	186,587	2,015	1,425	1,057
경북	2,640	223,683	1,745	1,208	889
경남	2,688	250,483	1,601	1,038	661
부산	4,103	276,675	2,685	1,892	1,375
울산	1,340	93,392	842	482	316
대전	2,005	114,689	1,432	1,131	859
세종	292	19,034	256	164	139
충남	3,162	189,743	2,120	1,594	1,100
충북	1,877	133,443	1,217	895	605
광주	1,833	129,217	1,287	976	716
전남	3,104	205,719	2,128	1,710	1,308
전북	2,019	167,724	1,347	925	689
강원	1,973	162,713	1,283	961	726
제주	478	58,487	288	166	117
기타	2,301	179,042	1,498	1,085	772

<부표 16>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22년	5,706,837	4,663,468	454,350	195,208	112,748
서울	870,993	694,409	71,270	32,865	19,968
인천	348,549	278,853	29,180	12,726	7,494
경기	1,294,421	1,022,665	111,764	50,974	30,414
대구	255,059	210,011	19,868	8,214	4,550
경북	289,408	245,620	20,852	8,153	4,473
경남	325,277	276,421	24,285	9,765	5,163
부산	368,766	305,490	28,352	11,899	6,769
울산	129,098	107,034	10,564	4,523	2,508
대전	160,841	130,658	12,758	5,465	3,175
세종	28,360	22,895	2,475	985	564
충남	262,931	214,974	21,284	9,049	5,163
충북	178,502	148,249	14,359	5,664	3,092
광주	174,165	145,226	12,832	5,342	3,042
전남	267,335	222,562	18,819	7,970	4,733
전북	214,621	182,169	15,479	6,035	3,259
강원	207,879	175,976	15,253	6,081	3,259
제주	75,050	65,687	5,242	1,779	907
기타	255,582	214,569	19,714	7,719	4,215

&lt;부표 16&gt; 지역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22년	74,387	52,299	37,889	28,228	88,260
서울	13,560	9,765	6,933	5,266	16,957
인천	5,039	3,556	2,693	1,997	7,011
경기	20,619	14,644	10,828	8,110	24,403
대구	3,038	2,201	1,554	1,211	4,412
경북	2,814	1,897	1,385	1,016	3,198
경남	3,087	1,905	1,392	878	2,381
부산	4,400	3,125	2,145	1,554	5,032
울산	1,529	1,032	699	416	793
대전	2,089	1,543	1,205	897	3,051
세종	353	253	213	141	481
충남	3,413	2,422	1,730	1,288	3,608
충북	2,043	1,323	929	733	2,110
광주	1,919	1,340	1,046	760	2,658
전남	3,142	2,341	1,666	1,325	4,777
전북	2,165	1,437	1,017	762	2,298
강원	2,053	1,389	995	784	2,089
제주	502	328	166	144	295
기타	2,622	1,798	1,293	946	2,706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5,521,251	4,530,581	494,538	187,643	99,437	61,598
서울	861,204	684,516	84,752	34,184	18,720	11,464
인천	334,071	269,058	30,663	12,000	6,660	4,357
경기	1,195,706	954,235	117,975	46,435	24,625	15,131
대구	250,250	206,599	20,925	7,958	4,271	2,845
경북	296,560	249,983	24,639	8,782	4,418	2,649
경남	319,204	274,152	26,078	8,286	3,825	2,081
부산	371,376	308,813	31,540	11,400	5,983	3,755
울산	121,494	102,667	10,721	3,683	1,873	1,066
대전	158,051	127,579	14,120	5,528	3,174	2,069
세종	24,855	19,743	2,547	958	494	325
충남	251,128	206,765	22,534	8,602	4,489	2,843
충북	180,760	149,507	16,295	5,944	3,047	1,876
광주	172,295	142,118	15,034	5,553	3,014	1,917
전남	275,219	229,119	22,331	8,591	4,815	3,084
전북	227,635	190,421	19,871	6,988	3,586	2,139
강원	217,334	183,431	17,703	6,428	3,243	2,039
제주	73,527	62,863	6,168	2,123	975	573
기타	190,582	169,012	10,642	4,200	2,225	1,385

&lt;부표 17&gt;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8년	42,199	30,143	22,711	17,023	35,378
서울	7,889	5,705	4,567	3,215	6,192
인천	2,989	2,240	1,759	1,356	2,989
경기	10,343	7,533	5,682	4,322	9,425
대구	1,912	1,423	1,071	958	2,288
경북	1,802	1,215	909	714	1,449
경남	1,429	1,012	682	519	1,140
부산	2,641	1,998	1,516	1,229	2,501
울산	618	298	201	112	255
대전	1,536	1,124	870	662	1,389
세종	214	162	105	103	204
충남	1,979	1,317	933	578	1,088
충북	1,228	843	574	474	972
광주	1,289	930	739	532	1,169
전남	2,263	1,499	1,071	802	1,644
전북	1,410	966	760	547	947
강원	1,433	1,013	673	482	889
제주	330	188	110	79	118
기타	894	677	489	339	719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9년	5,765,327	4,747,895	501,315	193,473	102,143	62,785
서울	894,646	714,413	85,169	34,676	18,885	11,763
인천	348,801	282,557	30,793	12,430	6,638	4,331
경기	1,262,476	1,008,946	121,073	49,257	26,363	16,080
대구	258,883	215,205	20,921	7,807	4,277	2,749
경북	305,835	259,589	24,361	8,636	4,405	2,582
경남	332,125	285,318	26,793	8,850	4,055	2,173
부산	385,780	322,196	31,781	11,884	6,047	3,757
울산	127,415	107,818	10,930	3,971	1,938	1,101
대전	164,151	133,287	14,350	5,540	3,140	2,036
세종	26,595	21,258	2,663	986	513	313
충남	261,565	215,947	22,853	8,896	4,644	2,781
충북	187,137	155,533	16,263	6,037	3,103	1,866
광주	178,928	148,380	14,986	5,594	3,062	1,953
전남	285,073	238,105	22,694	8,725	4,656	3,086
전북	233,667	196,707	19,619	6,868	3,578	2,096
강원	224,052	190,198	17,619	6,424	3,226	1,940
제주	76,588	65,888	6,193	2,102	978	563
기타	211,610	186,550	12,254	4,790	2,635	1,615

&lt;부표 17&gt;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9년	42,422	31,059	23,189	17,995	43,051
서울	8,017	5,858	4,514	3,594	7,757
인천	3,109	2,212	1,739	1,456	3,536
경기	10,751	7,880	5,917	4,581	11,628
대구	1,955	1,361	1,061	872	2,675
경북	1,730	1,258	881	702	1,691
경남	1,353	1,027	702	537	1,317
부산	2,529	1,914	1,528	1,185	2,959
울산	629	403	203	132	290
대전	1,502	1,090	885	661	1,660
세종	242	155	126	86	253
충남	1,958	1,407	1,011	705	1,363
충북	1,195	883	605	473	1,179
광주	1,269	956	737	579	1,412
전남	2,137	1,634	1,182	869	1,985
전북	1,355	991	711	566	1,176
강원	1,328	1,071	677	517	1,052
제주	314	203	125	78	144
기타	1,049	756	585	402	974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0년	5,925,305	4,959,317	459,612	181,940	99,756	62,291
서울	913,346	743,018	77,666	32,284	18,209	11,435
인천	359,234	296,382	28,226	11,586	6,557	4,244
경기	1,301,736	1,056,609	112,627	46,896	26,271	16,638
대구	265,585	224,547	19,095	7,321	4,064	2,635
경북	311,699	269,460	21,509	7,910	4,144	2,480
경남	340,884	297,490	23,791	8,374	4,111	2,200
부산	395,310	335,613	28,930	11,124	5,976	3,709
울산	131,613	112,369	10,401	3,919	1,966	1,100
대전	167,722	138,859	13,024	5,142	3,012	1,907
세종	27,582	22,601	2,338	964	505	280
충남	269,252	225,677	21,072	8,355	4,593	2,809
충북	189,616	161,065	14,112	5,375	2,919	1,812
광주	183,305	154,956	13,408	5,212	2,871	1,850
전남	291,614	246,355	21,235	8,256	4,473	2,966
전북	236,859	203,966	16,854	6,055	3,212	2,016
강원	228,405	197,501	15,675	5,753	2,995	1,859
제주	78,449	68,897	5,483	1,801	937	488
기타	233,094	203,952	14,166	5,613	2,941	1,863

&lt;부표 17&gt;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0년	41,832	30,514	23,084	17,847	49,112
서울	7,903	5,794	4,426	3,475	9,136
인천	2,881	2,250	1,716	1,357	4,035
경기	11,034	7,857	6,043	4,572	13,189
대구	1,900	1,339	986	836	2,862
경북	1,603	1,173	859	687	1,874
경남	1,327	925	705	521	1,440
부산	2,384	1,829	1,362	1,152	3,231
울산	740	370	272	136	340
대전	1,423	1,073	808	639	1,835
세종	254	151	129	91	269
충남	1,882	1,426	1,014	760	1,664
충북	1,140	797	642	463	1,291
광주	1,233	917	701	541	1,616
전남	2,006	1,657	1,266	1,002	2,398
전북	1,291	930	664	543	1,328
강원	1,234	999	697	486	1,206
제주	301	177	133	77	155
기타	1,296	850	661	509	1,243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1년	5,791,367	4,847,137	436,869	176,918	98,626	63,349
서울	886,711	721,537	72,857	31,167	17,750	11,556
인천	351,485	289,508	27,271	11,215	6,544	4,331
경기	1,290,486	1,049,443	107,095	45,554	26,279	17,080
대구	258,173	217,786	18,542	7,088	4,067	2,571
경북	299,572	259,332	19,988	7,497	4,047	2,432
경남	332,505	289,572	22,993	8,265	4,186	2,374
부산	379,043	321,331	27,232	10,796	5,835	3,806
울산	129,260	110,071	9,926	4,003	2,026	1,191
대전	163,232	135,625	12,103	4,952	2,859	1,927
세종	27,665	22,861	2,219	890	501	291
충남	265,550	222,612	20,139	8,145	4,571	2,941
충북	183,089	155,969	13,119	5,034	2,812	1,802
광주	178,338	151,058	12,605	5,048	2,723	1,806
전남	280,920	236,946	19,744	8,172	4,409	2,946
전북	225,628	194,779	15,410	5,692	3,027	1,935
강원	218,479	188,904	14,826	5,494	2,811	1,840
제주	76,727	67,915	5,024	1,647	865	467
기타	244,504	211,888	15,776	6,259	3,314	2,053

&lt;부표 17&gt;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1년	42,461	30,676	22,773	17,953	54,605
서울	7,866	5,753	4,424	3,516	10,285
인천	2,883	2,220	1,691	1,375	4,447
경기	11,540	8,226	5,960	4,692	14,617
대구	1,895	1,377	975	776	3,096
경북	1,654	1,071	853	625	2,073
경남	1,431	949	646	519	1,570
부산	2,469	1,770	1,305	1,014	3,485
울산	785	423	269	177	389
대전	1,291	1,067	815	620	1,973
세종	233	168	106	99	297
충남	1,885	1,437	1,017	815	1,988
충북	1,154	786	593	448	1,372
광주	1,165	927	678	558	1,770
전남	2,046	1,553	1,263	1,052	2,789
전북	1,279	857	658	526	1,465
강원	1,199	922	695	499	1,289
제주	275	177	112	79	166
기타	1,411	993	713	563	1,534

<부표 17>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22년	5,706,837	4,742,492	439,729	177,156	101,001	65,567
서울	870,993	704,131	71,549	30,812	18,163	12,141
인천	348,549	284,485	27,934	11,495	6,686	4,403
경기	1,294,421	1,043,864	109,573	45,952	27,264	17,947
대구	255,059	213,139	19,218	7,362	4,105	2,728
경북	289,408	249,023	19,953	7,289	4,064	2,488
경남	325,277	280,882	23,200	8,577	4,459	2,542
부산	368,766	309,987	27,416	10,676	6,073	3,964
울산	129,098	109,175	10,029	4,038	2,172	1,312
대전	160,841	133,040	12,118	4,986	2,834	1,905
세종	28,360	23,461	2,252	891	504	314
충남	262,931	219,512	20,262	8,048	4,577	2,947
충북	178,502	151,067	13,471	4,903	2,770	1,798
광주	174,165	146,961	12,397	5,013	2,737	1,753
전남	267,335	225,103	18,459	7,692	4,300	2,909
전북	214,621	184,259	14,890	5,541	3,018	1,938
강원	207,879	178,625	14,509	5,418	2,810	1,782
제주	75,050	66,505	4,799	1,636	813	456
기타	255,582	219,273	17,700	6,827	3,652	2,240

&lt;부표 17&gt; 지역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22년	45,139	32,559	23,958	18,280	60,956
서울	8,278	6,024	4,575	3,670	11,650
인천	3,192	2,248	1,789	1,403	4,914
경기	12,633	9,192	6,604	4,845	16,547
대구	1,870	1,448	1,087	782	3,320
경북	1,671	1,191	860	601	2,268
경남	1,597	1,127	677	506	1,710
부산	2,619	1,871	1,367	1,011	3,782
울산	861	530	311	212	458
대전	1,362	1,006	807	651	2,132
세종	221	175	127	89	326
충남	2,034	1,433	1,041	828	2,249
충북	1,187	801	588	421	1,496
광주	1,207	915	700	536	1,946
전남	2,053	1,493	1,200	1,021	3,105
전북	1,268	906	648	529	1,624
강원	1,227	893	687	516	1,412
제주	272	167	135	80	187
기타	1,587	1,139	755	579	1,830

<부표 18> 월별 연도별 적립일수

(단위: 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38,180,331	134,529,848	129,777,149	129,652,569	145,332,704
1월	10,886,143	10,596,764	9,021,756	9,325,697	9,911,425
2월	9,308,149	8,516,404	9,686,638	8,493,050	9,532,482
3월	12,441,899	11,628,179	11,006,070	11,209,936	12,054,484
4월	12,322,878	11,789,103	11,346,228	11,388,074	12,750,422
5월	12,335,832	12,065,358	10,915,236	10,716,994	13,140,710
6월	12,171,053	11,437,231	11,410,199	11,152,791	11,966,501
7월	11,693,680	11,810,784	10,907,552	11,325,071	12,594,589
8월	10,956,674	11,323,216	9,753,808	10,412,828	12,273,471
9월	10,167,730	9,568,546	10,809,797	9,790,494	11,851,706
10월	12,630,993	12,463,440	11,527,122	11,894,079	13,871,721
11월	12,394,058	12,275,887	11,943,055	12,110,742	13,694,077
12월	10,871,242	11,054,936	11,449,688	11,832,813	11,691,116

&lt;부표 19&gt;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787,623	698,042	89,581
1998년	0	0	0
1999년	0	0	0
2000년	0	0	0
2001년	0	0	0
2002년	4	2	2
2003년	1	1	0
2004년	3,977	3,688	289
2005년	2,808	2,564	244
2006년	23,438	21,530	1,908
2007년	31,815	29,163	2,652
2008년	48,005	44,159	3,846
2009년	40,095	36,087	4,008
2010년	22,380	19,939	2,441
2011년	26,760	24,182	2,578
2012년	31,391	28,526	2,865
2013년	40,418	36,412	4,006
2014년	47,542	42,089	5,453
2015년	44,849	39,567	5,282
2016년	64,355	57,511	6,844
2017년	82,641	72,540	10,101
2018년	69,000	59,034	9,966
2109년	59,237	51,596	7,641
2020년	46,088	39,739	6,349
2021년	47,708	41,260	6,448
2022년	55,111	48,453	6,658

<부표 20>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	787,623	104,932	24,372	62,623	79,396	80,732	85,496	95,904
1998년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2002년	4	0	0	0	0	0	1	3
2003년	1	0	0	0	0	0	0	0
2004년	3,977	2	77	283	675	777	679	488
2005년	2,808	2	42	140	292	460	545	495
2006년	23,438	96	257	1,113	2,434	3,915	5,031	4,228
2007년	31,815	148	509	1,658	2,919	5,213	5,966	5,638
2008년	48,005	173	872	2,665	4,149	6,954	7,842	8,313
2009년	40,095	242	1,042	2,459	3,628	5,431	6,401	7,028
2010년	22,380	101	775	1,583	2,199	2,777	3,280	3,718
2011년	26,760	299	920	2,047	2,389	2,705	3,636	4,715
2012년	31,391	1,035	925	2,246	2,773	3,056	4,274	5,016
2013년	40,418	1,818	1,395	4,398	4,425	4,126	5,301	5,867
2014년	47,542	2,813	1,489	5,439	4,849	4,343	5,606	6,682
2015년	44,849	4,323	1,438	5,310	4,994	4,025	4,457	5,464
2016년	64,355	9,714	1,923	7,763	7,986	5,769	5,895	6,937
2017년	82,641	16,686	2,844	7,887	9,467	7,272	6,318	8,348
2018년	69,000	14,415	2,102	5,644	7,823	6,226	5,287	6,820
2109년	59,237	11,963	1,912	3,927	5,964	5,209	4,708	5,815
2020년	46,088	8,202	1,305	2,831	4,692	4,308	3,645	4,086
2021년	47,708	12,456	1,670	2,514	3,925	3,964	3,166	3,259
2022년	55,111	20,444	2,875	2,716	3,813	4,202	3,458	2,984

&lt;부표 20&gt;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합계	96,058	76,495	56,797	6,608	14,021	4,189
1998년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2003년	0	1	0	0	0	0
2004년	423	384	149	10	23	7
2005년	414	301	78	6	25	8
2006년	3,604	2,101	503	38	95	23
2007년	4,938	3,265	1,241	83	160	77
2008년	7,776	5,373	3,235	191	348	114
2009년	6,413	4,383	2,482	141	304	141
2010년	3,580	2,640	1,349	125	178	75
2011년	4,353	3,522	1,569	209	309	87
2012년	4,712	3,918	2,605	293	415	123
2013년	5,305	4,267	2,676	235	490	115
2014년	6,622	5,039	3,665	362	479	154
2015년	5,574	4,802	3,472	330	514	146
2016년	7,528	4,921	4,368	415	849	287
2017년	9,414	6,664	5,737	579	1,119	306
2018년	6,985	6,099	5,525	613	1,210	251
2109년	6,051	6,323	5,281	563	1,240	281
2020년	4,639	4,612	4,856	782	1,675	455
2021년	4,153	4,524	4,199	799	2,345	734
2022년	3,574	3,356	3,807	834	2,243	805

<부표 21> 연도별 지역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787,623	241,248	45,527	265,588	14,355	16,398	22,293	14,225	12,321
1998년	0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0
2002년	4	1	0	0	1	0	0	1	0
2003년	1	1	0	0	0	0	0	0	0
2004년	3,977	1,646	199	1,302	49	144	91	51	51
2005년	2,808	1,247	146	955	21	42	46	30	20
2006년	23,438	11,015	1,122	7,314	310	355	318	269	218
2007년	31,815	14,706	1,710	10,063	408	553	424	351	318
2008년	48,005	20,846	2,573	16,791	495	679	621	515	503
2009년	40,095	16,295	2,378	14,287	381	561	717	531	413
2010년	22,380	8,729	1,745	7,743	181	316	359	276	235
2011년	26,760	10,471	1,841	9,349	189	443	438	364	249
2012년	31,391	11,886	1,957	10,630	204	441	751	595	590
2013년	40,418	14,184	2,242	13,649	412	661	1,152	735	842
2014년	47,542	15,638	2,463	16,393	561	971	1,477	686	878
2015년	44,849	12,932	2,309	15,041	790	1,267	1,562	894	910
2016년	64,355	15,956	3,265	21,671	859	1,721	2,651	1,285	1,217
2017년	82,641	20,153	4,217	29,151	888	1,759	3,407	1,786	1,717
2018년	69,000	16,890	3,855	24,390	1,003	1,151	2,004	1,451	1,147
2109년	59,237	15,606	3,771	20,888	1,083	1,027	1,268	1,214	756
2020년	46,088	12,108	3,225	15,475	991	699	1,134	876	657
2021년	47,708	11,352	2,974	15,172	1,788	976	1,314	1,163	713
2022년	55,111	9,586	3,535	15,324	3,741	2,632	2,559	1,152	887

&lt;부표 21&gt; 연도별 지역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8,085	7,994	31,850	15,524	7,192	8,907	8,733	11,300	2,463	53,620
1998년	0	0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0	0
2002년	1	0	0	0	0	0	0	0	0	0
2003년	0	0	0	0	0	0	0	0	0	0
2004년	32	6	92	34	10	32	48	79	6	105
2005년	28	4	59	35	10	22	33	38	5	67
2006년	164	21	539	324	149	271	177	284	45	543
2007년	198	44	762	419	202	322	225	326	39	745
2008년	301	76	1,241	593	266	503	381	461	60	1,100
2009년	313	72	1,150	586	224	421	402	361	87	916
2010년	150	73	618	319	112	261	208	259	44	752
2011년	189	114	821	389	151	289	285	352	69	757
2012년	205	114	1,093	576	185	318	361	331	92	1,062
2013년	233	286	1,474	798	426	453	498	418	166	1,789
2014년	360	538	1,859	929	405	560	453	717	154	2,500
2015년	375	609	1,975	1,017	315	494	384	499	207	3,269
2016년	464	1,189	2,847	1,518	502	629	641	930	239	6,771
2017년	762	1,401	3,293	2,062	650	850	716	1,628	303	7,898
2018년	762	1,082	2,802	2,027	788	807	823	1,379	344	6,295
2109년	932	760	2,072	1,205	661	675	665	1,101	216	5,337
2020년	829	409	2,093	826	684	593	403	824	131	4,131
2221년	585	423	2,293	802	757	717	1,071	609	174	4,825
2022년	1,202	773	4,767	1,065	695	690	959	704	82	4,758

<부표 22>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787,623	511,887	128,546	66,465	33,275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4	4	0	0	0
2003년	1	1	0	0	0
2004년	3,977	2,649	512	296	164
2005년	2,808	1,732	419	253	131
2006년	23,438	12,677	4,084	2,375	1,311
2007년	31,815	18,676	5,439	2,834	1,461
2008년	48,005	30,125	8,381	3,893	1,843
2009년	40,095	27,758	5,766	2,714	1,295
2010년	22,380	15,772	3,099	1,455	734
2011년	26,760	16,603	4,490	2,370	1,165
2012년	31,391	18,708	5,242	2,938	1,579
2013년	40,418	22,338	7,506	4,353	2,268
2014년	47,542	24,466	9,605	5,996	2,916
2015년	44,849	23,676	9,286	5,374	2,726
2016년	64,355	37,569	12,128	6,792	3,333
2017년	82,641	52,055	13,823	7,388	4,002
2018년	69,000	48,014	9,596	4,918	3,111
2109년	59,237	41,500	8,091	4,831	3,045
2020년	46,088	31,613	7,752	4,514	1,838
2021년	47,708	35,378	8,966	3,007	340
2022년	55,111	50,573	4,361	164	13

&lt;부표 22&gt;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합계	17,900	10,862	6,679	4,254	7,755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0	0	0	0	0
2003년	0	0	0	0	0
2004년	98	63	36	31	128
2005년	59	54	38	29	93
2006년	752	479	374	323	1,063
2007년	874	584	432	377	1,138
2008년	1,044	659	535	432	1,093
2009년	697	534	355	288	688
2010년	377	254	213	127	349
2011년	641	446	289	242	514
2012년	922	597	444	308	653
2013년	1,338	818	583	462	752
2014년	1,558	1,067	732	537	665
2015년	1,415	921	651	435	365
2016년	1,817	1,291	855	380	190
2017년	2,547	1,693	840	237	56
2018년	2,034	1,034	248	39	6
2109년	1,390	323	49	6	2
2020년	321	45	4	1	0
2021년	16	0	1	0	0
2022년	0	0	0	0	0

<부표 23>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787,623	518,344	131,200	65,716	31,698	16,367
1998년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2002년	4	4	0	0	0	0
2003년	1	1	0	0	0	0
2004년	3,977	2,496	514	358	203	129
2005년	2,808	1,535	488	295	171	89
2006년	23,438	10,588	4,605	2,945	1,767	1,023
2007년	31,815	16,554	6,319	3,457	1,819	1,011
2008년	48,005	28,074	9,277	4,609	2,214	1,167
2009년	40,095	27,090	6,178	2,963	1,393	738
2010년	22,380	15,657	3,225	1,508	746	379
2011년	26,760	16,591	4,583	2,435	1,175	641
2012년	31,391	18,821	5,300	2,969	1,619	900
2013년	40,418	22,518	7,592	4,416	2,282	1,322
2014년	47,542	24,743	9,753	6,066	2,903	1,575
2015년	44,849	23,999	9,513	5,431	2,662	1,415
2016년	64,355	38,082	12,613	6,782	3,268	1,804
2017년	82,641	52,975	14,549	7,470	3,896	2,290
2018년	69,000	49,129	10,185	5,003	2,896	1,454
2109년	59,237	43,156	8,778	4,716	2,155	406
2020년	46,088	33,878	8,263	3,420	502	23
2021년	47,708	38,985	7,837	858	27	1
2022년	55,111	53,468	1,628	15	0	0

&lt;부표 23&gt;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9,317	5,340	3,529	2,183	3,929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0	0	0	0	0
2003년	0	0	0	0	0
2004년	70	50	31	30	96
2005년	58	41	37	20	74
2006년	616	433	355	284	822
2007년	677	486	404	279	809
2008년	727	536	426	271	704
2009년	531	347	277	194	384
2010년	281	166	149	110	159
2011년	426	297	218	161	233
2012년	605	416	290	201	270
2013년	812	577	393	274	232
2014년	1,020	672	472	232	106
2015년	873	537	288	96	35
2016년	1,125	498	154	26	3
2017년	1,164	259	32	4	2
2018년	308	22	2	1	0
2109년	22	3	1	0	0
2020년	2	0	0	0	0
2021년	0	0	0	0	0
2022년	0	0	0	0	0

<부표 24>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금액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지급인원	퇴직공제금 지급액
합계	2,129,114	3,755,466
1999년	3	2
2000년	638	512
2001년	3,836	3,599
2002년	5,046	5,268
2003년	6,621	7,323
2004년	11,419	12,775
2005년	15,044	17,046
2006년	14,700	17,905
2007년	11,495	14,259
2008년	12,703	16,779
2009년	20,328	28,602
2010년	22,935	37,773
2011년	25,290	48,268
2012년	45,257	88,869
2013년	57,968	123,411
2014년	68,113	154,102
2015년	73,775	188,241
2016년	86,457	221,681
2017년	100,541	266,702
2018년	123,884	350,765
2109년	204,391	539,487
2020년	503,416	604,624
2021년	460,561	531,459
2022년	254,693	476,013

&lt;부표 25&gt;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2,129,114	1,813,785	315,329
1999년	3	3	0
2000년	638	530	108
2001년	3,836	2,945	891
2002년	5,046	3,448	1,598
2003년	6,621	4,471	2,150
2004년	11,419	7,750	3,669
2005년	15,044	10,676	4,368
2006년	14,700	10,457	4,243
2007년	11,495	8,752	2,743
2008년	12,703	10,341	2,362
2009년	20,328	16,931	3,397
2010년	22,935	19,814	3,121
2011년	25,290	21,995	3,295
2012년	45,257	40,486	4,771
2013년	57,968	52,878	5,090
2014년	68,113	61,715	6,398
2015년	73,775	67,633	6,142
2016년	86,457	79,369	7,088
2017년	100,541	92,050	8,491
2018년	123,884	113,550	10,334
2109년	204,391	180,655	23,736
2020년	503,416	415,408	88,008
2021년	460,561	374,498	86,063
2022년	254,693	217,430	37,263

<부표 26>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2,129,114	788	9,128	38,352	55,089	78,019	102,414
1999년	3	0	1	0	1	0	1
2000년	638	5	38	77	73	85	86
2001년	3,836	18	184	428	389	370	433
2002년	5,046	22	238	543	456	449	480
2003년	6,621	16	305	650	736	600	630
2004년	11,419	21	409	905	1,114	985	1,041
2005년	15,044	27	418	1,034	1,332	1,290	1,377
2006년	14,700	10	253	823	1,250	1,356	1,387
2007년	11,495	4	137	566	871	1,044	1,024
2008년	12,703	0	84	504	809	1,236	1,171
2009년	20,328	0	70	491	980	1,648	1,858
2010년	22,935	1	69	467	1,061	1,699	2,064
2011년	25,290	2	77	470	1,049	1,824	2,418
2012년	45,257	6	105	652	1,699	2,812	4,216
2013년	57,968	5	159	888	1,979	3,330	5,320
2014년	68,113	7	225	1,042	1,946	3,010	5,351
2015년	73,775	6	311	1,384	2,551	3,840	5,931
2016년	86,457	8	312	1,489	2,757	4,135	6,230
2017년	100,541	11	489	2,043	3,512	5,371	7,492
2018년	123,884	21	868	3,543	4,654	6,888	8,734
2109년	204,391	20	1,057	4,951	7,012	10,916	13,075
2020년	503,416	56	1,105	5,226	6,109	8,133	10,153
2021년	460,561	122	1,189	5,284	6,315	8,832	11,242
2022년	254,693	400	1,025	4,892	6,434	8,166	10,700

&lt;부표 26&gt;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합계	133,266	157,709	167,171	432,311	194,080	331,216	429,571
1999년	0	0	0	0	0	0	0
2000년	54	67	91	45	7	7	3
2001년	362	446	554	472	58	97	25
2002년	472	538	654	801	97	236	60
2003년	615	630	690	1,139	145	361	104
2004년	1,075	1,000	1,246	2,304	320	777	222
2005년	1,546	1,486	1,814	3,085	393	972	270
2006년	1,515	1,502	1,866	2,907	435	1,040	356
2007년	1,237	1,135	1,448	2,534	414	805	276
2008년	1,397	1,295	1,455	2,916	496	1,050	290
2009년	2,016	2,059	2,362	5,372	825	2,046	601
2010년	2,222	2,429	2,840	6,125	796	2,309	853
2011년	2,521	2,886	3,317	6,695	829	2,293	909
2012년	4,802	5,427	4,969	14,368	1,510	3,009	1,682
2013년	6,304	7,596	6,547	17,753	2,108	3,845	2,134
2014년	6,303	7,370	6,559	21,116	2,967	6,829	5,388
2015년	7,513	8,572	8,020	24,929	2,475	5,260	2,983
2016년	8,072	9,260	8,807	26,789	3,222	9,241	6,135
2017년	10,952	12,441	12,669	31,630	3,236	7,154	3,541
2018년	12,797	14,161	15,098	38,052	3,949	9,513	5,606
2109년	19,189	21,946	23,464	61,757	6,352	17,736	16,916
2020년	14,646	18,369	20,273	59,800	53,371	128,215	177,960
2021년	14,909	19,995	23,097	57,597	54,416	96,673	160,890
2022년	12,747	17,099	19,331	44,125	55,659	31,748	42,367

<부표 27> 연도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2,129,114	349,934	133,252	434,199	105,242	117,241	112,593	161,076	36,796
1999년	3	0	2	0	0	0	0	0	0
2000년	638	171	72	145	56	22	11	22	3
2001년	3,836	716	226	703	249	185	173	220	69
2002년	5,046	593	228	853	259	333	256	338	75
2003년	6,621	756	308	1,169	484	486	397	355	120
2004년	11,419	1,273	498	1,954	728	779	659	940	192
2005년	15,044	1,630	749	2,495	895	950	907	1,524	245
2006년	14,700	1,650	694	2,377	940	935	826	1,317	187
2007년	11,495	1,273	571	1,795	786	842	688	1,139	126
2008년	12,703	1,667	612	1,843	1,373	835	654	1,344	150
2009년	20,328	2,997	1,010	3,195	2,431	1,183	867	2,390	154
2010년	22,935	3,915	1,272	3,902	2,146	1,222	891	2,318	216
2011년	25,290	4,915	1,643	4,757	1,933	1,308	992	2,239	293
2012년	45,257	10,748	2,953	9,811	2,561	2,208	1,557	3,068	381
2013년	57,968	13,884	3,986	12,031	2,842	2,453	2,140	4,062	569
2014년	68,113	13,628	4,159	12,957	3,615	3,788	3,074	5,785	1,033
2015년	73,775	15,195	4,838	14,680	3,689	3,683	2,947	6,165	1,058
2016년	86,457	16,508	5,533	17,181	4,157	4,617	3,870	6,763	1,415
2017년	100,541	20,600	6,430	21,065	4,672	4,985	4,452	7,349	1,442
2018년	123,884	23,907	8,419	28,577	5,659	6,011	5,838	9,889	2,443
2109년	204,391	35,639	13,467	48,339	8,808	10,206	11,111	14,327	3,749
2020년	503,416	77,180	31,329	95,211	24,139	27,877	27,461	38,981	9,309
2021년	460,561	62,961	27,718	91,988	21,142	28,548	28,343	32,063	8,795
2022년	254,693	38,128	16,535	57,171	11,678	13,785	14,479	18,478	4,772

&lt;부표 27&gt; 연도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65,490	8,642	94,458	71,301	65,451	110,046	95,458	85,352	22,091	60,492
1999년	0	0	0	0	0	1	0	0	0	0
2000년	51	1	14	11	7	15	13	17	3	4
2001년	189	6	234	145	178	135	222	148	30	8
2002년	242	17	226	255	244	333	413	268	109	4
2003년	295	10	297	344	395	422	429	307	43	4
2004년	548	20	526	527	594	841	792	453	57	38
2005년	796	21	674	569	726	1,006	906	625	99	227
2006년	784	28	665	635	916	1,013	1,082	480	91	80
2007년	591	15	471	517	657	774	745	411	42	52
2008년	497	14	452	454	696	735	818	488	47	24
2009년	744	35	654	534	1,087	1,140	1,106	655	76	70
2010년	848	53	771	733	1,160	1,229	1,190	810	138	121
2011년	934	41	775	687	1,170	1,314	1,107	861	198	123
2012년	1,516	90	1,433	1,244	1,644	1,930	1,928	1,559	288	338
2013년	1,995	159	2,162	1,692	1,904	2,679	2,572	1,953	395	490
2014년	2,447	235	2,770	2,042	2,213	3,740	3,145	2,414	491	577
2015년	2,630	325	3,057	2,274	2,277	3,561	3,467	2,591	524	814
2016년	2,815	349	3,974	2,586	2,460	4,442	3,838	3,386	771	1,792
2017년	3,232	493	4,451	2,941	2,607	4,312	3,688	3,597	851	3,374
2018년	3,732	645	5,635	3,748	3,145	4,727	4,641	4,237	1,147	1,484
2109년	6,235	1,112	9,308	7,103	6,011	9,377	8,654	7,553	2,351	1,041
2020년	14,359	1,857	20,789	16,573	14,748	25,388	22,536	21,106	5,720	28,853
2021년	12,734	1,957	22,658	17,282	13,558	28,153	21,905	21,259	5,773	13,724
2022년	7,276	1,159	12,462	8,405	7,054	12,779	10,261	10,174	2,847	7,250

<부표 28>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합계	2,129,114	952,259	662,393	236,001	111,830	60,908	36,566	23,347
1999년	3	3	0	0	0	0	0	0
2000년	638	521	116	1	0	0	0	0
2001년	3,836	2,692	1,116	28	0	0	0	0
2002년	5,046	3,011	1,910	124	1	0	0	0
2003년	6,621	3,671	2,567	353	30	0	0	0
2004년	11,419	6,296	4,295	726	94	8	0	0
2005년	15,044	8,216	5,588	1,029	180	30	1	0
2006년	14,700	7,625	5,649	1,136	240	45	5	0
2007년	11,495	6,293	4,184	802	193	20	3	0
2008년	12,703	6,763	4,718	993	186	38	5	0
2009년	20,328	9,413	8,419	1,949	446	82	18	1
2010년	22,935	8,854	10,377	2,773	720	171	38	2
2011년	25,290	6,780	12,336	4,324	1,373	377	75	15
2012년	45,257	9,339	23,095	8,280	3,064	1,067	317	75
2013년	57,968	8,352	29,639	11,805	4,964	2,080	787	240
2014년	68,113	10,102	33,791	12,608	6,047	3,055	1,518	641
2015년	73,775	6,328	36,592	14,467	7,491	4,300	2,359	1,293
2016년	86,457	7,482	43,779	16,586	7,972	4,526	2,801	1,635
2017년	100,541	6,776	50,865	19,681	9,497	5,280	3,283	2,155
2018년	123,884	5,325	64,010	23,410	11,880	6,932	4,418	2,927
2109년	204,391	23,026	104,057	34,126	16,431	9,112	5,711	3,892
2020년	503,416	351,144	82,772	28,509	14,507	8,328	5,379	3,743
2021년	460,561	327,358	70,298	25,820	12,994	7,611	4,850	3,263
2022년	254,693	126,889	62,220	26,471	13,520	7,846	4,998	3,465

&lt;부표 28&gt;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800만 원 미만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400만 원 이상
합계	15,579	10,751	7,208	4,961	3,068	1,853	1,135	1,255
1999년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0	0
2003년	0	0	0	0	0	0	0	0
2004년	0	0	0	0	0	0	0	0
2005년	0	0	0	0	0	0	0	0
2006년	0	0	0	0	0	0	0	0
2007년	0	0	0	0	0	0	0	0
2008년	0	0	0	0	0	0	0	0
2009년	0	0	0	0	0	0	0	0
2010년	0	0	0	0	0	0	0	0
2011년	8	2	0	0	0	0	0	0
2012년	15	5	0	0	0	0	0	0
2013년	79	17	4	1	0	0	0	0
2014년	245	73	24	9	0	0	0	0
2015년	564	263	81	27	9	1	0	0
2016년	881	468	211	80	25	11	0	0
2017년	1,362	838	465	221	81	26	10	1
2018년	1,941	1,329	874	483	231	76	31	17
2109년	2,820	2,020	1,319	884	543	262	119	69
2020년	2,788	2,079	1,472	1,103	701	449	250	192
2021년	2,378	1,817	1,339	1,054	705	432	319	323
2022년	2,498	1,840	1,419	1,099	773	596	406	653

<부표 29>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2,129,114	794,078	737,047	263,330	128,908	71,964
1999년	3	0	3	0	0	0
2000년	638	0	586	47	4	1
2001년	3,836	0	2,988	673	162	11
2002년	5,046	0	3,368	1,279	307	81
2003년	6,621	0	4,012	1,705	594	219
2004년	11,419	0	7,141	2,472	1,152	442
2005년	15,044	0	9,394	3,157	1,466	589
2006년	14,700	0	8,400	3,460	1,596	684
2007년	11,495	1	6,544	2,788	1,184	543
2008년	12,703	0	7,127	3,065	1,370	637
2009년	20,328	0	11,108	4,991	2,226	1,094
2010년	22,935	0	12,849	5,293	2,529	1,158
2011년	25,290	1	13,111	6,115	3,054	1,511
2012년	45,257	0	24,571	10,448	5,012	2,579
2013년	57,968	0	30,505	13,168	6,631	3,576
2014년	68,113	0	37,224	14,035	7,071	4,077
2015년	73,775	0	37,906	15,167	7,863	4,809
2016년	86,457	0	46,841	17,285	8,585	4,872
2017년	100,541	0	54,093	20,187	9,988	5,443
2018년	123,884	0	66,430	23,782	12,011	7,063
2109년	204,391	0	118,487	37,653	17,789	9,910
2020년	503,416	343,356	88,628	28,862	14,504	8,517
2021년	460,561	323,962	75,984	24,446	12,192	7,236
2022년	254,693	126,758	69,747	23,252	11,618	6,912

&lt;부표 29&gt;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계속)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43,344	28,190	19,470	13,311	29,472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2	0	0	0	0
2002년	10	1	0	0	0
2003년	69	20	2	0	0
2004년	122	62	24	4	0
2005년	266	103	47	17	5
2006년	304	162	55	25	14
2007년	234	117	63	13	8
2008년	290	117	58	27	12
2009년	492	236	101	52	28
2010년	588	273	136	67	42
2011년	793	389	168	83	65
2012년	1,332	659	345	174	137
2013년	1,897	1,057	580	266	288
2014년	2,368	1,484	868	467	519
2015년	3,049	1,975	1,270	773	963
2016년	3,181	2,018	1,451	894	1,330
2017년	3,441	2,402	1,723	1,177	2,087
2018년	4,565	2,981	2,202	1,566	3,284
2109년	6,133	4,118	2,932	2,228	5,141
2020년	5,327	3,724	2,825	2,064	5,609
2021년	4,582	3,146	2,389	1,763	4,861
2022년	4,299	3,146	2,231	1,651	5,079

<부표 30>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수급요건 완화	고령	타업종 취업	부상질병	자영업	상용 근로자	사망	기타
합계	2,129,114	789,905	617,194	202,821	202,734	61,990	38,789	23,864	191,817
1999년	3	0	0	0	1	0	1	0	1
2000년	638	0	85	118	30	19	38	4	344
2001년	3,836	0	1,034	448	164	79	109	30	1,972
2002년	5,046	0	1,474	1,042	404	272	237	54	1,563
2003년	6,621	0	1,723	1,361	577	369	637	86	1,868
2004년	11,419	0	3,607	2,425	1,068	481	575	154	3,109
2005년	15,044	0	4,792	3,499	1,527	574	572	142	3,938
2006년	14,700	0	4,954	3,346	1,640	637	518	169	3,436
2007년	11,495	0	4,352	2,685	1,288	654	435	148	1,933
2008년	12,703	0	5,050	3,341	1,328	632	382	206	1,764
2009년	20,328	0	9,454	4,331	2,063	971	676	332	2,501
2010년	22,935	0	10,078	4,768	1,869	1,136	785	1,852	2,447
2011년	25,290	0	11,241	5,314	2,465	1,313	800	1,024	3,133
2012년	45,257	0	19,931	6,485	5,312	1,700	1,380	1,255	9,194
2013년	57,968	0	25,352	8,045	8,869	2,179	2,235	1,219	10,069
2014년	68,113	0	35,773	9,083	9,026	2,452	1,743	1,206	8,830
2015년	73,775	0	35,198	11,776	10,601	3,073	2,018	1,146	9,963
2016년	86,457	0	44,915	11,606	11,615	3,407	2,489	1,165	11,260
2017년	100,541	0	45,114	14,263	15,713	4,219	2,779	1,206	17,247
2018년	123,884	0	56,624	18,443	22,589	5,324	2,994	1,253	16,657
2109년	204,391	0	101,176	32,441	28,762	10,141	4,973	3,141	23,757
2020년	503,416	344,380	78,373	20,602	25,005	7,427	3,990	3,454	20,185
2021년	460,561	322,465	63,313	19,068	23,684	7,206	3,952	2,580	18,293
2022년	254,693	123,060	53,581	18,331	27,134	7,725	4,471	2,038	18,353

&lt;부표 31&gt; 연령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2 누계)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2,129,114	349,934	133,252	434,199	105,242	117,241	112,593	161,076	36,796
19세 이하	788	41	34	155	46	22	33	98	30
20~24세	9,128	1,069	597	2,279	443	447	481	746	143
25~29세	38,352	5,386	2,967	10,060	1,705	1,787	1,847	2,892	724
30~34세	55,089	8,917	3,866	13,962	2,448	2,499	2,598	4,008	963
35~39세	78,019	12,398	5,158	19,028	3,628	3,758	4,039	6,117	1,453
40~44세	102,414	17,123	6,518	24,151	4,860	5,037	5,274	7,935	1,791
45~49세	133,266	24,805	8,456	31,381	6,165	6,211	6,400	9,853	2,168
50~54세	157,709	30,834	10,134	37,057	7,459	7,140	7,284	11,579	2,376
55~59세	167,171	32,435	10,874	38,301	8,145	7,834	7,833	12,537	2,459
60~64세	432,311	78,259	27,965	92,762	22,493	23,045	20,758	32,936	7,600
65세	194,080	30,144	12,045	38,242	9,885	11,661	11,666	15,587	3,982
66~69세	331,216	52,070	19,389	59,694	17,160	19,425	18,617	26,074	6,309
70세 이상	429,571	56,453	25,249	67,127	20,805	28,375	25,763	30,714	6,798

<부표 31> 연령별 지역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2 누계)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65,490	8,642	94,458	71,301	65,451	110,046	95,458	85,352	22,091	60,492
19세 이하	18	4	30	20	8	35	16	22	1	175
20~24세	325	41	452	284	363	478	421	333	66	160
25~29세	1,221	218	1,762	956	1,289	1,735	1,420	1,094	309	980
30~34세	1,682	256	2,487	1,458	1,962	2,610	2,024	1,506	473	1,370
35~39세	2,536	425	3,660	2,114	2,925	3,650	2,990	2,200	668	1,272
40~44세	3,310	513	4,865	3,038	3,535	4,773	4,186	3,176	894	1,435
45~49세	4,190	603	6,285	3,855	4,097	5,871	5,290	4,515	1,234	1,887
50~54세	5,120	700	7,529	4,490	4,449	6,638	5,918	5,355	1,525	2,122
55~59세	5,546	697	7,553	5,033	4,810	7,032	6,554	5,866	1,575	2,087
60~64세	14,190	1,722	18,421	14,852	12,647	20,832	18,190	17,091	4,167	4,381
65세	5,791	783	8,087	6,828	5,630	9,251	8,857	8,564	2,324	4,753
66~69세	9,792	1,198	12,991	11,162	9,845	17,011	15,313	13,689	3,563	17,914
70세 이상	11,769	1,482	20,336	17,211	13,891	30,130	24,279	21,941	5,292	21,956

&lt;부표 32&gt;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2 누계)

(단위: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합계	2,129,114	952,259	662,393	236,001	111,830	60,908	36,566
19세 이하	788	112	510	131	23	11	1
20~24세	9,128	1,692	6,040	1,101	233	48	12
25~29세	38,352	4,836	23,394	6,831	2,238	747	202
30~34세	55,089	7,731	30,531	10,053	3,968	1,582	652
35~39세	78,019	11,651	40,137	14,403	6,119	2,736	1,379
40~44세	102,414	15,005	49,435	19,505	8,671	4,361	2,350
45~49세	133,266	18,872	61,171	25,294	12,043	6,286	3,809
50~54세	157,709	24,263	68,893	29,431	14,455	8,024	4,558
55~59세	167,171	30,882	69,014	29,566	14,690	8,399	5,117
60~64세	432,311	67,575	195,030	67,522	35,083	21,184	14,116
65세	194,080	151,131	26,811	7,467	3,547	1,899	996
66~69세	331,216	241,656	55,809	15,940	7,097	3,839	2,278
70세 이상	429,571	376,853	35,618	8,757	3,663	1,792	1,096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2 누계) (계속)

(단위: 명)

구분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합계	23,347	15,579	10,751	7,208	4,961	3,068
19세 이하	0	0	0	0	0	0
20~24세	2	0	0	0	0	0
25~29세	70	23	10	1	0	0
30~34세	331	142	54	21	12	8
35~39세	752	393	231	100	65	34
40~44세	1,266	734	442	300	154	93
45~49세	2,193	1,370	838	580	365	209
50~54세	2,853	1,819	1,253	838	573	324
55~59세	3,264	2,240	1,497	972	664	382
60~64세	9,786	6,988	5,074	3,498	2,482	1,594
65세	700	466	341	243	190	105
66~69세	1,501	990	735	470	339	245
70세 이상	629	414	276	185	117	74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1999~2022 누계) (계속)

(단위: 명)

구분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500만 원 미만	1,600만 원 미만	1,700만 원 미만	1,700만 원 이상
합계	1,853	1,135	640	344	148	123
19세 이하	0	0	0	0	0	0
20~24세	0	0	0	0	0	0
25~29세	0	0	0	0	0	0
30~34세	1	2	1	0	0	0
35~39세	10	4	2	1	0	2
40~44세	45	24	14	11	2	2
45~49세	111	61	23	18	15	8
50~54세	182	121	74	37	6	5
55~59세	229	125	70	40	8	12
60~64세	1,014	664	369	176	88	68
65세	83	45	24	17	6	9
66~69세	130	70	48	38	18	13
70세 이상	48	19	15	6	5	4

<부표 33> 연도별 성별 지역별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8년	1,667,392	285,710	107,648	407,395	68,092	70,948	86,290	114,236	40,991
20대 이하	330,224	48,214	20,992	85,134	12,531	13,258	17,081	23,977	8,436
30대	388,087	62,458	25,418	95,811	16,211	16,536	20,914	26,150	10,014
40대	492,074	89,135	31,402	121,212	19,832	21,022	25,423	31,184	11,890
50대	326,552	62,769	20,629	78,419	13,355	13,802	16,582	22,225	7,961
60대 (65세 미만)	90,256	16,522	6,051	19,273	4,187	4,317	4,397	7,317	1,970
65세 이상	40,199	6,612	3,156	7,546	1,976	2,013	1,893	3,383	720
2019년	1,616,741	272,816	105,626	401,705	66,689	68,018	80,614	109,452	35,284
20대 이하	310,253	43,471	20,217	82,688	12,341	12,312	15,067	22,416	7,045
30대	373,177	59,826	24,763	94,351	15,725	15,499	18,945	24,570	8,371
40대	466,241	83,401	29,804	117,024	18,632	19,485	23,392	29,453	10,196
50대	322,190	60,774	20,868	77,694	13,185	13,638	16,084	21,726	6,866
60대 (65세 미만)	99,918	17,891	6,612	21,358	4,625	4,897	4,949	7,643	2,028
65세 이상	44,962	7,453	3,362	8,590	2,181	2,187	2,177	3,644	778
2020년	1,578,872	258,536	104,458	385,202	67,883	67,099	79,988	103,707	34,431
20대 이하	296,473	40,344	19,333	75,973	12,818	11,524	14,789	20,962	6,744
30대	354,577	55,570	23,714	89,418	15,292	14,711	18,301	22,792	8,102
40대	437,491	75,855	28,060	108,942	17,957	18,503	22,355	26,831	9,713
50대	317,413	57,715	20,914	75,551	13,402	13,730	16,038	20,399	6,642
60대 (65세 미만)	110,243	18,851	7,509	23,512	5,242	5,429	5,513	7,945	2,218
65세 이상	62,675	10,201	4,928	11,806	3,172	3,202	2,992	4,778	1,012

&lt;부표 33&gt; 연도별 성별 지역별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b>2018년</b>	<b>48,334</b>	<b>9,534</b>	<b>72,144</b>	<b>49,742</b>	<b>46,994</b>	<b>67,537</b>	<b>54,812</b>	<b>53,797</b>	<b>17,944</b>	<b>65,244</b>
20대 이하	9,252	2,662	14,659	9,755	10,141	12,985	9,675	10,255	3,821	17,396
30대	11,830	2,068	16,829	11,538	11,971	16,738	12,957	11,627	4,414	14,603
40대	14,412	2,401	21,611	14,604	13,235	19,768	16,396	16,061	5,312	17,174
50대	8,862	1,697	14,006	9,589	7,949	12,327	10,695	10,987	3,124	11,574
60대 (65세 미만)	2,665	509	3,450	2,886	2,394	3,780	3,344	3,344	877	2,973
65세 이상	1,313	197	1,589	1,370	1,304	1,939	1,745	1,523	396	1,524
<b>2019년</b>	<b>47,514</b>	<b>8,885</b>	<b>70,152</b>	<b>46,519</b>	<b>46,110</b>	<b>67,686</b>	<b>52,454</b>	<b>50,557</b>	<b>17,647</b>	<b>69,013</b>
20대 이하	9,385	2,325	13,814	8,295	9,756	12,775	8,922	9,018	3,661	16,745
30대	11,375	1,970	16,212	10,829	11,622	16,446	12,365	10,929	4,375	15,004
40대	13,524	2,227	20,430	13,437	12,722	19,275	15,158	14,668	5,110	18,303
50대	8,749	1,615	13,867	9,180	7,800	12,723	10,446	10,579	3,117	13,279
60대 (65세 미만)	3,031	533	4,010	3,206	2,748	4,324	3,683	3,752	932	3,696
65세 이상	1,450	215	1,819	1,572	1,462	2,143	1,880	1,611	452	1,986
<b>2020년</b>	<b>46,014</b>	<b>8,037</b>	<b>70,405</b>	<b>43,561</b>	<b>45,919</b>	<b>69,579</b>	<b>51,177</b>	<b>50,510</b>	<b>16,966</b>	<b>75,400</b>
20대 이하	9,060	1,780	13,957	7,277	9,786	13,486	8,993	8,719	3,537	17,391
30대	10,613	1,743	15,590	9,869	11,164	16,063	11,449	10,536	4,060	15,590
40대	12,386	2,031	19,807	12,087	12,051	18,930	14,144	13,871	4,602	19,366
50대	8,648	1,583	14,115	8,824	7,940	13,240	10,034	10,564	3,130	14,944
60대 (65세 미만)	3,370	571	4,516	3,499	3,004	4,889	3,974	4,381	1,054	4,766
65세 이상	1,937	329	2,420	2,005	1,974	2,971	2,583	2,439	583	3,343

<부표 33> 연도별 성별 지역별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21년	1,574,063	249,932	104,878	381,956	70,924	67,720	81,260	102,277	32,517
20대 이하	272,623	35,728	17,677	68,250	13,778	10,924	13,646	18,926	5,813
30대	325,698	49,837	22,509	83,172	14,338	13,510	16,639	20,594	6,941
40대	423,923	70,778	27,419	104,917	17,925	18,140	22,481	26,047	9,039
50대	307,438	54,065	20,042	74,833	13,170	12,965	16,002	19,352	6,257
60대 (65세 미만)	138,149	23,025	9,455	30,462	6,463	6,753	6,928	9,315	2,625
65세 이상	106,232	16,499	7,776	20,322	5,250	5,428	5,564	8,043	1,842
2022년	1,631,125	247,202	109,992	409,462	76,105	72,797	85,465	101,927	36,208
20대 이하	275,497	31,776	17,602	71,823	15,331	12,918	14,801	17,131	6,016
30대	316,471	46,724	22,462	84,608	14,180	13,091	16,145	19,378	7,131
40대	425,586	67,796	27,818	108,652	18,460	18,552	23,031	25,925	9,944
50대	311,113	52,658	20,724	79,668	13,281	13,255	16,172	18,536	7,090
60대 (65세 미만)	163,723	26,863	11,279	36,890	7,982	7,949	8,017	10,785	3,351
65세 이상	138,735	21,385	10,107	27,821	6,871	7,032	7,299	10,172	2,676

&lt;부표 33&gt; 연도별 성별 지역별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b>2021년</b>	<b>45,575</b>	<b>8,014</b>	<b>45,718</b>	<b>43,789</b>	<b>45,718</b>	<b>68,897</b>	<b>50,964</b>	<b>50,818</b>	<b>17,148</b>	<b>79,800</b>
20대 이하	8,096	1,644	9,204	6,594	9,204	12,163	8,372	8,045	3,078	17,392
30대	9,679	1,564	10,415	9,028	10,415	14,560	10,469	9,631	3,760	14,815
40대	12,067	1,948	11,884	11,900	11,884	18,560	13,818	13,525	4,766	19,284
50대	8,261	1,537	7,557	8,394	7,557	12,474	9,441	9,958	3,145	15,517
60대 (65세 미만)	4,183	730	3,658	4,421	3,658	6,089	4,728	5,449	1,347	6,590
65세 이상	3,289	591	3,000	3,452	3,000	5,051	4,136	4,210	1,052	6,202
<b>2022년</b>	<b>47,418</b>	<b>9,020</b>	<b>77,956</b>	<b>49,137</b>	<b>46,110</b>	<b>67,701</b>	<b>50,963</b>	<b>49,736</b>	<b>17,340</b>	<b>76,586</b>
20대 이하	8,917	2,242	15,196	7,867	8,912	10,922	7,981	7,591	2,926	15,545
30대	9,206	1,487	14,205	9,351	9,974	13,349	9,735	8,622	3,432	13,391
40대	11,888	2,056	19,666	12,692	11,866	18,258	13,562	12,833	4,682	17,905
50대	8,046	1,636	15,218	9,284	7,382	11,998	9,114	9,318	3,200	14,533
60대 (65세 미만)	5,069	840	7,521	5,316	4,304	6,915	5,337	5,958	1,649	7,698
65세 이상	4,292	759	6,150	4,627	3,672	6,259	5,234	5,414	1,451	7,514

#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